







#### 한국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보고서

발 행 일 2019년 9월 4일

발 행 처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사단법인 두루

연 락 처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주소: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 302호(수기동)

전화: 062-351-0518

이메일: companion.lfpi@gmail.com, 홈페이지: www.companion-lfpi.org

사단법인 두루

주소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9층(미근동)

전화: 02-6200-1853 홈페이지: duroo.org

책임연구원 강정은, 이소아

공동연구원 권소연, 김민아, 마한얼, 배영근, 엄선희, 최초록

**디자인·제작** ㈜인디엔피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발행처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CONTENTS

006 009	인사말 실태조사를 마치며
011 013 014 014 016 020	<ul> <li>I. 실태조사 목적 및 범위</li> <li>1. 연구 배경</li> <li>2. 연구 범위</li> <li>가. 공익변호사의 정의</li> <li>나. 공익변호사 존재지반의 다양성</li> <li>다. 공익변호사 활동의 특수성</li> </ul>
023 025 026 027 027	II. 실태조사 방법         1. 설문조사         2. 심층면접조사         3. 국내·외 관련 법제 및 자료 연구         4. 연구 일지
033 035 035 035 036 038 108	<ul> <li>Ⅲ.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공익변호사의 현황</li> <li>1. 설문조사</li> <li>가. 조사 목적 및 대상</li> <li>나.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li> <li>다. 조사 내용</li> <li>라. 조사 결과</li> <li>마. 소결</li> </ul>
112 112 134 137 143	2. 심층면접조사 : 더 깊은 고민과 이야기들(각 유형별 공익변호사 이야기)가. 변호사 중심 단체나. 활동가 중심 단체다. 지역 공익변호사 이야기라.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149 151 157 187	<ul> <li>IV. 국내·외 문헌 및 관련 법령 연구</li> <li>1. 국내 문헌 연구: 과거 기초 연구 및 현황</li> <li>2. 해외 사례 연구</li> <li>3. 비영리 공익전업변호사들에게 맞지 않는 변호사법의 문제 및 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li> </ul>
207	V. 결론 및 제언
219	참고문헌
223 225 240	<b>별첨자료</b> [별첨 1] 설문지 [별첨 2] 심층면접조사 공통 질문표

#### 〈표목차〉

017	[표 1] 다양한 존재지반에 따른 공익변호사 현황
037	[표 2] 조사내용
038	[표 3] 성별 및 연령대
039	[표 4] 근무지역
040	[표 5] 경력
040	[표 6] 공익전업변호사를 하게 된 동기
041	[표 7] 공익전업변호사 동기 기타의견
041	[표 8] 공익전업변호사 활동 여부
042	[표 9] 그만둔 이유
042	[표 10] 현재 공익전업변호사 활동 여부에 따른 활동 기간
043	[표 11] 현재 소속된 공익단체 형태
044	[표 12] 소속단체의 주된 분야(다중응답)
044	[표 13] 기타-소속단체의 주된 분야
045	[표 14] 법률관련 활동 방식
046	[표 15] 법률지원 대상 선정기준
046	[표 16] 기타-법률지원 대상 선정 기준
046	[표 17] 법률지원 대상 선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051	[표 18] 소속단체 창립연도
051	[표 19] 상근변호사를 시작한 연도
052	[표 20] 연도별 상근변호사 수
053	[표 21] 상근변호사 추가 채용 이유
054	[표 22] 상근변호사 추가 채용 재원 마련방법
054	[표 23] 단체 내 상근변호사 적정 수
056	[표 24] 상근변호사 필요 여부에 따른 공익단체 형태
057	[표 25] 상근변호사 필요 여부에 따른 상근변호사 인원
058	[표 26] 소속 단체 변호사 인원
060	[표 27] 법률지원 이외의 실무 해결 방법
060	[표 28] 변호사 실무 수행 방법
061	[표 29] 상근변호사 실무 수행 장·단점
062	[표 30] 변호사와 변호사 아닌 상근 활동가의 역할
063	[표 31] 변호사와 변호사 아닌 상근 활동가 함께 일하는 장·단점
064	[표 32] 상근 아닌 변호사의 활동 여부
065	[표 33] 상근 아닌 변호사의 직책 [표 34] 상근 아닌 변호사의 인원
065	
066	[표 35] 상근변호사 이외의 변호사의 업무분담 내지 역할
068	[표 36] 상근변호사 이외의 변호사 필요성 여부
069	[표 37] 상근변호사 이외의 변호사 필요 및 불필요한 이유
069	[표 38] 인턴·자원활동가 활동여부
070	[표 39] 인턴·자원활동가 활동여부에 따른 공익단체 형태
071	[표 40] 인턴·자원활동가의 역할

072 [표 41] 인턴·자원활동가 활동비 지급

- 072 [표 42] 인턴·자원활동가를 선발하는 이유 및 선발하지 않는 이유
- 073 [표 43] 단일 재정수입원 단체 현황
- 074 [표 44] 복수 재정수입원 비율 현황 1
- 075 [표 45] 복수 재정수입원 비율 현황 2
- 077 [표 46] 재정수입원의 장·단점
- 078 [표 47] 기타재원
- 079 [표 48] 연간 수입·지출액 정도
- 079 [표 49] 연간 수입·지출액 정도
- 080 [표 50] 소속단체의 연간 수입·지출액에 따른 공익단체 형태
- 081 [표 51] 소속단체의 재정자립 가능 여부에 따른 공익단체 형태
- 083 [표 52] 단체의 지속가능한 재정자립 여부와 재원확보 방법
- 083 [표 53] 단체의 지속가능한 재정자립 여부와 재원확보 방법
- 084 [표 54] 재원확보 방법 기타의견
- 084 [표 55] 단체 소식을 알리는 방법(다중응답)
- 085 [표 56] 현재단체에서 일하게 된 배경
- 086 [표 57] 공익전업변호사 가장 힘든 점
- 087 [표 58] 공익단체 형태에 따른 공익전업변호사의 가장 힘든 점 1 (다중응답)
- 088 [표 59] 공익단체 형태에 따른 공익전업변호사의 가장 힘든 점 2 (다중응답)
- 089 [표 60] 시급하게 바뀌었으면 하는 것
- 091 [표 61] 현재 급여와 충분 여부와 지속가능한 급여 수준
- 092 [표 62] 현재 급여와 지속가능한 급여 수준
- 093 [표 63] 변호사 연차에 따른 급여 수준
- 093 [표 64] 공익전업변호사 활동기간에 따른 급여 수준
- 094 [표 65] 급여의 충분 여부에 따른 급여 수준
- 095 [표 66] 현재 급여 수준의 충분성에 따른 현재 급여 수준
- 096 [표 67] 급여의 충분 여부에 따른 공익단체 형태
- 096 [표 68] 급여의 충분 여부에 따른 변호사 연차
- 097 [표 69] 연차에 따른 급여 상승 여부
- 098 [표 70] 단체의 연차별 급여 상승 여부
- 099 [표 71] 급여 상승 여부에 따른 공익단체의 형태
- 099 [표 72] 단체에서 계속 근무 희망 여부
- 100 [표 73] 지속 근무 희망 여부에 따른 공익단체 형태
- 101 [표 74] 지속 근무 희망 여부에 따른 변호사 연차
- 102 [표 75] 지속 근무 희망 여부에 따른 연령대
- 103 [표 76] 지속 근무 희망 여부에 따른 현재 급여 수준
- 104 [표 77] 계속근무 희망자의 단체 내 상근변호사 전망이나 계획
- 104 [표 78] 현 단체에서 근무를 지속해서 계속 일할 수 없는 이유
- 105 [표 79] 향후 설문 사항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사항
- 107 [표 80] 향후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정책
- 108 [표 81] 공익변호사 모임에 바라는 점
- 164 [표 82] 변호사와 비변호사 직원의 수 변화
- 165 [표 83] 공익법활동 단체의 업무 비중 변화
- 165 [표 84] 재정의 출처



#### 인사말

77

김용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대표

사회적으로 중요한 권리이지만 시민 개개인에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이익, 정치적 자유권·시민권과 사회경제적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제도적 권력을 감시하며, 나아가 이에 대한 법률구조·사법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의식적 노력과 활동을 공익법운동이라 한다면 공익변호사는 전업적으로 공익인권 현장에 뛰어들어 공익인권단체들과 함께 공익법운동을 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익변호사는 대체로 비영리조직에서 전업으로 상근하거나 법률지원으로 인한 수익구조를 아예가지지 않거나 가진다 하더라도 구성원들이 나누어 가지지 않거나 상한 이상의 이익을 분배하지 않으면서 공익적 지향을 위해 (거의) 전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성매매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이주노동자, 난민 등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등이 변호사 비용 없이도 인정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성실하고 충분하게 법적 보호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공익변호사들의 활동 덕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익변호사는 2000년대에 출현하였고 현재 100여 명을 상회하여 계속 불어나고 있으며 활동영역과 방식도 다변화 되었는데 참으로 반가운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10여년 전 처음 공익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이들은 앞서의 경험과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각기 스스로 조직과 전문성을 키우면서 배우고 개척하여 왔지만(현재 공익변호사들도 대다수 혼자서 법률전문가와 조직활동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느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임) 이제 그간 쌓인 선례와 경험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하여 공익법운동영역을 활성화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공익법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공익변호사(연구원) 8인은 현재의 공익변호사와 공익법운동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연구원 8인은 2018.9.7.부터 2019.7.31.까지 모두 10차례의 회의를 통해 100여명의 공익 변호사를 상대로 한 실태조사를 기획하고 결과를 검수하였으며 2018.8.28.부터 2019.7.26.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를 설계함에 있어 공익변호사들의 존재지반(활동방식)이 다양하여 공통질문을 객관적으로 구성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별도의 인터뷰를 통해 보완하였으며 심층면접은 유사한 존재지반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묶어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공익변호사들은 공익변호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전업 공익변호사가 되었지만 지속가능하지 않은 급여 등의 문제로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인가 앞날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익변호를 어떤 기관에 맡길 것인가, 상근자 급여를 포함한 운영경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등이 공익변호사 제도의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고, 비영리차등제 로펌, 비전업 공익변호사의 프로보노 공익활동과 중개기관의 활성화 문제 등도 검토 내지 참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비영리 공익전업변호사들에게 맞지 않는 변호사법 및 재정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하는 것도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공익변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는 변호사법에 법무법인(공익)을 설립하는 안이 제출되어 있기도 하나, 공익전업변호사들의 다양한 실태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개정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공익변호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고민하고 애써 주신 연구원과 설 문조사와 인터뷰에 응해 주신 공익변호사들, 공익변호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큰 관심을 가져 주시는 국회 관계자, 공익변호사를 후원하고 격려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지형** 사단법인 두루 이사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전업 공익변호사는 2019년 현재 약 120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변호사 경력이 짧고 네트워크와 정보가 부족해서 활동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익변호사의 현황과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최초의 실태조사인 이번 공익변호사 실태조사에서 전국에 있는 공익변호사 118명 중 74명의 응답을 분석하였습니다. 활동가 단체, 변호사 중심 단체, 로펌 기반 단체, 보조금이 출연된 단체, 지역 공익변호사로 나누어 심층면접조사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익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고 공익변호사 생태계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두루는 비영리전업 공익변호사단체로 공익소송, 자문과 법률상담, 법률교육, NGO와연대·협력, 제도개선운동, 유엔인권시스템을 활용한 국제연대활동 등 각종 공익법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습니다. 두루는 지난 5년간 아동·청소년·교육, 사회적경제, 국제·이주 등의주요 영역에서 법률가의 전문성과 활동가의 진정성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익법활동을 확산시키고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공익변호사 실태조사는 공익변호사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익변호사 생태계와 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담았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연구를 바탕으로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익변호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이기 때문에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에서 공익변호사의 현황과 어려움, 제도개선 방안을 모두 담을 수는 없었지만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해주시고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공익변호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익변호사 생태계가 견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사단법인 두루는 이 보고서를 밑거름 삼아 공익변호사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익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 노력한 8인의 연구원, 설문조사와 인터뷰에 응해주신 공익변호사들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구를 후원해 주신 법조공익모임나우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소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연수원을 수료하고 본의 아니게 가장 다양한 유형의 NGO 단체 상근변호사의 경험을 갖게 되었다. 모든 단체가 각기 다른 역사와 활동방식과 사정이 있었고, 그때마다 '적응'이라는 고군분투, 좌충우돌의 경험이 있었다. 확실한 방법들을 말해주는 선배가 있기를 간절히 바랐고, 그때마다 좋은 인연들이 닿게 되어 지금 여기에 있게 되었지만 보이지 않는 길에 혼자 있는 느낌이 늘 있었다. 이 보고서는 그 막연함과 두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이어나갔던 알수 없는 간절함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2016년 겨울 제3회 공익변호사 한마당 워크숍에서 연수원 동기인 배영근 변호사님 등과 매뉴얼을 한다면 함께 하자는 말을 꺼내어 주고 받았던 것이 부채로 남았고, 그로부터도 2년이 지나서야 겨우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

보고서를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동력은 사단법인 두루(강정은, 최초록, 마한얼, 엄선희)와 동행에 새롭게 결합한 변호사들(권소연, 김민아), 그리고 진짜로 (묵묵하게) 코를 꿰게 된 배영근 변호사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공익법조모임 나우의 재정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공익변호사들의 활동에 대한 나우의 전폭적인 지원에 늘 (특히 멀리 광주에 있는 동행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감사를 드린다.

소년사법연구보고서의 실무경험으로 객관식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일정 진행뿐만 아니라 모든 실무를 꼼꼼하게 챙겨준 강정은 변호사, 너무나 연구가 안 된 부분이라 국내, 해외 자료 찾는 것 자체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그리고 끈질기게 자료를 찾아내어 분석해준 최초록, 마한얼, 엄선희 변호사, 광주부터 먼 거리를 왕복하며 심층면접 속기록 작업을 함께 하고 일정 정리 등을 함께 해준 권소연, 김민아 변호사, 녹색법률센터의 경험을 복기하여 공익변호사 매뉴얼을 써주신 배영근 변호사님, 전자소송 실무와 관련한 실질적인 팁을 전해준 임자운, 조영관 변호사님이 함께 해주셔서 끝까지 해낼 수 있었다. 감사와 애정을 전한다. 혼자 했다면 시작도 못했을 것이고, 시작했다 하더라도 끝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바쁜 외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신 여러분들(이름을 익명화 처리 하였으므로 실명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 Ι.

# 실태조사 목적 및 범위

- 1. 연구 배경
- 2. 연구 범위
  - 가. 공익변호사의 정의
  - 나. 공익변호사 존재지반의 다양성
  - 다. 공익변호사 활동의 특수성

#### 1. 연구 배경

1990년대 이후 비영리영역 자체가 꾸준히 확장되고 다변화되었다. 비영리영역의 변화의 결과인지 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것인지 원인과 결과는 분명하지 않 으나. 2000년 후반부터 공익변호사의 숫자. 활동영역. 활동 방식도 확장되고 다 변화되어 현재는 100여명1)의 공익변호사들이 인권 일반, 장애, 아동, 난민, 이 주노동자. 성소수자. 자유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등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다. 10여 년 전 처음 공익변호사로 일을 시작했던 변호사들은 각개 전투로 '일 (조직을 성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키우는 것까지 포함)을 실행하면서 스스로 배우고 개척'했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음 세대의 변호사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와중에 이전 세대 변호사들로부터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배우고 실행할 기회가 없었기에 공익변호사가 조직면에서/자신의 역량면에서 성 장하는데 과거를 조망하여 미래를 전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 결과 공익변호사 로서 체계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갈무리하고 성장을 하는데 점검이 필요한 시점에 다다랐다고 생각한다.2) 즉 예전까지는 소수의 공익변호사 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스스로 키워내어 그 역량에 따라 공익변호사 스스로의 성장. 공익변호사가 몸담 고 있는 단체의 성장이 좌우되었다면. 이제는 그동안의 경험치에 터 잡아 성장 (공익변호사 개인의 성장. 비영리단체의 성장)이 함께 고민되고 나누어져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비영리분야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공익변호사의 경우는 '전문가'로서의 성장과 '활동가'로서의 능력 양쪽 문제가 맞 물려 있다는 특성(혹은 어려운 점, 혹은 다른 점)이 있다. 즉, 공익변호사는 기존 변호사들이 하지 않았던 새로운 법률문제를 법률전문가로서도 해내야 하고, 그 문제를 활동가로서 조직해야 한다는 낯섦이 있다. 그러면서 '전문가'이기에 비영 리활동가들과 뭔가 다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신입변호사의 경우 법

<sup>1)</sup> 숫자를 정확하게 낼 수는 없는 상황이며, 공익의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익전업변호사 혹은 어느 상한 이상의 이윤을 분배하지 않는 변호사로 한정하였고, 현 직만을 추산한 숫자이다. 전직까지 포함한다면 120여명이 된다.

<sup>2)</sup> 서울시NPO지원센터, 「공익활동가 역량요소 연구보고서」, 2015. 6쪽 이하 참조

률지원(송무)과 관련한 역량을 배워내기에도 힘든 시기에, 활동가로서 회의를 조 직하고 회의에 참여하고 연대활동을 해내면서 소송으로 해결되지 않는 법률문제 에 대해 또 다른 법률적 방안을 검토하고 실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공익변호사들이 기존 변호사들의 입장에서 보아도 낯설고 비영리활동가들의 입장에서 보아도 이 낯선 이 활동에 뛰어든 것은 십수년이 넘어간다. 3) 수년 전부터 느슨한 형태의 공익변호사모임을 정기적으로 해오면서 그동안 반복되었던 어려움들과 노하우들을 서로 나누며 알음알음 이어오고 있다. 이제는 시간적, 양적 부분에 있어 현 상황과 욕구를 진단하고 그 낯선 특수함이 후배 공익변호사들에게 '지속가능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 혹은 그 무엇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연구조사를 진행하였다.

#### 2. 연구 범위: 공익전업변호사

#### 가. 공익변호사의 정의

본 연구는 '공익변호사'의 현황과 다양한 욕구들을 조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1) 먼저, '공익변호사'로 분류될 수 있는 기준인 '공익'은 무엇인가

'공익'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사람마다의 가치관 및 시대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에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공익(법)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인데 황승흠 교수는 '사회적으로 아주

3) 한국의 공익변호사들의 역사의 시작을 어디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뉠 수 있다. 녹색 법률센터나 환경법률센터의 경우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설립된 것은 20년이 넘었다. 그 러나 녹색법률센터에 상근변호사 체제가 도입된 것은 2010년이고, 환경법률센터는 2003년부터 상 근변호사가 시작되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역시 설립된 시기로 본다면 30년이 되 었으나 현재와 같은 상근변호사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8년이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아름다 운재단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2003년에 설립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각 단체들이 '상근변호사'를 뽑 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정도를 좁은 의미의 공익변호사의 시작으로 보기로 한다. 중요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잘게 쪼개져서 사회구성원 개개인에게 흩어져 있기때문에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익이 공익'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4) 그러나 공익변호사의 활동을 의미할 때 저 정의가 모두를 포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쪼개져 확산된 이익'의 법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유권·시민권'영역(권력 감시 포함)과 '사회적·경제적 소수자 인권옹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권 권력 및 자본권력에 대한 감시, 어떤 경우는 '법률 구조·사법접근권의 확대'까지 아우르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공익법운동은 이러한 공익법을 옹호 및 확장, 확산시키는 의식적인 노력 활동을 일컫는다. 5) 공익전업변호사라 하면 보통 공익인권 현장에 뛰어 들어 공익인권단체들과 함께 활동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그러나 본 '공익변호사' 연구에서는 '공익'에 대한 의미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공익변호사의 '활동'의 특성에 중심을 두어 분류를 하려고 한다.

사법접근권 차원에서 본다면 무엇이 공익인지를 구분하여 그 방향에 대한 사법접 근권을 보편적으로 확대해 나아가야 하기에 공익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본질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공익변호사'들이 놓여 있는 현 상황과 욕구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공익의 의미를 논증하는 것보다는 공익변호사들의 존재지반, 활동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이를 기준으로 조사의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필요했다.

공익변호사 존재지반6)과 활동의 특성을 중심으로 공익변호사를 주관적이면서 추 상적으로 정의하자면 이렇다.7)

- 4) 황승흠, "공익소송의 어제와 오늘", 조영래 변호사 8주기 추모 심포지움 자료집(미간행), 1998. 2-3쪽
- 5) 염형국, "한국의 공익변호사 현황과 전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간「한국의 공익인권소송 2」, 2018, 25-49쪽
  - 염형국, "특집: 공익인권 법무 분야의 현황과 전망; 한국의 공익변호사 현황과 전망",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발행〈공익과 인권〉제13권, 2013, 5—47쪽
- 6) '존재지반'이라는 표현이 낯설고 어색할 수 있어서 고민이 많았다. 그러나 이 표현과 분류는 제3회 공익변호사 한마당 세미나에서 김준우 변호사가 발제에서 '공익변호사의 활동양식의 특성'을 기준으로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그 표현을 그대로 쓰기로 하였다.
- 7) 김준우. "공익변호사모임의 쟁점과 과제", 제3회 공익변호사 한마당 자료집, 2016, 8쪽

공익변호사란 '영리적 성공과 성취를 목표로 하지 않는, 공익적 성격의 사건을 주되게 수행하는, 위와 같은 지향을 위해서 전업으로 일하는' 변호사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조사에서 공익변호사란 그 활동 방식에 있어 비영리조직에서 전업으로 상근을 하거나, 아니면 법률지원으로 인한 수익구조를 아예가지지 않거나, 있다 하더라도 구성원들이 나누어 가지지 않거나, 상한 이상의이익을 분배하지 않으면서 공익적인 지향을 위해 (거의) 전업으로 일하는 변호사를 의미한다.

(3) 한편, 프로보노(Pro Bono) 변호사와 이 실태조사에서 말하는 공익변호사는 어떻게 다른가. 프로보노(Pro Bono)는 라틴어인 '공익을 위하여(pro bono publico)'8)에서 유래되었는데, 그 본래적 의미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도 사법접근을 확대해서 실질적인 법 앞의 평등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프로보노의 의미는 시민들의 '사법접근권'의 측면에서 주로 언급되는 것이기에, '공익변호사'들의 시각에서 본 활동 방식, 현황과는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 또한 프로보노 활동은 변호사의 활동기반(전업이냐 아니냐)와 무관한 개념으로 사용가능하고 주업은 다른 일이면서 종종 공익활동을 하는 경우를 가리킬 수도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공익활동을 거의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들의 현 상황을 짚고자 하는 것이므로 프로보노 변호사와 공익변호사가 같은 의미가 되기는 어렵다. 이 실태조사는 현재 대한민국의 공익변호사들의 현황과 현재를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하에서의 용어는 '공익변호사'로 쓰도록 하겠다.

#### 나. 공익변호사 존재지반의 다양성9)

(1) 공익변호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존재지반(방식)을 가지고 일한다. 여기서 분야란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난민, 성소수자, 빈곤, 인신매매, 노동,

<sup>8) &#</sup>x27;pro'는 영어의 전치사 'for(위하여)'를, 'bono'는 영어의 'good(이익)'을, 'publico'는 영어의 'publico'는 영어로 'for the public good(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의 프로보노활동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2017. 37쪽

<sup>9)</sup> 이 구분과 아래 '다. 공익변호사 활동의 특수성'은 위 김준우의 발제를 참고한 것이다.

환경. 사회적경제 등의 주제를 의미한다.

존재지반(방식)이란 ① 공익변호사단체(비영리사단법인·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공익법인 등)를 직접 만들어서 활동하거나, ② 시민사회단체 상근변호사로 일하거나, ③ 지방자치단체 위탁 법인 소속 기관에서 일하거나, ④ 개인이 개업했지만 일반사건은 아예 하지 않고 공익적인 사건만을 하거나, ⑤ 민주노총법률원처럼 법무법인이지만 노동조합 관련 사건만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2) 참고로 존재지반에 따라 재정/소득 구조도 각각 시민들로부터 후원, 로펌의 후원, 후원+법률사무소 수입, 법률사무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모두 다르게 나타나는데, 재정 소득 구조에 따라서도 활동상의 독립성 및 운동성에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공익변호사들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지 아래 [표 1]을 보자.

[표 1] 다양한 존재지반에 따른 공익변호사 현황(2019. 6. 기준, 휴직자 및 외국변호사 포함)10

설립주	체/단체분류	 단체명 <sup>11)</sup>	지역	변호사 수	주요 활동영역	설립/비고
		공익법센터 어필	서울	5	난민, 구금이주민, 인신매매, 해외 한국기업 인권침해	2011. 1.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광주	3	장애, 이주와 난민, 여성, 성소수자 등	2015. 5.
벼증사	변호사 중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서울	11	여성, 장애, 이주와 난민, 빈곤 복지, 취약노동, 성소수자 국제인권	2004. 1. 중간지원 <sup>12)</sup>
	공익단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	9	기업과 인권, 표현의자유, 성소수자, 장애	2012. 2.
		녹색법률센터	"	1	환경	1999.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5.5 <sup>13)</sup>	민주, 인권 전반	1988, 5, 변호사 회원 1200명/ 위원회 구조

<sup>10)</sup> 본 연구에서는 공익변호사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단체 위주로 조사를 실시했음을 밝힌다.

<sup>11)</sup> 가나다 순

<sup>12)</sup> 공익변호사 중간지원조직을 의미한다.

설립주	체/단체분류	단체명 <sup>11)</sup>	지역	변호사 수	주요 활동영역	설립/비고
		법조공익모임 나우	"	1	공익변호사 지원	2013. 12. 중간지원
		사랑샘재단	"	1	공익변호사 지원	2012. 2.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	7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2014. 12.
		이주민지원센터 감사와 동행	"	2	이주민 인권	2014. 3.
		장애인권법센터	"	1	장애	2017. 1.
		환경법률센터	"	1	환경	2001. 2.
	일반변호사 업무 병행 <sup>14)</sup>	원곡법률사무소	경기	5	이주민, 장애, 국가폭력, 민생경제	2012. 5.
	노동	법무법인 여는 (민주노총법률원)	서울 충청 광주 등	34	노동	2002. 2.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서울	3	장애, 아동청소년, 여성인권, 다문화, NPO	별도의 법인/단체 설립하지 않음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	1	아동청소년, 난민, 이주민, 장애, 홈리스	"
년오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1	장애, 국제인권(이주민/난민), 여성, 환경, 아동청소년	"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	"	1	탈북민, 아동청소년, 봉사활동, 공익단체 지원	2014. 9.
		사단법인 두루	"	7	장애, 아동청소년, 사회적경제, 난민, 이주외국인, 국제인권	2014. 9.
	로펌이	사단법인 선	"	1	생태, 사회적경제, YOUTH, 여성, 국제, 후견	2013. 12.
	후원하여 설립된 공익단체	사단법인 온율	"	3	성년후견, 공익법제, 의사결정능력장애, 기초법, 신흥지역, 청소년교육, 범죄피해자	2014. 3.
		사단법인 정	"	1	디지털 소외, 난민, 탈북민, 청소년, 사회적 의인, 법인후견인	2017. 9.
		재단법인 동천	"	6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 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NPO법률지원	2009. 6.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	2	한센인권, 홈리스, 노동, 이주민, 청소년, 남북교류, 해외입양인	2014. 12.

<sup>13)</sup> 이하 0.5는 반상근

<sup>14)</sup> 이 조사에서 말하는 공익변호사는 일반 변호사 업무와 공익활동을 병행하는 경우, 손익 분배에 대

설립주	체/단체분류	- - 단체명 <sup>11)</sup>	지역	변호사 수	주요 활동영역	설립/비고
		국제아동인권센터	"	1	아동 인권 옹호	2011. 4.
		난민인권센터	"	1	난민 인권 옹호	2009. 3.
		동물권단체 케어	"	1	동물권	2002. 8.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1	직업병 피해 노동자 인권 옹호	2007. 1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1	교육 문제	2008. 6.
	시민 후원	사단법인 오픈넷	"	2	표현의 자유, 지적재산권, 망 중립성 등	2013. 1.
	단체	아시아의 창	경기	1	이주인권 옹호	2008. 3.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DI)	서울	2	아시아분쟁 피해자, 현장활동가 지원	2016.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	1	아동권리 신장	1994.
활동가 중심		이주민센터 친구	"	2.5	이주인권옹호	2011. 12.
중심 공익 단체		참여연대	"	1	사법감시, 의정감시, 공익제보지원, 행정감시, 경제금융, 노동, 민생, 사회복지, 조세재정, 평화, 국제연대	1994. 9.
		경기도장애인권익 옹호기관 <sup>15)</sup>	경기	2	장애인 권익옹호	2017. 12.
		경기북부장애인권익 옹호기관	"	1	장애인 권익옹호	2016, 12,
	법령 등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서울	3	복지 문제	2014. 4.
	위탁단체 (재원이 보조금 혹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	3	장애인 권익옹호	2018. 1.
	기금)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sup>16)</sup>	"	1	아동 인권옹호	2001. 10.
		중앙장애인권익 옹호기관 <sup>17)</sup>	"	1	장애인 권익옹호	2017. 1.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2	소비자 권익	1976. 4.

한 상한선을 두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일반 변호사 업무와 공익활동을 병행하는 법률 사무소의 활약도 두드러지며, 대표적으로는 법률사무소 보다(인권법센터 보다), 법률사무소 이음, 법무법인 자연, 법률사무소 휴먼, 제주법률사무소 진솔 등이 있다.

설립주	체/단체분류	   단체명 <sup>11)</sup>	지역	변호사 수	주요 활동영역	설립/비고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	"	1		2017. 5.
기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	2		2019.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sup>18)</sup>	"	1		2012.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	1		2016. 4. 공익변호사 양성, 중간지원	

(3) 공익변호사들의 존재지반이 다양한 것은 비영리단체의 존재방식이 다변화된 것과 비슷하다.

이렇듯 공익변호사들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하는 중에 기존 제도(그것이 변호사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일수도 있다)와 부합하지 않은 새로운 방식이 있을 수 있으며, 종전 변호사업계에서 보이지 않았던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방식이기에 혼자서 기존의 장벽들을 헤치며 고군분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 다. 공익변호사 활동의 특수성

공익변호사들은 기존에 변호사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한다. 법률자문과 소송 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인권활동가들과 함께 일을 하기에 코디네이터로 서의 역할을 해야 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토론회. 세미나 등을 기획하는 기획력

<sup>15)</sup> 사단법인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위탁ㆍ운영

<sup>16)</sup> 굿네이버스가 위탁·운영,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9. 7. 출범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흡수되었다 (아동복지법 제10조의2).

<sup>17)</sup>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위탁·운영

<sup>18)</sup> 다른 대학교의 인권센터에도 상근변호사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익변호사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위주로 조사를 실시했다.

(오거나이저)도 있어야 한다. 코디네이터나 오거나이저로서의 역할은 공익변호사라면 존재지반을 불문하고 맞닥뜨리게 되는 역할인 것 같다. 여기에 더하여 단체의 상근변호사라면 후원·모금(회원관리 등), 홍보, 세무·회계 등과 관련한 일도해야 한다.

반면 공익변호사들은 기존에 비변호사인 활동가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한다. 어디를 가든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격증이 있는 법률전문가로서 사안에 대해 법률적인 의견을 정리하여 제시하거나, 소송이나 법률절차를 진행하거나, 현행 법 자체의 문제가 있다면 이를 법적으로 뛰어넘을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 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전자와 관련한 역할에 대해서는 기존의 비영리조직 활동가들조차도 관련한 역량 강화를 어떻게 조직화·체계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와 고민들이 있어왔으니 공익변호사들에게도 공통된 부분이 있다. 그런데 공익'법'운동에 있어 다른 인권 운동 부분보다도 '법'이라는 권위적이고 전문적인 특수한 '언어'를 가지고 당사자 및 시민단체·법률가들을 엮어내야 하다 보니, 중간에서 코디네이터, 오거나이저로서 역할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법률행정업무를 혼자서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종 전의 법률 논리를 뛰어넘는 연구를 해서 서면을 써야 하는 경계인으로서의 어려 움과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

위와 같은 두가지 이유로 인하여 공익변호사들은 기존의 제도, 기존의 활동방식에 포섭되지 않아 생기는 반복되는 어려움들에 대해 짚어보고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생각해보는 것이 이 보고서를 기획한 이유이다.

# Π.

# 실태조사 방법

- 1. 설<del>문</del>조사
- 2. 심층면접조사
- 3. 국내·외 관련 법제 및 자료 연구
- 4. 연구 일지

#### 1.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공익변호사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들과 그 속에서 경험하는 욕구와 필요들을 일단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후 살펴보게 되겠지만 각 활동 방식에 따라 공익변호사들이 느끼는 어려움들은 무척 다양하기 때문이다.

먼저 객관식으로 공익변호사들의 기초적인 통계를 도출하기 위한 내용과 존재지 반의 다양성 및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공익변호사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단초를 얻기 위해 공익변호사를 그만둔 사유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전직 공익변호사도 포함하여 설문을 진행하려고 하 였으나 쉽지는 않았고 응답률이 높지는 않다. 약 120명의 공익변호사들에게 이 메일로 설문조사지를 보냈고 그 중 75명이 답하였다. 설문 항목의 복잡함을 감 안할 때 예상보다 높은 응답률이었다.

설문 설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처음 하는 연구인데다가 각 공익변호사들의 존재지반이 광범위하여 그것들을 공통해내는 질문들을 '객관식으로'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 작업이 또 언제 이루어질까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단답형 주관식으로라도 답하게 하고 결과의 추이를 보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다보니 설문 내용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답변자들의 토로가 있었다. 또한 설문내용 자체가 소속된 곳의 사정을 반영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어서 답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민주노총법률원(법무법인 여는) 소속 변호사들의 경우가 특히 그랬는데, 처음 설문부터 법률원의 상황을 함께 포섭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못한 결과로 민주노총법률원의 현황과 고민을 담아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 법률원은 별도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보려 노력했다.

이후 기회가 된다면 학계의 연구자와 함께 보다 분명한 설문 설계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더 구체적이고 응축된 질문들을 가지고 관련 연구를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별첨 1] 설문지 참조).

#### 2. 심층면접조사

심층면접조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되도록 여러 유형의 변호사들을 만나보되, 방향성을 볼 수 있도록 유사한 활동 방식(혹은 존재지반)을 가지고 있는 곳들을 묶어서 살펴보았다. 주로는 단체 유형별로 활동가 중심 단체, 변호사 중심 단체, 로펌 기반 단체,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이 출연된 단체, 지역 공익변호사인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각기 다른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익변호사들이 있는데 만나보지 못한 것이 연구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연구에서는 영리와 공익을 병행하는 모든 법률사무소를 포함하지 않았다. 그 중에서 각 구성원들에게 지급되는 금원의 상한선을 두고 그 이상의 금원은 배분하지 않으면서 일정한 공익목적을 위해 마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처럼 모아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사무소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비영리의 활동 방식과 가장 부합하기 때문이다.

심층면접조사에 있어서도 초반에 몇 가지 질문 방향을 정하기는 하였다([별첨2] 심층면접조사 공통질문표). 설문조사에서 중복되는 질문은 생략하고 진행하기도 하였다. 상근변호사가 소속된 곳의 특성, 인터뷰이의 연차, 직책에 따라 질문도 그때그때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공통된 질문에 대한 답변도 달라졌다.

소속단체 구성원 중 저년차와 중간연차 등 다양한 연차와 활동기간을 고려해 면 담하였다면 더 정확한 분석이 나왔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시간상의 한계로 그럴 수 없었다. 총 13차례의 면담을 진행하고 속기록을 정리하는 과정도 힘에 부쳤음을 고백한다.

#### 3. 국내·외 관련 법제 및 자료 연구

국내에도 공익변호사 현황 자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자료는 없었지만(공익변호 사의 전망과 개요와 관련한 자료들은 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자료를 찾기는 어려웠 다. 다만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연구를 한 것이 있었다. <sup>19)</sup>

그리고 비영리단체에서 상근하는 변호사들의 공통된 문제인 변호사법 제34조와 관련한 쟁점을 알아보기 위해 미국, 영국, 일본, 독일의 변호사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각국 비영리단체 상근 공익변호사의 현황과 변호사법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된 자료를 찾기 어려워 연구가 쉽지 않았다.

#### 4. 연구 일지

#### 가. 연구원

강정은(사단법인 두루, 이하'두루'), 권소연(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이하 '동행'), 김민아(동행), 마한얼(두루), 배영근(법무법인 자연, 이하'자연'), 엄선희(두루), 이소 아(동행), 최초록(두루) 변호사/총 8명

#### 나. 회의 일정

- 1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 2018. 9. 7. 16:00~18:00 / 사단법인 두루 10층 2호 회의실
- 참석 : 강정은, 권소연, 배영근, 엄선희, 이소아, 최초록
- 논의사항 : 공익변호사 매뉴얼 필요성,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 필요성, 매뉴얼

<sup>19)</sup> Deborah L, Rhode, "Public Interest Law: The Movement at Midlife", Stanford Law Review Volume 60. Issue 6. 2008.

내용 설계(단체 설립 및 운영, 변호사로서 세무·회계·법률행정실무), 설문지 내용 검토, 역할 분담 및 향후 일정 계획

#### ○ 2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 2018, 9, 28, 14:00~15:00 / 인터넷 화상 회의
- 참석 : 강정은, 권소연, 배영근, 엄선희, 이소아, 최초록
- 논의사항 : 인터뷰 일정 계획, 연락망 개설, 코딩진행상황, 역할 분담 및 향후 일정 계획

#### ○ 3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 2018, 12, 10, 16:00~18:00 / 사단법인 두루 8층 회의실
- 참석 : 강정은, 권소연, 이소아, 최초록
- 논의사항 : 타임라인[설문배포(12월), 응답취합(1월), 코딩작업 및 원고작성(2월), FGI(3~4월)], 역할 분담(매뉴얼 작성, 설문조사 배포 및 코딩업체 연락, 인터뷰일정)

#### ○ 4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 2019, 3, 4, 14:00~16:00 / 사단법인 두루 10층 3호 희의실
- 참석 : 강정은, 권소연, 마한얼, 배영근, 엄선희, 이소아, 최초록
- 논의사항 : 진행관련보고, 실태조사 방향 및 일정 수정(해외입법례 리서치), 역할분담(논문, 라운드테이블 회의자료, 해외문헌연구, 전자소송 분야), 설문조 사 분석논의, FGI일정공유, 향후 일정 계획

#### ○ 5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 2019. 4. 10. 15:00~17:00 / 사단법인 두루 8층 회의실
- 참석 : 강정은, 권소연, 배영근, 엄선희, 이소아, 최초록 변호사
- 논의사항 : 주관식 응답의 카테고리화 작업 관련 역할 분담, 설문지 전체 내용 검토(항목 간 관계 확인). FGI 일정 공유, 향후 일정 계획

#### ○ 6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 2019. 5. 16. 14:00~18:00 / 서울 성북구 장위로 10길 24-31(워크숍)
- 참석 : 강정은, 권소연, 마한얼, 배영근, 엄선희, 이소아. 최초록
- 논의사항 : 방향성 정비, 예산마련, 공익변호사 행정실무 초안 논의, 설문조사 결과 공유. 해외사례연구. 매뉴얼 상세 목차구성

#### ○ 7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 2019. 6. 28. 13:30~16:00 / 사단법인 두루 10층 5호 회의실
- 참석 : 강정은, 김민아, 마한얼, 배영근, 엄선희, 이소아, 최초록
- 논의사항 : 중간회계 보고, 정책간담회 기획, 실태조사 및 매뉴얼 원고 검토

#### ○ 8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 2019. 7. 12. 10:30-11:30 / 인터넷 화상회의
- 참석 : 강정은, 김민아, 마한얼, 배영근, 엄선희, 이소아
- 논의사항 : 정책간담회 기획, 실태조사 및 매뉴얼 원고 검토

#### ○ 9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 2019. 7. 22. 14:00-15:00 / 인터넷 화상회의
- 참석 : 강정은, 마한얼, 배영근, 엄선희, 이소아
- 논의사항 : 정책간담회 기획, 실태조사 및 매뉴얼 원고 검토

#### ○ 10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 2019. 7. 31. 12:00-16:30 / 사단법인 두루 8층 회의실
- 참석 : 강정은, 마한얼, 배영근, 엄선희, 이소아
- 논의사항 : 실태조사 및 매뉴얼 원고 최종 검수

#### 다. 심층면접조사 일정

- ① 변호사 중심 공익단체
- 일시 : 2018. 8. 28.
- ② 변호사 중심 공익단체 : 공익변호사단체의 시작과 앞으로의 방향
- 일시 : 2018. 11. 7.
- ③ 변호사와 활동가 중심 공익단체
- 일시 : 2019. 1. 29.
- ④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설립한 공익단체
- 일시 : 2019. 4. 3.
- ⑤ 로펌 기반/변호사 중심 공익단체
- 일시 : 2019. 4. 8.
- ⑥ 변호사 중심 공익단체
- 일시 : 2019. 4. 10.
- ⑦ 지역공익변호사(활동가 중심 단체)
- 일시 : 2019. 5. 23.
- ⑧ 영리와 공익의 병행(법률사무소)
- 일시 : 2019. 5. 30.
- ⑨ 활동가 중심 공익단체
- 일시 : 2019. 5. 31.

- ⑩ 변호사 중심 공익단체 : 공익전업의 효시와 앞으로의 방향
- 일시 : 2019. 6. 5.
- ⑪ 로펌 기반/변호사 중심 공익단체 : 공익변호사의 새로운 생태계
- 일시 : 2019. 7. 9.
- ⑩ 지역공익변호사(변호사 중심 단체)
- 일시 : 2019. 7. 9.
- ⑬ 민주노총법률원(법무법인) : 노동조합과 법무법인의 관계
- 일시 : 2019. 7. 26.

### Ш.

###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공익변호사의 현황

- 1. 설문조사
  - 가. 조사 목적 및 대상
  - 나.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 다. 조사 내용
  - 라 조사 결괴
  - 마 소결
- 2. 심층면접조사 : 더 깊은 고민과 이야기들(각 유형별 공익변호사 이야기)
  - 가 벼랑사 중신 단체
  - 나 활동가 중심 단처
  - 다 지역 공인벼하사 이야기
  - 라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 1. 설문조사

#### 가. 조사 목적 및 대상

본 설문조사는 한국에서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였거나 하고 있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004년 첫 공익변호사단체인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 설립된이후 15년이 지난 지금, 공익변호사에 관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공익변호사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 대상은 전국에 있는 공익변호사 118명으로, 외국변호사(5명)와 휴직자를 포함했다. 다만, 민주노총법률원에서 상근하는 변호사의 경우, 소속이 비영리단체가 아닌 법무법인인 점 등을 이유로 본 설문조사에 응답하기가 어려워, 응답자들의 요청에 따라 본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지만 심층면접조사에서 이를 보완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조사 대상을 확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① 변호사 중심으로 구성된 공익변호사단체에서 활동하는 공익변호사, ② 로펌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공익변호사, ③ 활동가 중심의 시민단체를 기반으로 하는 공익변호사, 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위탁한 기관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변호사, ⑥ 공익변호사를 지원하는 단체, 대학교(또는 법학전문대학원)가 설립한 센터 등 그 밖의 다양한 형태의 단체에서 활동하는 공익변호사가 있다.

#### 나.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설문조사는 2019. 1. 2.부터 2019. 2. 10.까지 약 5주간 실시되었다.

설문지 응답은 총 75부였으나, 1부는 일반사항(연령, 성별, 활동지역 등) 및 주관식 문항에 답하지 않아 제외하여 총 74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조사 대상 118명 가운데 총 74명이 응답해, 응답비율은 62.7%에 달했다.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Statistics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자료 분포형태, 문항의 방향성, 결측값(무응답) 및 극단치 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 기술통계 분석, 다중응답 분석,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 다. 조사 내용

설문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일반 인적사항 및 활동 현황에 대한 내용이다. 연령, 성별, 활동지역, 변호사 연차, 공익변호사로서 활동한 기간, 공익변호사를 하게 된 동기, 현재 공익변호사 활동 여부 및 활동 기간, 공익변호사를 그만 둔 이유를 답하도록제시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단체와 관련된 일반 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일했거나 일하고 있는 공익단체의 형태, 단체의 활동 분야와 활동 방식, 법률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방법, 소속 단체의 창립연도와 상근변호사가 상근을 시작한 연도 및 연도별 상근 변호사 수, 상근변호사의 수가 증가했다면 추가 채용 이유와 채용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방법, 상근변호사를 추가로 채용하지 않은 이유, 상근변호사 인원의 적절성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세 번째 부분은 단체의 인적구성 현황과 관련된 것이다. 소속 단체의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상근자의 현황, 변호사가 아닌 상근자가 없는 경우 그 이유와 실무 수행방법과 그 장·단점, 변호사가 아닌 상근자가 1명 이상 있는 경우 비변호사 상근자의 역할과 함께 일하는 장·단점, 상근이 아닌 변호사 현황(인원, 직책, 역할), 인턴·자원활동가 현황(역할, 활동비) 등으로 구성했다.

네 번째 부분은 단체의 물적구성 현황 및 재정에 대한 내용이다. 단체의 주된 재정 수입원과 그 비율, 수입원 각각의 장·단점, 단체의 연간 수입·지출액, 재정자립 가부. 홍보방법을 선택형 또는 단답형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마지막 부분은 공익변호사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질문했다. 현재 단체에서 일하게 된 배경에서부터 공익변호사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 시급하게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급여, 활동 단체에서의 계속 근무의사(가 있다면 단체 내 상근변호사로서의 전망이나 계획/가 없다면 그 이유),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제도·정책 현황에 대해 답하도록 제시하였다.

이러한 설문구성 방식을 통해 공익변호사 개인뿐만 아니라, 공익변호사가 상근하는 단체 및 공익변호사와 관련된 제도의 현재를 진단하고자 했다. 공익변호사가 활동하면서 직면하는 어려움과 한계를 파악하고, 공익변호사 당사자의 구체적인 욕구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설계하였다.

[표 2] 조사내용

구분	내용	문항
일반 인적사항	성명, 소속, 전화, 이메일, 연령, 성별, 활동지역, 변호사 연차, 공익전업변호사 활동기간, 공익전업변호사 하게 된 동기, 현재 활동여부, 활동시기, 활동중단 이유	13문항
단체 일반사항	공익단체 형태, 소속단체 주된 분야, 주된 활동 방식, 법률지원 대상선정 기준, 대상선정 방법, 창립연도, 상근변호사 상근 시작연도, 상근변호사 수, 추가채용 이유, 추가채용 재원마련 방법, 채용하지 않는 이유, 상근변호사 수 적절성	12문항
단체 인적구성 현황	변호사 상근자 수, 비변호사 상근자 수, 비변호사 상근자를 두지 않는 이유, 실무해결 방법, 실무해결의 구체적인 방법, (비변호사 상근자 없는 경우) 상근변호사 실무수행 장단점, 단점 극복방법, 비변호사 상근자 역할, 변호사와 비변호사 상근자 협업 장단점, 단점 극복방법, 비상근변호사 활동 여부, 비상근변호사 직책, 비상근변호사 인원, 비상근변호사 역할, 비상근변호사 필요성 여부, 인턴·자원활동가 활동 여부, 인턴·자원활동가 역할, 인턴·자원활동가 활동비 지급 여부, 인턴·자원활동가 선발 이유, 인턴·자원활동가 미선발 이유	20문항

구분	내용	문항
단체 물적구성 현황	주된 재정수입원 비율, 장점, 단점, 연간 수입·지출 정도, 재정자립도, 재원확보 방법, 홍보 방법	7문항
공익변호사 필요한 사항	일하게 된 배경, 공익전업변호사 힘든 점, 시급하게 바뀌어야 할 부분(외부, 내부), 현재 급여 수준, 급여의 충분성, 지속가능한 급여 수준, 연차에 따라 급여 상승 여부, 급여 상승하지 않는 이유, 계속 근무 여부, 전망 및 계획, 계속 근무하지 않거나 계속 근무 여부를 알 수 없는 이유	12문항
기타	향후 설문문항 포함 희망사항, 공익변호사 활성화 방안, 공익변호사모임 바라는 점	3문항

# 라. 조사 결과

# (1) 일반 인적사항

# 1) 성별 및 연령대

전·현직 공익변호사 74명이 응답하였으며, 응답자들의 일반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여성이 64.4%, 남성이 35.6%로 여성의 응답 비율이 더 많았다. 연령대는 30대 70.3%, 40대 27.0%, 20대 2.7% 등의 순이며, 30대의 응답 비율이 가장 많았다.

[표 3] 성별 및 연령대

구분		공익변호	사(N=74)
		빈도(명)	비율(%)
	여성	47	64.4
성별	남성	26	35.6
~ ~ ~	기타	_	_
	총계	73	100.0
	20대	2	2,7
	30대	52	70.3
연령대	40EH	20	27.0
	50대 이상	_	_
	총계	74	100.0

## 2) 근무지역

응답자의 근무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85.1% 경기 8.1% 전라도 2.7% 순으로 응답하였다. 설문조사 당시 서울과 경기권을 제외하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익변호사는 4명(5.4%)에 불과했다(전직인 제주 1명 제외). 2019. 7. 기준, 설문조사당시 응답했던 충청 1명, 경상 1명이 공익변호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지역에서활동하는 공익변호사는 전라 지역에만 남게 되었다. 공익변호사 활동의 지역 간편차가 매우 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4] 근무지역

구분	공익변호사(N=74)		
	빈도(명)	비율(%)	
서울	63	85.1	
경기	6	8.1	
충청	1	1.4	
경상	1	1.4	
전라	2	2.7	
제주	1	1.4	
강원	_	_	
총계	74	100.0	

## 3) 경력

변호사 근무경력은 '5년 이상 10년 미만' 41.1%, '3년 이상 5년 미만' 26.0%, '3년 미만'과 '10년 이상'이 각 16.4% 순으로 나타났다. 공익변호사의 활동기간은 전·현직 전체적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 35.1%, '3년 미만' 33.8%, '3년 이상 5년 미만' 24.3%, '10년 이상' 6.8% 순으로 나타났다. 변호사의 근무경력과 공익변호사의 활동기간 모두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공익변호사의 활동기간 '10년 이상'이 6.8%(5명)라는 점을 통해 공익변호사의 활동 역사가 길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경력

78	변호사 근무경력(N=74)		공익전업 변호사 경력(N=74)	
구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3년 미만	12	16.4	25	33.8
3년 이상 5년 미만	19	26.0	18	24.3
5년 이상 10년 미만	30	41.1	26	35.1
10년 이상	12	16.4	5	6.8
총계	73	100.0	74	100.0

## 4) 공익전업변호사를 하게 된 동기

공익변호사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한 응답으로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가 7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적성에 맞아서'가 13.5% 등으로 나타났다. 대 다수의 공익변호사들은 자신이 원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이 일을 시작했다고 답변했다.

[표 6] 공익전업변호사를 하게 된 동기

78	공익변호사(N=74)		
구분	빈도(명)	비율(%)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53	71.6	
적성에 맞아서	10	13.5	
구직할 때 채용공고가 나서	1	1.4	
기타	10	13.5	
- 총계	74	100.0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게 된 기타 의견으로는, 위의 항목 중 2~3가지 해당하거나 개인적 소명. 일이 재미있어서 등이 있었다.

[표 7] 공익전업변호사 동기 기타의견

내용	빈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적성에 맞아서	3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적성에 맞아서, 구직할 때 채용공고가 나서	1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구직할 때 채용공고가 나서	2
개인적 소명으로 생각하고 일하고 있음	1
변호사 준비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일	1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미루고 싶지 않아서, 모든 여건들이 잘 맞았음	1
일이 재미있어서	1
총계	10

## 5) 공익전업변호사 활동 여부

현재 공익전업변호사 활동 여부는 87.7%(64명)가 현재 활동 중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2.3%(9명)가 활동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 8] 공익전업변호사 활동 여부

구분	공익변호사(N=74)		
十 <del>世</del>	빈도(명)	비율(%)	
예	64	87.7	
아니요	9	12,3	
총계	73	100.0	

현재 공익전업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지 않는다고 응답한 9명은 공익전업변호사로 활동했던 시기 및 그만 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특히, '지속가 능하지 않은 급여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공익변호사를 그만 두었다고 응답한 자들의 퇴직 당시의 급여 수준을 분석해 본 결과,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 [표 9] 그만둔 이유

내용

또한, 현재 공익전업변호사 활동 여부에 따른 공익변호사 활동 기간을 분석한 결과, 현재 활동하고 있지 않은 대상자 중 공익전업변호사로 활동했던 기간은 '3년차 이상 5년차 미만' 응답 비율이 44.4%, '3년차 미만'과 '5년차 이상 10년 미만'이 각각 22.2%, '10년차 이상'이 11.2%로 나타났다.

[표 10] 현재 공익전업변호사 활동 여부에 따른 활동 기간

구분		공익전업변호사 활동여부			
		С	베	OŀL	- 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3년차 미만	23	35.9	2	22.2
공익전업	3년차 이상 5년차 미만	14	21.9	4	44.4
변호사 활동 기간	5년차 이상 10년차 미만	23	35.9	2	22.2
	10년차 이상	4	6.3	1	11.2
	총계	64	100.0	9	100.0

## (2) 단체 관련 일반적 사항

# 1) 공익단체의 형태

현재 소속된 공익단체 형태는 '변호사를 중심으로 설립된 공익단체'가 36.5%로 가장 많았고, '로펌이 설립한 공익단체' 27.0%, '(변호사가 아닌)활동가 중심의

<sup>&</sup>quot;일이 힘들어서"

<sup>&</sup>quot;집행부가 교체되면서"

<sup>&</sup>quot;급여가 지속가능하지 않아서", "일이 힘들어서"

<sup>&</sup>quot;변화가 필요하다는 막연한 생각과 후배 변호사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함"

<sup>&</sup>quot;급여가 지속가능하지 않아서", "가정적인 개인사"

<sup>&</sup>quot;가정적인 개인사"

<sup>&</sup>quot;가정적인 개인사"

<sup>&</sup>quot;급여가 지속가능하지 않아서"

공익단체' 16.2%,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된 공익단체' 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 공익활동만 전담하는 비영리법률사무소, 대학교 부속 인권센터의 형태가 있었다. 소속된 공익단체 가운데 '변호사 중심으로 설립된 공익단체'와 '로펌이 설립한 공익단체'를 합하면 전체의 63.5%를 차지했다.

[표 11] 현재 소속된 공익단체 형태

7.4	공익변호.	사(N=74)
구분	빈도(명)	비율(%)
변호사 중심으로 설립된 공익단체	27	36.5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된 공익단체	6	8.1
(변호사 아닌)활동가 중심의 공익단체	12	16,2
일반 변호사 업무와 공익활동 병행	2	2,7
로펌이 설립한 공익단체	20	27.0
변호사와 활동가가 함께 설립한 공익단체	2	2.7
지방변호사회가 설립한 공익단체	1	1.4
로스쿨이 설립한 공익단체	_	_
다른 NPO(예. YMCA 등)의 부설 단체	2	2.7
기타	2	2,7
· 총계	74	100.0

# 2) 소속단체의 주된 분야(다중응답)

소속단체의 주된 분야는 '공익인권일반' 분야가 14.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장애인' 분야 12.7%, '이주민' 분야 12.1%, '아동·청소년' 분야 11.4%, '난민' 분야 10.5%, '노동' 분야 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분야는 1.0%로 응답자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만, 본 설문은 한 단체에 여러 명이 상근하는 경우 복수 집계되는 한계가 있다.

[표 12] 소속단체의 주된 분야(다중응답)

714	공익변호사(N=74)		
구분	빈도(명)	비율(%)	
공익인권일반	43	14.0	
이주민	37	12,1	
장애인	39	12,7	
 아동 · 청소년	35	11.4	
 난민	32	10.4	
노동	23	7.5	
공익변호사양성/중간지원/연계	22	7.2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14	4.6	
사회적경제	19	6.2	
소비자	3	1.0	
 환경	8	2,6	
 정보	6	2,0	
기타	26	8.5	
 총계	307	100.0	

현재 소속된 공익단체의 주된 분야의 기타 내용으로 여성인권, 빈곤·복지, 홈리스, 북한인권, NPO 법률지원, 권력 감시, 노인 분야 등이 있었다.

[표 13] 기타-소속단체의 주된 분야

내용	빈도	내용	빈도
여성인권	4	교육	1
빈곤·복지	4	국가폭력피해자지원	1
홈리스	4	국제인권(조약기구)	1
북한인권	3	기업과 인권	1
NPO 법률지원	2	동물	1
분야가 특정되지 않음	2	건강권	1
권력 감시,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2	비영리단체	1
노인		법인설립운영지원	1
<u> </u>	2	16개 위원회의 각 분야	1

## 3) 소속단체의 주된 법률 관련 활동 유형과 비중

소속단체의 법률 관련 활동 방식은 5점을 만점으로 할 때, '제도개선'이 평균 4.29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연대활동'이 평균 4.18점, '상담·면담' 평균 4.07점, '법률소송지원' 평균 3.99점, '연구조사' 평균 3.9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엔 및 국제기구 대응 활동'은 평균 2.86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활동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활동 방식은 무료법률자문, 법률교육, 공익변호사지원, 기획소송, 수사절차지원 등의 방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법률관련 활동 방식

구분	공익변호사(N=74)				
十 <del>世</del>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상담·면담	73	4.07	1.07		
법률소송지원	73	3.99	1.18		
제도개선	73	4.29	0,98		
- 연대활동	73	4.18	1.13		
연구조사	73	3.96	0,99		
유엔 및 국제기구 대응활동	72	2,86	1.54		
기타	13	4.31	0,85		

# 4) 소속단체의 법률지원 대상 선정기준

법률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내부 구성원 회의·내부 규정에 따름'에 응답한 비율이 70.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상근변호사 자체 판단'이 10.8%로 나타 났다.

[표 15] 법률지원 대상 선정기준

78	공익변호사(N=74)		
구분	빈도(명)	비율(%)	
내부 구성원 회의·내부 규정에 따름	52	70.3	
상근변호사 자체 판단	8	10.8	
다른 단체의 지원 요청	_	_	
기타	14	18.9	
 총계	74	100.0	

법률지원 대상 선정기준의 기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상황에 따라 위 항목 2~3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은 하지 않고 간단한 법률자문'만 하고 있다고 응답한 답변도 있었다.

[표 16] 기타 – 법률지원 대상 선정 기준

내용	빈도
내부 구성원 회의·내부 규정에 따름, 상근변호사 자체 판단	5
내부 구성원 회의·내부 규정에 따름, 상근변호사 자체 판단, 다른 단체의 지원 요청	3
내부 구성원 회의·내부 규정에 따름, 다른 단체의 지원 요청	5
소송지원은 하지 않고 간단한 수준의 법률자문만 하고 있음.	1
	14

■ 법률지원 대상 선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17] 법률지원 대상 선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 기본원칙 : 공익성/ 당사자의 자력/ 긴급성/ 기타 지원 필요성
- 최초 상담 변호사가 위 원칙을 토대로 소송구조 여부에 대해 1차 판단 후 매주 열리는 집행위에 소송구조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
- 각종 공익단체의 지원 요청에 응하는 경우
- 법률상담을 행한 사건 중에서 소송 등 법적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상근변호사의 자체판단 후 내부구성원 회의에 안건으로 올림.
- 연대단체의 연계의뢰서를 받아 내부 구성원 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결정

- 소속단체를 찾는 사람 모두에게 상담은 제공하되, 소송지원 시 1차로 내규에 따라 맡을 수 있는 사건 인지 검토함.
- 이후 내부 구성원 회의를 통해 소송지원 여부 결정
- 고객이 우선이나, 공익을 표방하지만 사실상 사익을 추구하는 사건은 내부 구성원 회의 등을 통해 거절함.
- 홈페이지의 공익소송 신청란이나, 단체를 통하여 지원 요청이 온 사안에 대해서, 담당자를 정하여 1차 검토한 후, 주간회의 시간에 논의하여, 담당변호사가 최종 결정
- 공익, 인권 관련성/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선정
- 공익변호사들의 활동을 지원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다양한 방식으로 선정함 (지원을 받거나 공고 등을 하는 방식).
- 상근변호사의 법률지원활동은 상근변호사 개인에게 들어오는 공익 법률지원 대상자가 있을 경우 총무이사에게 보고하거나 경우에 따라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진행여부를 판단함.
- 공익성, 취약성, 타 기관 구제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
- 공익성과 내부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법률사업팀장을 중심으로 한 상근변호사들의 내부 회의를 거쳐서 법률지원 대상을 선정함.
- 공익성과 내부적인 역량을 중심으로 선정함.
- 영역별 변호사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선정하되 사무국장과 법률사업팀장의 승인을 거침.
- 법률지원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내부 회의가 필요한 경우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함.
- 공익소송 : 공익성 등을 판단하여 이사회에서 소송하기로 결정
- 조정사건 : 공익성 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분쟁조정센터에 회부하기로 결정
- 일반자문 : 법률상담 후 변호사가 판단하여 자문을 해줌
- 공익소송의 경우 운영위 논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의, 기타 법률상담과 지원은 사무국에서 자체 판단
- 공익전업변호사 또는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 등이 관련 단체의 법률 지원 요청이 있으면, 내부 규정에 따라 변론심사 승인위원회에서 지원여부 결정
-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체 판단, 애매한 경우는 내부 회의에서 토론
- 기본적으로 자체 판단에 따라서 수임여부를 결정하되, 소송/수임건수의 제한을 통해 과로를 방지하는 방식
- 기존에 협력관계에 있는 단체라면 회의를 거치지 않고 법률지원을 하고 있고, 새로운 단체로부터 법률지원요청이 들어온 경우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합하여 법률지원 여부 결정
- 난민협약상 난민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회적 소수자 여부(여성, 아동, 장애인, 구금 등)
- 내부 구성원이 법률지원을 제안하면, 내부 구성원 회의를 거쳐(제도개선효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법률지원 대상을 선정함.
- 구성원이 소송능력이나 소득으로 1차 판단, 외부 인사들로 이루어진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소송지원 여부, 비용 지원 등 2차 판단

- 내부 위원회에서 담당자(활동가, 상근변호사)와 프로보노 활동가(비상근변호사, 비상근학자 등)들이 논의하여 결정함
- 협의, 공익소송지원 소위원회 승인
- 네트워크 결합 단체로부터의 요청 : 내부 영역별 팀회의에서 선정: 전체 주간회의에서 보고
- 홈페이지나 단체 메일로 요청: 일단 변호사 배정: 전체 주간회의에서 보고
- 노동사건의 노동자 측 대리 노동조합의 조직사건 대리
- 다른 단체들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것을 바탕으로 내부 구성원의 간단한 회의를 통해 결정
- 단체 활동분야 연관성이 우선, 다른 단체와의 연대와 상근변호사의 개인적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타 공익분야에 대해서도 법률 지원을 할 수 있음.
- 단체의 미션에 맞는 사건인지가 1차적인 기준이며, 그 외 사건의 의미와 배경, 단체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단체의 활동 목표와 일치 여부에 대한 구성원간의 회의를 통하여 결정함.
- 담당센터의 기존 의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지, 제도개선을 촉구하거나 이슈화를 할 수 있는 선도적 의미가 있는 소송인지, 단체활동이나 연대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기소되거나 피소된 상황인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센터의 실행위원회 회의를 거쳐 법률지원 여부를 결정함.
- 담당자 검토를 통해 결정을 하되, 몇 가지 합의된 원칙에 따라 검토
- 당사자 자력, 공익/인권에의 파급력, 다른 곳에서의 구조가능성 등을 고려함.
- 대상자 직접 지원이 아닌 내부 구성원 대상 지원
- 대상자의 사회적 소수성에 기반한 차별이나 인권침해일 경우에 지원함.
- 권력관계의 불균형에 의한 피해이고 공적체계나 기관이 작동하지 않는 사건을 지원함.
- 지원자의 경제적 상태도 고려함.
- 동물과 관련된 사건일 것, 단체의 취지와 방향에 반하지 않을 것,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 단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내부 회의를 통해서, 기반 로펌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공익위원회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선정
- 단체 내 변론 규정에 따라 당사자 또는 대리인인 회원이 변론사건 지정 및 공익인권기금 지원신청을 하면, 공익인권변론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변론사건 지정 및 기금지원여부, 지원액을 의결하고 그에 따라 기금을 지원함.
- 법률지원의 필요성, 단체 활동의 주된 분야와 맞는 정도
- 법률지원이 필요하나 자력이 없는 상황이거나, 공익인권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거나, 단체의 활동 방향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사건인 경우에 법률지원 대상으로 선정
- 변호사 1차 판단 후 사례회의를 거쳐 결정함.
- 사건의 공익 목적성 부합, 대상의 경제적 상황, 로펌 컨플릭트 체크 등 고려
- 사건의 공익성, 지원 대상의 적절성 및 모법인과의 컨플릭트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성원들이 회의하여 결정함.

- 상담 당시 담당자의 판단과 상담 이후 내부 회의를 거쳐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
- 상담 후 소송 등을 통한 구제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판단
- 자력이 있는지, 공익성이 있는지, 상근변호사 자체 결정 후 후승인 방식
- 상담/면담은 가리지 않고 모두 해드리되, 소송 지원여부는 내담자의 경제적 능력과 긴급성, 사건의 종류에 따라 내부 구성원 회의를 통하여 판단함. 한편 자주 연계가 되는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에서 연결된 사건일 경우에는, 이미 한차례 쉼터에서 판단되어 본 기관에 온 것이므로 대부분 수임함.
- 상담기록을 토대로 소속 변호사/노무사가 일차 판단을 하고, 운영회의에서 지원 결정함.
- 소속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법률지원 대상을 선정함.
- 소송을 지원할 시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체의 심의를 받아 진행
- 어떤 변호사와 매칭하는지 추천은 상근변호사의 자체 판단으로 정함.
- 최종 매칭은 위원회 의결, 상임이사회 의결 순으로 진행
- 여타 활동 수행 중 특정사건을 인지하게 되거나, 연대활동으로 법률지원을 추진하는 경우
- 연대하는 단체에서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기획을 하여 대상을 정하면 내부에서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
- 외부단체의 지원요청을 받으면, 해당 영역의 담당변호사들이 회의를 통해 결정함. 단체와 MOU를 맺은 경우 지원 요청이 있고, 큰 문제가 없다면 바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음. 외부단체나 연대 사례회의에 참여하여, 자원하거나 배당받기도 함.
- 요청, 직접 발굴 등 여러 가지 경로로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각 분야 담당 변호사가 1차적으로 선정하고, 사안에 따라 재단 내부 구성원 회의에 보고 또는 논의하여 결정함.
- 이 중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재단 내부 구성원과 로펌 공익위원회가 함께 논의하여, 로펌 공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함.
- 원칙적으로 해당 영역 담당 상근변호사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나, 절차상으로는 내부 구성원 회의에서 사건에 관한 논의를 하거나, 메일로 회람하여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본 후에 맡게 됨.
- 그러나 최근에는 이처럼 내부 구성원 회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번거롭고, 신속성도 저해한다는 내부 의견이 있어, 최근에는 '법률사업팀장'이라는 명칭의 직책을 두고, 이 팀장직을 맡은 변호사가 수임여부에 관한 자문역할을 하고 있음.
- 간혹 후원 법인의 파트너 변호사가 사건 수임 여부 판단에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해당 파트너 변호사의 의견은 현실적으로 거절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 장애인 학대사건인 경우 형사부터 민사까지 모두 지원함 장애인 차별사건의 경우 상담 및 자문은 항상 지원 가능하고 소송은 회의를 거쳐 결정함 비학대, 비차별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나 당사자가 발달장애인이고 법률구조공단 등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회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함.
- 재직할 당시에는 사무처 변론팀이 실무를 맡았고, 회원 중 5명 정도로 구성된 변론심사위원회에서 법률지원 여부 결정했음.
- 현재는 공익변론센터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내된

- 담당자가 지원에 대한 여부를 1차적으로 결정하고, 돈이 들어갈 일이나 로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지원 등의 사항은 이사회에 안건을 올려 그것을 할지 안할지 결정
- 주로 사회적경제 조직 대상 법률지원사업의 수행자로 지원사업 신청자에 법률서비스 제공, 그 외에는 대표변호사님의 결정에 따름.
- 주로 연대단체들로부터 의뢰가 들어오면, 주 영역 담당 변호사가 1차 판단을 하고, 논의가 필요하면 내부 주간회의를 통해서 결정함.
- 중간지원기관과의 연계에 따른 신청/ 지원 대상자의 자문 및 소송 의뢰
- 지원의 필요성(공익성), 변호사 선임 가능성(경제능력), 현실적 지원필요성(다른 구조단체의 구조 가능성 및 담당 변호사의 지원 이력)
- 특정 영역/ 대상군 (ex.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 법률지원활동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결정함.
- 그 이후 개별 대상자 선정은 법인 사무국 회의에서 결정함.
- 회원 개인의 판단으로 진행하는 소송이 있고, 위원회의 판단으로 진행하는 소송이 있고, 공식사건 지정을 통해 진행하는 사건이 있으며, 현재 단체 공식 변론 사건은 단체 소속 센터 운영위에서 의결하여 결정함.

# 5) 소속단체의 창립연도와 공익변호사 상근 시작연도

## ■ 소속단체의 창립연도

소속단체가 창립한 연도에 대한 총 51명(총 응답자 74명 중 중복기관 제외, 소속기관을 기재하지 않은 7명 포함)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4년이 13.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11년, 2012년, 2013년이 각각 9.8%, 2009년, 2016년, 2017년이 각각 7.8% 등의 순으로 창립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의 소속단체의 창립연도가 가장 빠른 시기는 1988년도, 가장 늦은 시기는 2017년도였다. 소속 단체가 창립된 것과 그 단체에서 '공익전업변호 사'가 일하게 된 시기는 같지 않을 수 있다.

[표 18] 소속단체 창립연도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1988	3	5.9	2009	4	7.8
1994	2	3.9	2011	5	9.8
1998	1	2.0	2012	5	9.8
1999	2	3.9	2013	5	9.8
2002	2	3.9	2014	7	13.7
2004	2	3.9	2015	2	3.9
2007	1	2.0	2016	4	7.8
2008	2	3.9	2017	4	7.8
	총계				100.0

## ■ 공익변호사 상근 시작연도

공익변호사가 상근을 시작한 연도에 대한 총 48명(총 응답자 68명 중 중복기관 제외, 소속기관을 기재하지 않은 6명 포함)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2년, 2013년, 2014년에 각각 1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15년, 2016년, 2018년에 각각 10.5%, 2017년에 6.3%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소속단체의 상근변호사가 일하기 시작한 연도가 가장 빠른 시기는 1994년도이며, 가장 늦은 시기는 2018년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상근변호사를 시작한 연도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1994	1	2.1	2012	6	12.5
1999	1	2.1	2013	6	12.5
2002	1	2.1	2014	6	12.5
2004	2	4.2	2015	5	10.5
2008	1	2.1	2016	5	10.5
2009	2	4.2	2017	3	6.3
2010	2	4.2	2018	5	10.4
2011	2	4,2	_	_	_
	총계				

## 6) 소속단체의 연도별 상근변호사 수

### ■ 연도별 상근변호사 수

연도별 상근변호사 수를 조사한 결과, 2006년 6명이었지만, 2018년에는 68명의 상근변호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익변호사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06년 6명의 기관에서 상근변호사 수가 최소 5명에서 최대 6명이 있으며, 평균적으로 5.17명, 표준편차 0.41명으로 대체로 5명에서 6명이 함께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8년도의 경우 기관당 상근변호사 수가 최소 1명에서 최대 32명<sup>20)</sup>까지 다양한 분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4.49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준편차는 4.54명으로 2006년도에 비해 기관별로 상근변호사 수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 표의 결과 중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 단체 안의 상근변호사 수가 5~6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는 이유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들이 중복 응답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2009년부터는 한 단체 내 상근변호사 숫자가 1명부터 다양하게 분포되는 것으로 집계되는 것을 보아 더욱 그렇다.

[표 20] 연도별 상근변호사 수

구분	공익변호사(N=74)					
구문 	빈도(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명)	표준편차	
2006	6	5.00	6,00	5.17	0.41	
2007	6	6.00	6,00	6,00	0.00	
2008	6	3.00	7.00	5.83	1.47	
2009	9	1.00	7.00	4.56	2.96	
2010	11	1.00	8,00	4.00	3.13	
2011	16	1.00	8,00	3,19	2.86	
2012	27	1.00	7.00	3,22	2.49	
2013	34	1.00	7.00	3.09	2,34	

<sup>20) 32</sup>명으로 답한 곳은 민주노총법률원이고, 그 외에는 최대 10명 이내이다.

71	공익변호사(N=74)					
구분	빈도(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명)	표준편차	
2014	50	1.00	8,00	2.74	2.49	
2015	55	1.00	8,00	3.04	2.35	
2016	58	1.00	9.00	3,41	2.44	
2017	62	1.00	9.00	3,68	2.71	
2018	68	1.00	32,00	4.49	4.54	

### ■ 상근변호사 추가 채용 이유

한 단체 안에서 상근변호사 숫자가 증가하였다면 그 이유는 '해야 할 일이 많아서'가 46.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공익전업변호사 후배양성을 위해서' 11.1%, '시너지 효과를 위해' 3.7%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추가채용 이유로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항목 2~3개를 함께 고려해 추가 채용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 밖에도 '목표달성을 위해서', '이사회 결정 등의 이유'로 추가채용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해야 하는 활동에 비해 상근변호사의 숫자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표 21] 상근변호사 추가 채용 이유

7.4	상근변호사 증가한 응답자(N=54)		
구분	빈도(명)	비율(%)	
해야 할 일이 많아서	25	46.3	
공익전업변호사 후배양성을 위해	6	11,1	
시너지 효과를 위해	2	3.7	
기타	21	38.9	
총계	54	100.0	

## ■ 상근변호사 추가 채용을 위한 재원 마련 방법

상근변호사를 추가로 채용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법은 '적극적인 후원을 독려해서' 마련했다는 응답이 42.0%, '보조금 재정지원'이 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대표 개인 지원, 후원행사, 소송 성공보수, 전체 상근자 수 줄임,

회원 회비와 기부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표 22] 상근변호사 추가 채용 재원 마련방법

711	상근변호사 증가한 응답자(N=54)			
구분	빈도(명)	비율(%)		
보조금으로 재정지원이 되어서	6	12,0		
부족하지만 적극적인 후원 독려해서	21	42.0		
공모사업 등으로 인건비 해결	2	4.0		
로스쿨 등을 통한 제3기관으로부터 모금/기금 지원	2	4.0		
기타	19	38.0		
총계	50	100.0		

## ■ 상근변호사 증감이 없거나 감소한 경우 추가 채용이 없는 이유

상근변호사 증감이 없거나 감소한 경우 추가 채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상근변호사를 채용할 재원이 없어서'가 2명, '지금 인력으로도 충분하다'는 응답이 1명 순으로 나타났다.

# 7) 상근변호사 인원의 적절성

재원 마련이 된다면 현재 소속단체 내 상근변호사의 인원이 '부족하다'가 74.3%, '적절하다'가 25.7%로 나타났다. 즉 재원 마련만 된다면 상근변호사를 추가로 채용하고 싶다는 답변이었다. '부족하다'고 응답한 52명을 대상으로 상근변호사가 추가로 몇 명이 채용되어야 적절한지 조사한 결과, 약 54%인 과반수 이상이 1~2명정도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23] 단체 내 상근변호사 적정 수

구분		공익변호사(N=74)		
		빈도(명)	비율(%)	
단체 내 상근 변호사 인원의 적절성	부족하다	52	74.3	
	적절하다	18	25.7	
	총계	70	100.0	

구분		공익변호사(N=74)		
		빈도(명)	비율(%)	
	1	11	23.9	
	1~2	4	8.7	
	2	10	21.7	
	2~3	3	6.5	
	2~5	1	2,2	
	3	5	10.9	
적절한 추가	3~4	1	2,2	
상근변호사 수	4	4	8.7	
	4~6	1	2,2	
	5	2	4.3	
	7	1	2,2	
	10	1	2,2	
	다수	2	4.3	
	총계	46	100.0	

상근변호사 추가 채용 필요 여부에 따른 소속단체의 공익단체 형태를 조사한 결과, '상근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집단 중 '로펌이 설립한 공익단체'가 31.1%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 중심으로 설립된 공익단체'가 28.9%, '활동가 중심의 공익단체'가 2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근변호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변호사 중심으로 설립된 공익단체'가 58.8%,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된 공익단체'가 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활동가 중심의 공익단체'와 '지방변호사회가 설립한 공익단체', '다른 NPO의 부설단체'의 경우 단체 유형별 응답자 전원이 상근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즉, 대부분 변호사 1명이 상근하고 있는 '활동가 중심의 공익단체'와 '지방변호사회가 설립한 공익단체', '다른 NPO의 부설단체' 및 '로펌이 설립한 공익단체'가 상근변호사 추가 채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변호사 중심으로 설립된 공익단체' 소속의 경우도 상근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상근변호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절반 이상(58.8%)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상근변호사 필요 여부에 따른 공익단체 형태

	상근변호사 필요 여부				
구분	상근변호사 필요하다		상근변호사 필요하지 않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변호사 중심으로 설립된 공익단체	13	28.9	10	58.8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된 공익단체	3	6.7	3	17.6	
(변호사 아닌)활동가 중심의 공익단체	12	26.7	_	_	
일반 변호사 업무와 공익활동 병행	_	_	_	_	
로펌이 설립한 공익단체	14	31.1	1	5.9	
변호사와 활동가가 함께 설립한 공익단체	1	2.2	1	5.9	
지방변호사회가 설립한 공익단체	1	2.2	_	_	
로스쿨이 설립한 공익단체	_	_	_	_	
다른 NPO(예. YMCA 등)의 부설단체	1	2,2	_	_	
기타	_	_	2	11.8	
	45	100.0	17	100.0	

상근변호사 추가 채용 필요 여부에 따른 상근변호사 인원을 조사한 결과, '상근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1명의 상근변호사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7.8%로 가장 많았고, 2명이 20.0%, 8명이 1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근변호사가 필요 없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3명의 상근변호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9.4%로 가장 많았고, 8명이 23.5%, 9명이 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상근변호사가 1명 있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상근변호사 추가 채용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표 25] 상근변호사 필요 여부에 따른 상근변호사 인원

구분		상근변호사 필요여부			
		상근변호사 필요하다		상근변호사 필요하지 않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1명	17	37.8	2	11.8
	2명	9	20.0	_	_
	3명	2	4.4	5	29.4
상근	4명	3	6.7	_	_
변호사	5명	3	6.7	1	5.9
인원	6명	3	6.7	1	5.9
	8명	7	15.6	4	23,5
	9명	1	2,2	3	17.6
	32명	_	_	1	5.9
총	·계	45	100.0	17	100.0

## (3) 단체의 인적 구성 현황

## 1) 상근자 인원

소속단체의 상근변호사 인원을 조사한 결과, 1명이 28.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8명이 17.8%, 2명이 13.7%, 5명이 1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속단체의 변호사 인원은 최소 1명에서 최대 32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up>21)</sup> 소속단체 변호사 전체 인원에서 평균 인원을 분석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소속단체의 변호사 인원 평균은 4.44명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결과들은 한 단체에 소속된 여러 명의 변호사들이 중복된 답을 한 것에 기초한 것이므로, 정확하지 않다. 이후 연구에서는 변호사 개인에 대한 설문조사가 아닌, 변호사가 소속된 '단체'를 기준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sup>21) 32</sup>명으로 답한 곳은 민주노총법률원이고, 그 외에는 최대 10명 이내이다.

변호사가 아닌 상근자 인원의 경우, 한명도 없음이 2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명이 20.5%, 1명이 15.1%, 2명이 1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근자 전체 인원에서 평균 인원을 분석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소속단체의 변호사가아닌 상근자 인원 평균은 6.05명으로 나타났다.

즉, 공익변호사들은 비변호사 상근자 없이 단체에서 변호사 홀로 상근하는 비율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6] 소속 단체 변호사 인원

구분		공익변호사(N=74)		
7'	:문	빈도(명)	비율(%)	
	1	21	28.8	
	2	10	13.7	
	3	7	9.6	
	4	3	4.1	
	5	9	12,3	
소속 단체 변호사 인원	6	4	5.5	
	8	13	17.8	
	9	5	6.8	
	32	1	1.4	
	총계	73	100.0	
	평균	4.44		
	0	19	26.0	
	1	11	15.1	
	2	9	12,3	
	3	15	20,5	
	4	4	5.5	
소속 단체 변호사가 아닌	5	2	2.7	
신호시가 하는 상근자 인원	6	3	4.1	
	8	1	1.4	
	9	2	2,7	
	25	2	2,7	
	29	1	1.4	
	39	1	1.4	

구분 -		공익변호사(N=74)	
		빈도(명)	비율(%)
	50	2	2,7
	80	1	1.4
	총계	73	100.0
평균		6.0	)5

## 가) 변호사가 아닌 상근자가 '0명'인 경우

## ■ 상근자를 두지 않는 이유

변호사가 아닌 상근자가 "0명"이라고 응답한 19명을 대상으로 상근자를 두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재정적인 부담감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즉, 재정마련이 된다면 변호사가 아닌 상근자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욕구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외에 역할의 모호성, 변호사가 아닌 상근자가 변호사에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법인 소속 직원이 업무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상근자를 두지 않는다고응답하였다.

#### ■ 실무 해결 방법

변호사가 아닌 상근자가 "0명"이라고 응답한 19명을 대상으로 실무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52.6%가 '변호사들이 나누어서' 업무를 해결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세무사', '외부용역', '법인 지원', '소송도 할수 있는 활동가', '상근변호사가 다양한 실무를 해결', '후원법인의 직원들이 지원'한다고 응답하였다.

[#	27]	법률지원	이외의	실무	해곀	반법

78	공익변호사(N=19)		
구분	빈도(명)	비율(%)	
- 변호사들이 나누어서	10	52,6	
용역 등 외부에 맡겨서	_	_	
	9	47.4	
 총계	19	100.0	

## ■ 변호사의 실무 수행 방법

변호사가 아닌 상근자가 "0명"이라고 응답한 1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변호사들이 역할을 나누어 실무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표 28] 변호사 실무 수행 방법

- 주요 행정사무, 재정, 회계 및 후원모금, 홍보 등의 경우 사무국장과 팀장이 주도하여 업무 수행함.
- 그 이외의 실무는 상근변호사들이 업무별로 주심과 부심을 맡아 적절히 역할을 나누어 처리함.
- 일정한 재정/행정 관련 업무는 법인의 지원을 받고 있음.
- 1) 재정 및 회계, 세무 관련 업무를 포함한 재정 업무 2) 홍보 업무 3) 법률 행정업무 4) 사단법인 운영 관련 업무로 구분하여 담당자를 정하고 있음.
- 후원모금 업무에는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 위 업무들과 위 구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사무국장직을 두고 있음.
- 재정, 회계, 세무는 담당 변호사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법률사무소 \*\*과 비영리민간단체 \*\*의 재정을 복식부기로 정리하고 있음.
- 후원회원 관리는 담당 변호사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홍보하고 있음.
- 법률 행정사무는 주로 후원회원 관리 담당 변호사가 자체 판단으로 수행하고 있음.
- 사무국장(총괄), 운영지원팀장(재정, 회계, 세무), 홍보(홍보팀장), 법률사업팀장(법률사건 수임 여부 자문), 후원모금 및 후원자 관리는 전체 구성원이 나누어서 분담하고 있음.
- 대표변호사 중심으로 각 변호사들이 재정. 회계, 후원 모금. 후원 등을 지원하는 형태임.
- 아직 단체의 체계가 잡혀있지 않고,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직접 진행하며 일을 배우고 있음.
- 재정, 회계/펀딩/홍보/법률지원 등으로 나누어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음.
- 재정, 회계는 한 변호사가 맡고, 나머지 행정업무는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분담하며, 정해진 매뉴얼은 없음.

### ■ 상근변호사 실무 수행 시 장·단점

변호사가 아닌 상근자가 "0명"이라고 응답한 19명을 대상으로 상근변호사가 실무를 직접 수행할 경우 장점과 단점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점으로, 내부사정에 대한 파악이 쉬운 점, 전문성 확보, 이해도가 높음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단점으로는, 고유 업무에 대한 집중의 어려움, 업무 과중, 전문성 감소, 비효율적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 [표 29] 상근변호사 실무 수행 장·단점

구분	내용
장점	<ul> <li>내부 사정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음.</li> <li>소송에 대한 내외적 실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음.</li> <li>기관의 운영 실무를 주도적으로 배울 수 있고, 문제에 대해 사전에 진단 및 해결 가능함.</li> <li>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빠르고 꼼꼼한 일처리가 가능함.</li> <li>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함.</li> </ul>
단점	<ul> <li>변호사 고유 업무에 집중하기에 어려움이 있음.</li> <li>상근변호사의 업무가 과중함.</li> <li>실무가 효율적으로 진행하지 않음.</li> <li>행정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짐.</li> <li>행정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함.</li> <li>행정업무 담당자가 바뀔 경우 업무의 지속성에 문제가 생김.</li> </ul>

# ■ 상근변호사 실무 수행 시 발생되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변호사가 아닌 상근자가 "0명"이라고 응답한 19명을 대상으로 상근변호사가 실무를 직접 수행할 경우 단점을 극복할 수 방법을 조사한 결과, 업무 매뉴얼화, 적성에 맞는 업무 분담을 통한 전문성 확보, 자원활동가 섭외, 실무수습변호사양성, 업무체계 구축, 상근변호사 채용 증가, 단체 상근변호사들과의 협업, 외부전문가의 효율적 활용, 행정업무량의 주기적 점검 및 조정, 상근활동가 채용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 나) 변호사가 아닌 상근자가 '1명 이상'인 경우

## ■ 변호사 상근자와 비변호사 상근자의 역할 구분

변호사가 아닌 상근자가 "1명 이상" 있다고 응답한 54명을 대상으로 살펴볼 때, 변호사와 비변호사 상근자의 역할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변호사와 비변호사 상근자가 특별한 구분 없이 행정적인 업무를 하기도 하지만 변호사는 대부분 법 률상담과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비변호사 상근자는 그 외 행정 업무 위주로 특히 모금, 홍보, 재정, 회계, 사회공헌활동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상근변호사가 있는 기관의 비변호사 상근자는 협력하여 업 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0] 변호사와 변호사 아닌 상근 활동가의 역할

변호사	변호사가 아닌 상근자
<ul> <li>법률상담</li> <li>법률 및 행정업무</li> <li>소송 및 법률자문</li> <li>제도개선, 정책연구 등</li> <li>공익소송 및 공익사업</li> <li>계약</li> <li>언론연대</li> <li>단체의 목적사업</li> </ul>	<ul> <li>모금, 홍보, 기부자(회원) 관리</li> <li>재정, 회계, 세무, 총무</li> <li>법률 행정사무 전체 또는 일부</li> <li>상근변호사와 협력</li> <li>외부 목적사업</li> <li>교육, 연구(리서치) 등</li> <li>사회공헌 사업</li> <li>출판업무</li> <li>위원회 및 TF팀 업무 지원</li> <li>상담접수 및 공익사업보조</li> <li>단체의 목적사업</li> </ul>

#### ■ 변호사 상근자와 비변호사 상근자가 함께 일하는 장·단점

변호사가 아닌 상근자가 "1명 이상" 있다고 응답한 54명을 대상으로 변호사와 변소사 아닌 상근 활동가가 함께 일하면 발생되는 장점과 단점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점으로는, 본연의 업무에 대해 몰입 가능함, 다양한 시각에서 사업 진행, 효율성 극대화, 시너지 발생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단점으로는, 비변호사 상근자의 법률업무에 대한 이해부족, 소외감, 성장의 한계, 법률업무의 교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특별한 단점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표 31] 변호사와 변호사 아닌 상근 활동가 함께 일하는 장·단점

구분	내용
장점	<ul> <li>본연의 업무에 몰입할 수 있음.</li> <li>다양한 시각에서 사업진행이 가능함.</li> <li>각자의 전문성에 맞는 업무분장이 가능하여 효율성 극대화</li> <li>다양한 분야의 이슈 및 정보 파악 용이</li> <li>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으로 시너지 발생</li> <li>다양한 방식과 시각으로 문제해결 가능(다학제적 접근) 및 경험공유, 함께 기획할 수 있음.</li> <li>모금활동 전문인력으로 기금관리가 안정적임.</li> <li>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됨.</li> </ul>
단점	법률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     세세한 법률과정 공유의 불필요함을 느끼면서 단절감이 생김.     변호사가 1인일 경우     법률에 대한 의견교류가 어려움     변호사 부재시 법률에 대한 백업이 불가능함.     법률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없음.     변호사 중심단체에서 상근활동가들의 소외감, 성장 가능성에도 한계가 있음.     변호사와 상근활동가의 급여 차이로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     상호 이해 부족     분담관련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 ■ 변호사 상근자와 비변호사 상근자가 함께 일하면서 발생하는 단점 극복방법

변호사와 비변호사 상근자가 함께 일하면서 발생하는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는, 소통이 보장될 수 있는 사무실 환경 변화, 제도보완, 고충상담, 상호존중, 내부교육, 변호사와의 네트워크 및 연대활동, 비변호사 상근자 복지체계 확대, 구성원 호칭변경 필요, 평등한 노동환경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반면, 기본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며,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2) 상근변호사 이외의 변호사 활동 여부

소속 단체에서 상근변호사가 아닌 변호사(프로보노 변호사, 고문·자문 변호사, 운영위원 변호사 등)가 활동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7.1%, '활동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32.9%로 나타났다. 공익 변호사들 대부분은 상근이 아니더라도 이사, 고문 내지 자문, 운영위원 등의 방식으로 외부 변호사와 함께 활동하고 있었다.

[표 32] 상근 아닌 변호사의 활동 여부

구분	공익변호사(N=74)		
<u> </u>	빈도(명)	비율(%)	
예	47	67.1	
아니요	23	32,9	
 총계	70	100.0	

#### ■ 상근변호사 이외의 변호사의 직책

'상근변호사가 아닌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47명을 대상으로 상근 변호사 이외의 변호사 직책을 조사한 결과, 총 45명이 응답하였다. 그 결과, 자 문(고문) 변호사와, 운영위원 직책이 각각 17.8%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자문과 운영위원의 직책을 함께 주거나, 이사, 이사장, 감사, 프로보노, 대표, 사 무국장, 센터장, 펠로우 변호사 등의 직책을 부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33] 상근 아닌 변호사의 직책

<b>기</b> 법		공익변호사(N=47)	
	구분	빈도(명)	비율(%)
자문(고문)변호사		8	17.8
	운영위원	8	17.8
	자문 + 운영위원		
	이사, 이사장, 감사		64.4
	프로보노 변호사	29	
	펠로우 변호사		
기타	파트너 변호사		
	실행위원, 집행위원, 법률위원		
	대표, 센터장		
	사무국장		
	회원		
	총계	45	100.0

# ■ 상근변호사 이외의 변호사 인원

'상근변호사가 아닌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47명을 대상으로, 상근 변호사 이외의 변호사 인원을 조사한 결과, 총 46명이 응답하였다. '5명 미만'이 4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명 이상 10명 미만'과 '20명 이상'이 각각 21.7%, '10명 이상 20명 미만' 13.0% 순으로 나타났다. '20명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로펌을 기반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활동 협력기반인 법무법인을 고려해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표 34] 상근 아닌 변호사의 인원

714	공익변호사(N=47)		
구분	빈도(명)	비율(%)	
5명 미만	20	43.5	
5명 이상 10명 미만	10	21.7	
10명 이상 20명 미만	6	13.0	
20명 이상	10	21.7	
총계	46	100.0	

### ■ 상근변호사 이외의 변호사의 업무분담 내지 역할

상근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들은 각 기관별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업무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5] 상근변호사 이외의 변호사의 업무분담 내지 역할

- 매주 일요일 이주민 무료 진료소 방문 상담 수행
- 연 4회 자문변호사 교육진행: 스터디모임
- 센터에서 진행한 상담사건 중 소송 진행이 필요한 사건배당
- 공익시간인정
- 미국bar 변호사들이 펠로우 변호사로 함께하며 국제인권 매커니즘 대응 등 국제인권법 분야에서 공동 활동함.
- 인연이 닿는 선배 변호사들께서 후원위원회 운영위원으로 함께하며 모금행사나 홍보사업의 일환인 대중강연 등을 함께 기획, 집행함.
- 이사회: 이사의 경우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논의. 결의
- 공익활동 위원회위원의 경우 재단의 각 분야에 상응하여 각 분야별로 하위 공익활동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재단 각 분야 담당변호사의 사건배당에 따라 상담함.
- 소송수행-월별로 공익활동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때 재단의 공익변호사와 함께 논의
- 각 위원회는 상근 아닌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사무처도 비상근 차장의 일부를 맡음.
- 격월로 이사회가 열리고, 이사회에서 중요 지원사항 등을 의결
- 공익소송 시 지원여부에 대한 판단, 운영에 대한 자문 등
- 위원회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사무차장 등으로 사무처 업무에도 기여
- 나아가 단체가 담당하는 소송을 심의하거나 직접 진행하기도 함.
- 다양한 기업의 변호사로 계셨던 경험을 토대로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고문/자문의 역할로 이해됨.
- 단체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 법률지원 대상의 선정에 관여, 법률업무 수행에 대한 조언
- 단체의 큰 사업이 있는 경우 함께 상담 진행
- 로펌의 공익위원회와 산하 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상근변호사와 함께 각종 공익사건에 프로보노로 참여함.
- 이사 또는 감사로서 중대한 일을 결정하거나 검토함.
- 분기별 법률위원회 회의
- 분기별로 1회 운영위원회 회의, 단체운영 주요사안에 대한 자문 및 감수
- 전체적인 방향설정이나 의견 결정 등에 관여

#### 내요

- 비상근 전임 변호사: 센터업무 총괄 1인
- 프로보노 지원 특별 위원회 : 의결기구, 인원수 (센터장 포함) 16인
- 사무국장: 매주 집행회의 참석 및 회의주제, 홍보 및 후원자 모집 업무
- 대표: 매월 운영회의 참석, 프로젝트 참여
- 자문변호사: 매주 무료법률상담 프로보노, 소송구조 등
- 사업의 방향 설정 및 주요 의사결정
- 사회적경제 영역의 경우, 주로 후원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들이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상근변호사의 인력 및 전문성만으로는 협력관계에 있는 모든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자문수요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임.
- 상근변호사의 인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할 때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도움은 매우 큰 힘이 됨.
- 상근 아닌 변호사들은 소송수행을 일부 분담하여 수행하거나, 논평, 성명서, 의견서 등의 입장 발표에 참고의견을 보태는 방식으로 주로 활동함.
- 비상근인 센터 소장의 역할을 맡고 있는 변호사에게는 외부로 나가는 모든 센터의 입장에 대해 최소한의 검토와 승인을 얻고 있음.
- 그 외 실행위원에게는 1-2개월에 한 번씩 진행되는 실행위원회 회의를 통해서나 상근변호사의 개별적 요청을 통해 비상근 변호사들에게 역할 배분
- 상근 변호사는 대부분 소송에 있어 주도적 역할 및 최소한 공동 수준의 역할 분담
- 그 외 정책활동과 입장표명, 홍보 등의 모든 센터 사업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상근 아닌 일반 회원 변호사가 상당한 단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음.
- 상근 아닌 변호사가 단체의 집행부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실질적 사업을 주도함.
- 소속단체 업무 결정 및 법률 상담 지원
- 소송, 연구조사 분담
- 업무 총괄
- 운영위원
  - 재단 재정, 회계 및 운영 관련 전반을 관장
  - 조직운영에 있어서 자문을 제공, 운영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
  - 단체의 운영방안 등에 대한 조언
- 월례회의를 통해 상근변호사의 안건, 제안 심의 결정
- 위원회를 소집하여 법률견해가 필요한 일에 자문을 구하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돕고 있음.
- 실제 고발대리 등을 분담하기도 함
- 이사회
  - 이사회 역할을 하는 운영위원으로서 단체의 중요한 결정
  - 이사로서 단체 전반의 운영 및 홍보 관련 사항을 검토
- 공익소송 대리인단 구성을 함께 하기도 함. 후원에 있어서도 도움

- 이사회 참석 외에 상시적인 업무분담 없음. 가끔 자문이나 단체에서 수행하기 애매한 사건들을 유료로 저렴하게 부탁드림.
- 조력의 필요성은 크나 단체 내부에서 조력할 여력이 없거나, 법률업무 전문성의 면에서 외부 조력이 더욱 적절할 경우 case 조력을 건별로 요청하는 방식
- 주2-3회 출근해서 외국 문헌 리서치 지원
- 주로 난민소송에 대해 도움을 요청함.
- 주로 특정사안에 대한 법률자문. 지침이나 매뉴얼 개발 연구 등에 있어 협업
- 특정 사업 수행 등 필요시에만 자문변호사 자문을 받음.
- 프로보노 소송지원, 내부 의사결정 참여
- 해당사업에서 필요한 경우 심의, 자문, 운영에만 의견을 수렴
-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단체의 업무에 중요한 사항은 자문변호사님께 여쭈어 일처리를 함.

### ■ 상근변호사 이외의 변호사 필요성 여부(전체 응답자)

상근변호사 이외의 변호사 필요성 및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2.6%,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27.4%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약 73%가 상근변호사 이외의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36] 상근변호사 이외의 변호사 필요성 여부

7 H	공익변호	사(N=74)
구분	빈도(명)	비율(%)
필요하다	45	72.6
필요하지 않다	17	27.4
 총계	62	100.0

#### ■ 상근변호사 이외의 변호사가 필요·불필요한 이유

상근변호사 이외의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업무분담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공익활동이 증대되며, 다양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음, 단체 역량

이 강화됨, 효율적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불필요한 이유로는 상 근자로도 충분하며, 이질감으로 전체 조화를 깰 수 있고, 의사결정구조가 복잡해 질 수 있어 불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표 37] 상근변호사 이외의 변호사 필요 및 불필요한 이유

구분	내용
필요한 이유	<ul> <li>업무분담으로 각자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대응도 가능함.</li> <li>소송 이외의 다양한 업무(후원, 사업기획, 단체운영, 홍보 등) 등에 대해함께 논의 할 수 있으며, 업무 추진이 가능함.</li> <li>공익활동 증대가 가능하며, 활동 확장도 가능함.</li> <li>다양한 경험 및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연대가 가능함.</li> <li>단체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음.</li> <li>효율적인 활동이 가능함.</li> </ul>
불필요한 이유	<ul> <li>상근자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면 충분함.</li> <li>단체의 상황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li> <li>이질감으로 전체조화를 깰 수 있음.</li> <li>상근변호사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단체는 비상근 변호사가 불필요함.</li> <li>외국문헌리서치 등을 전담할 미국 변호사 채용이 더 바람직함.</li> <li>변호사 회원조직의 특성으로 인해 반드시 변호사가 존재해야 함.</li> <li>의사결정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어 불필요함.</li> </ul>

## 3) 인턴·자원활동가 활동 여부

인턴 내지 자원활동가가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활동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9.2%, '활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0.8%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인턴 및 자원활동가와 함께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38] 인턴·자원활동가 활동여부

구분	공익변호사(N=74)		
구문	빈도(명)	비율(%)	
예	42	59.2	
아니요	29	40.8	
총계	71	100.0	

인턴·자원활동가 활동 여부에 따른 소속단체의 공익단체 형태를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인턴·자원활동가가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 중 '변호사 중심으로 설립된 공익단체'가 47.6%로 가장 많았고, '로펌이 설립한 공익단체'가 26.2%, '활동가 중심의 공익단체'가 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턴·자원활동가가 활동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로펌이 설립한 공익단체'가 27.6%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가 중심으로 설립한 공익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된 공익단체', '활동가 중심의 공익단체'가 각각 2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인턴·자원활동가가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 중 '변호사 중심으로 설립된 공익단체'가 가장 많았고, '활동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로펌이 설립한 공익단체'가 가장 많았다.

[표 39] 인턴·자원활동가 활동여부에 따른 공익단체 형태

	인턴/자원활동가 활동여부			
구분	예		아니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변호사 중심으로 설립된 공익단체	20	47.6	6	20.7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된 공익단체	_	_	6	20.7
(변호사 아닌)활동가 중심의 공익단체	6	14.3	6	20.7
일반 변호사 업무와 공익활동 병행	1	2.4	_	_
로펌이 설립한 공익단체	11	26,2	8	27.6
변호사와 활동가가 함께 설립한 공익단체	1	2.4	1	3.4
지방변호사회가 설립한 공익단체	_	_	1	3.4
로스쿨이 설립한 공익단체	_	_	_	_
다른 NPO(예. YMCA 등)의 부설 단체	1	2.4	1	3.4
기타	2	4,8	_	_
총계	42	100.0	29	100.0

### ■ 인턴·자원활동가의 역할

'인턴·자원활동가가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한 42명을 대상으로, 인턴·자원활동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통·번역가, 단체 업무지원 보조 업무, 한국어교실 교사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 공익법률활동에 있어 부차적인 역할에 치중되어 있었다.

[표 40] 인턴·자원활동가의 역할

구분	내용
역할	• 통역과 번역, 커뮤니티 사업 참여 • 연구조사, 공익활동 수행, 문헌조사, 언론 모니터링 등 단체 업무지원 • 상담(전화응대), 교육, 소송기록 검토 등 보조 업무 • 한국어 교실 교사

### ■ 인턴·자원활동가 활동비 지급상황

인턴 및 자원활동가에게 활동비 지급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교통비·식비를 지원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활동시간 대비 최저임금을 지급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2.0% 순으로 나타났다.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7.3%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연계센터에서 활동비 지급 후 기관에 파견,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나 필요에 의해 선발할 경우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고 있음, 학교와 연계되어 학교에서 활동비 지급, 식비만 제공, 출장시에만 출장비를 지급하고 사무실 출근시만 식대 지원, 최저임금 이상의 활동비 지급 등에 대한 답변이 있었다.

교통비와 식비 내지 최저임금 수준이었지만 소정의 활동비를 대부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인턴·자원활동가 활동비 지급

78	공익변호사(N=42)		
구분	빈도(명)	비율(%)	
지급하지 않는다	3	7.3	
교통비와 식비 지원	18	43.9	
최저임금 활동시간	9	22,0	
기타	11	26.8	
총계	41	100.0	

## ■ 인턴·자원활동가를 선발하는 이유 및 선발하지 않는 이유

'인턴·자원활동가를 선발하고 있다'고 응답한 42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공익인권 분야 관심 제고, 관련 분야 종사자 양성, 공익활동 실무경험 제공, 교육기회 제공, 업무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그렇다면 '인턴·자원활동가를 선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29명을 대상으로 그 이 유를 조사한 결과, 선발 및 관리에 대한 부담, 지원자 없음, 필요성 부족, 시간 과 비용 부족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표 42] 인턴·자원활동가를 선발하는 이유 및 선발하지 않는 이유

구분	내용
선발하는 이유	공익인권 분야 관심 제고     관련분야 종사자 양성     공익활동 실무경험과 교육의 기회 제공     공익법률 풀 확대     연구조사, 번역지원, 법률리서치 등 단체 업무 지원
선발하지 않는 이유	선발과 관리에 대한 부담     지원자가 없음     단체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 선발의 여력이 되지 않음.     좋은 경험과 적정한 보수 지급에 대한 불확신     필요 인식에 대한 부족     시간과 비용 부족     교육 여력 부족     인턴에게 줄 지속적인 업무가 없음

### (4) 단체의 물적구성 현황 및 재정에 관한 사항

#### 1) 주된 재정수입원과 재정 비율

#### ■ 단일 재정수입원

단일한 재정수입원을 가진 단체는 총 20곳이었다. 재정수입원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100% 5곳, 일반시민후원금 100% 4곳, 로펌/법인후원금 100% 5곳, 수임료 및 자문비 100% 1곳, 기타재원 100% 5곳으로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43] 단일 재정수입원 단체 현황

	지방자치 단체 등 보조금	일반시민 후원금	로펌·법인 후원금	수임료 및 자문비	다른NPO 기금	기타 재원	전체
계	5곳	4곳	5곳	1곳		5곳	20곳

#### ■ 복수 재정수입원

조사 단체 중 나머지 41곳은 재정수입원이 복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자치 단체 등 보조금과 일반시민 후원금과 기타 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주로 일반시민 후원금과 더불어 로펌·법인 후원금을 받는 단체를 살펴본 결과, 일반시민 후원금의 비율이 높으면 로펌·법인 후원금이 낮고, 일반시민 후원금이 낮을수록 로펌·법인 후원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 외에 기타 후원금 비율이 90% 이상이거나 로펌·법인 후원금 비율이 90% 이상인 단체들도 있었으며,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4] 복수 재정수입원 비율 현황 1

지방자치 단체 등 보조금	일반시민 후원금	로펌·법인 후원금	수임료 및 자문비	다른 NPO 기금	기타재원	전체
96.7					3.2	99.9
39.3	16,2				44.5	100.0
30.0	40.0		10.0		20.0	100.0
26.0	74.0					100.0
15.0	60.0	25.0				100.0
	95.0			5.0		100.0
	92.0				8.0	100.0
	90.7				9.3	100.0
	90,0				10.0	100.0
	80,0					80.0
	80,0	20.0				100.0
	80.0	10.0			10,0	100.0
	80.0	10.0			10.0	100.0
	75.0		10.0	15.0		100.0
	70.0	30.0				100.0
	70.0	30.0				100.0
	70.0	30.0				100.0
	70.0	30.0				100.0
	70.0	30.0				100.0
	60.0		20.0		20.0	100.0
	60.0			15.0	23.0	98.0
	60.0		2.0	15.0	23.0	100.0
	60.0		20.0	20.0		100.0
	60.0			15.0	23.0	98.0
	50.0		45.0		5.0	100.0
	40.0	55.0	5.0			100.0
	40.0	55.0	5.0			100.0
	40.0	55.0	5.0			100.0
	32,4	50.1			17.5	100.0
	22.0	65.0	12,0			99.0
	20.0	50.0			10.0	80.0
	10.0	60.0			30.0	100.0

지방자치 단체 등 보조금	일반시민 후원금	로펌·법인 후원금	수임료 및 자문비	다른 NPO 기금	 기타재원 	전체
	10.0				90.0	100.0
	5.0				95.0	100.0
			30.0	40.0	30.0	100.0
					99.0	99.0
			80,0		20,0	100.0
		85.0			15.0	100.0
		90.0				90.0
		95.0				95.0
		95.0			5.0	100.0

각 재정충당원이 복수 재정수입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추가로 분석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일반시민 후원금'이 46.4%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다음으로 '로펌·법인 후원금'이 24.0%, '기타 재원'이 15.4%, '수임료 및 자문비'가 6.0%,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금'이 5.1%, '다른 NPO기금'이 3.1%의 순이었다.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원은 아직 없다.

[표 45] 복수 재정수입원 비율 현황 2

지방자치 단체 등 보조금	일반시민 후원금	로펌·법인 후원금	수임료 및 자문비	다른NPO 기금	기타재원	전체
5,1	46.4	24.0	6.0	3.1	15.4	100.0

#### ■ 재정수입원의 종류에 따른 장·단점

재정수입원의 종류에 따른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의 경우, 목적이 분명하고 필요한 활동을 하는데 유용하며,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보았고, 단점으로는 사업수행에 수반되는 행정처리가 많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등의 경우에는 활동이 제약되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음으로 '일반시민 후원금'의 경우 장점으로 단체의 가치 확산이나 활동을 홍보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공익활동에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가 가능한 점, 재정의 독립성과 다원화의 점, 안정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단점으로는 기부금 관련 행정업무처리나 후원자에 대한 소식 공유 등 부가적인 행정 업무에 대한 부담이 있고, 기부자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 및 기존 후원자의 지속적인 관심 유지와 노력이 필요한 점을 들었다. 또한 후원이 잘되는 활동만을 부각하게 되는 경향이 단점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로펌·법인후원금'의 경우 상대적으로 용이한 모금과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한 점,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용이한 점을 들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공익활동 수행 범위가 제약되고, 독립적인 활동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이해충돌의 가능성과 로펌·법인 구성원의 반발 가능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리고 재원의 한계와 재원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다른 NPO 기금'의 경우 의미 있는 사업 진행에 있어 긴급한 수혈이 가능하고 다른 NPO 지원사업 공모나 선정 시 목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었다. 반면, 기금 자체의 계획에 따라 유동적인 점, 공모·선정지원금은 그 목 적사업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고 일시적인 것(사업의 지속가능성 담보 어려움)을 단점으로 들었다. 또한 정산에 있어서의 행정 실무도 단점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수임료 및 자문비(소송구조비 포함)'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단체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 당사자가 아닌 연대단체나 대한변호사 협회, 지방변호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단체의 경우 수임료 및 자문비를 내부 구성원이 나누어 갖지 않고 단체 기금으로 축적해 추후 단체가 계획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도 있었다. 단점으 로, 개별사건 처리가 많아 실제 중요한 현안이나 제도개선 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명목상 수입으로 회계처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변 호사 개인에게 지급되는 소송구조비에 대한 국세청 신고 문제(세금 부과)가 발생 하고, 행정업무 과잉과 구조사건 심사탈락이 잦은 것이 단점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표 46] 재정수입원의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지방자치 단체 등 보조금	<ul><li>목적이 분명하고, 필요한 활동을 하는데 유용함</li><li>안정적인 재정확보</li></ul>	사업수행에 수반되는 행정처리가 많음.     활동 제약 가능성(지방자치단체의 감독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상대 소송 등 한계)
일반시민 후원금	<ul> <li>단체의 가치 확산, 활동 홍보</li> <li>공익활동에의 관심 제고</li> <li>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가능</li> <li>안정적인 활동</li> <li>재정의 독립성과 다원화</li> </ul>	<ul> <li>기부금의 경우 관련 행정업무의 처리 부담</li> <li>후원자에 대해 소식 공유 등 부가적인 행정업무</li> <li>기부자 확대의 어려움(신규 기존후원자의 지속적 관심유지 노력 필요)</li> <li>후원이 잘되는 활동을 부각하게 되는 경향</li> </ul>
로펌/법인 후원금	• 상대적으로 용이한 모금 • 안정적인 재원마련이 가능한 점 • 지속사업을 진행하기 용이함	공익활동 수행 범위의 제약     독립적인 활동에 다소 어려움     이해충돌 가능성 내부 구성원 반발     재원의 한계, 재원을 늘리거나 줄이기 어려움
다른 NPO 기금	<ul> <li>의미 있는 사업 진행에 있어 긴급한 수혈</li> <li>다른 NPO 지원사업 공모, 선정시 목돈 지원</li> </ul>	기금 자체의 계획에 따라 유동적인 점     공모, 선정지원금은 그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     정산에 있어 행정실무     일시적임
수임료 및 자문비	<ul> <li>재정자립도가 높아짐.</li> <li>단체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됨</li> <li>당사자가 아닌 연대단체/대한변호사 협회/지방변호사회로부터 받음.</li> <li>수임료 및 자문비를 내부구성원이 나누어 갖지 않음.</li> </ul>	<ul> <li>개별사건 해결로 실제 중요한 현안이나 제도개선 활동에 한계</li> <li>명목상 수입으로 회계처리의 어려움.</li> <li>행정 과잉, 구조사건 심사탈락 잦음.</li> <li>변호사 개인에게 지급되는 소송구조비로 국세청 신고 문제(세금부과)가 발생</li> </ul>

### ■ 기타 재원

기타 재원의 종류로는 강연, 기고, 연구비와 연대단체 분담금, 후원금(단체, 개인)이 있고, 공익재단과 국립대학법인의 해당 예산, 서울지방변호사회 재정 등도 있었다. 그 외 카페수입이나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이 있었다.

기타 재원의 장점으로는 강연, 기고, 연구비의 경우 변호사들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며, 연구용역을 통해 공익법률활동의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있었다. 또한 다양한 재원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안정적인 운영과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도 있었다. 특정 목적사업의 수행이 가능하고(공익변호사들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단체 설립의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기타 재원의 단점으로는, 업무량의 과중이나 일반적인 공익소송이나 공익자문에 투입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거나 재정 규모의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재원을 제공하는 집행부의 성향(인권친화적 여부)에 따라 지원의 폭이 널뛰기 할 수 있으며, 단체 독립성과 재정자립도 측면에서는 매우 부정적일 수 있고, 재정 의존 심화에 따른 사업영역이 제한될 수 있다는 등의 의견도 있었다.

#### [표 47] 기타재원

종류	장점	단점
<ul> <li>강연, 기고, 연구비</li> <li>연대단체 분담금</li> <li>후원금(단체, 개인 등)</li> <li>공익 재단</li> <li>국립대학법인 해당예산</li> <li>서울지방변호사회 재정</li> <li>카페수입, 이자수입</li> <li>기타 잡수입</li> </ul>	<ul> <li>변호사들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함</li> <li>연구용역을 통해 공익법률 활동의 전문성 강화</li> <li>재정자립도가 높아짐</li> <li>안정적인 운영과 재원확보</li> <li>특정 목적 사업 수행이 가능</li> <li>비교적 자유로운 운영</li> <li>일하면서 배울 수 있음</li> <li>변호사들이 공익변호사들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단체 설립 목적에 부합</li> </ul>	<ul> <li>업무량 과중</li> <li>일반적인 공익소송이나 공익자문에 투입할 시간이 부족하게 됨</li> <li>재정규모 확대에 한계가 있음</li> <li>집행부의 성향에 따라(인권친화적 여부 등) 지원의 폭이 널뛰기 할 수 있음</li> <li>재정의존 심화에 따른 사업영역 제한</li> <li>단체 독립성과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는 매우 부정적</li> </ul>

# 2) 단체의 연간 수입·지출액

단체의 연간 수입·지출액을 살펴보면, '5억 이상 10억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 순으로 '1억 미만'과 '1억 이상 3억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동일하게 18.6%로 나타났다. 그리고 '10억 이상'이 8.6%, '3억 이상 5억 미만'이 7.1%였다.

로펌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공익변호사와 로펌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공익변호사를 구분하여 추가로 분석해 보았다. 로펌 기반 공익변호사 소속단체의 연간 수입·지출액은 '5억 이상 10억 미만'이 72.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억 이

상 3억 미만'이 16.7% 순으로 나타났다. 로펌 기반이 아닌 공익변호사 소속단체의 경우, '5억 이상 10억 미만'이 28.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억 미만'이 21.2%, '1억 이상 3억 미만'이 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로펌 기반 공익변호사의 소속단체는 연간 수입·지출액이 대체로 5억 이상 10억 미만이었지만, 로펌 기반이 아닌 공익변호사 소속단체는 1억 미만부터 10억 이상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8] 연간 수입·지출액 정도

구분	공익변호사(N=74)					
↑ <del>↑ □</del>	빈도(명)	비율(%)				
1억 미만	13	18.6				
1억 이상 3억 미만	13	18.6				
3억 이상 5억 미만	5	7.1				
5억 이상 10억 미만	28	40.0				
10억 이상	6	8,6				
모름	5	7.1				
총계	70	100.0				

[표 49] 연간 수입·지출액 정도

그님	로펌 공익변	호사(N=20)	로펌 이외 공익변호사(N=54)			
구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1억 미만	2	11.1	11	21.2		
1억 이상 3억 미만	3	16.7	10	19.2		
3억 이상 5억 미만	_	_	5	9.6		
5억 이상 10억 미만	13	72.2	15	28.8		
10억 이상	_	_	6	11.5		
모름	_	_	5	9.6		
총계	18	100.0	52	100.0		

공익단체 형태에 따라 소속단체의 연간 수입·지출액을 조사한 결과, '1억 미만' 은 활동가 중심의 공익단체가 38.5%로 가장 많았다. '5억 이상 10억 미만'으로

재정 규모가 비교적 큰 단체의 경우, 변호사 중심으로 설립된 공익단체가 46.4%, 로펌이 설립한 공익단체가 42.9%로 가장 많았으며, 이 두 유형을 합하면 89.1%를 차지했다. 변호사 중심으로 설립된 공익단체는 '1억 이상 3억 미만', '3억 이상 5억 미만', '5억 이상 10억 미만'에서 각각 38.5%, 60.0%, 46.4%로, 다른 공익단체에 비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10억 이상' 단체는 활동가 중심의 공익단체가 66.7%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체 유형별로 소속단체의 연간 수입·지출액을 추가로 분석해 본 결과, '활동가 중심의 공익단체'의 경우 '1억 미만'이 41.7%(5명/12명)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 중심으로 설립된 공익단체'와 '로펌이 설립한 공익단체'의 경우 '5억 이상 10억 미만'이 각 48.1%(13명/27명), 70.6%(12명/17명)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즉, 공익변호사가 상근하는 단체 가운데 '활동가 중심의 공익단체'의 재정 규모가 가장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0] 소속단체의 연간 수입·지출액에 따른 공익단체 형태

구분	1억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5억 10억	이상 미만	10억	이상	모	름
	빈도 (명)	비율 (%)										
변호사 중심으로 설립된 공익단체	3	23,1	5	38.5	3	60.0	13	46.4	1	16.7	2	40.0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된 공익단체	_	_	2	15.4	1	20.0	2	7.1	1	16.7	_	_
(변호사 아닌)활동가 중심의 공익단체	5	38,5	1	7.7	_	_	1	3,6	4	66.7	1	20.0
일반 변호사 업무와 공익활동 병행	_	_	1	7.7	_	_	_	_	_	_	_	_
로펌이 설립한 공익단체	2	15.4	3	23,1	_	_	12	42,9	_	_	_	_
변호사와 활동가가 함께 설립한 공익단체	_	_	1	7.7	_	_	_	_	_	_	1	20.0
지방변호사회가 설립한 공익단체	1	7.7	_	_	_	_	_	_	_	_	_	_

구분	1억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10억	이상	모	-름
	빈도 (명)	비율 (%)										
로스쿨이 설립한 공익단체	_	_	_	_	_	_	_	_	_	_	_	_
다른 NPO(예. YMCA 등)의 부설 단체	1	7.7	_	_	_	_	_	_	_	_	1	20.0
기타	1	7.7	_	_	1	20,0	_	_	_	_	_	_
총계	13	100.0	13	100.0	5	100.0	28	100.0	6	100.0	5	100.0

소속단체의 재정자립 가능 여부에 따른 공익단체 형태를 분석해 본 결과, 재정자립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로펌이 설립한 공익단체'가 36.4%로 가장많았고, 재정자립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변호사 중심으로 설립된 공익단체'가 44.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단체 유형별로 재정자립 가부를 추가로 분석해 본 결과, '활동가 중심의 공익단체'의 경우 응답자 12명 가운데 10명(83.3%)이 재정자립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반면, '로펌이 설립한 공익단체'의 경우 19명 가운데 12명(63.2%)이 재정자립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1] 소속단체의 재정자립 가능 여부에 따른 공익단체 형태

76	재정자	립 가능	재정자립 불가능		
구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변호사 중심으로 설립된 공익단체	10	30.3	17	44.7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된 공익단체	6	18.2	_	_	
(변호사 아닌)활동가 중심의 공익단체	2	6.1	10	26.3	
일반 변호사 업무와 공익활동 병행	1	3.0	_	_	
로펌이 설립한 공익단체	12	36.4	7	18.4	
변호사와 활동가가 함께 설립한 공익단체	_	_	2	5.3	
지방변호사회가 설립한 공익단체	1	3.0	_	_	

7 H	재정자	립 가능	재정자립 불가능		
구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로스쿨이 설립한 공익단체	_	_	_	_	
다른 NPO(예. YMCA 등)의 부설 단체	_	_	1	2.6	
기타	1	3.0	1	2.6	
 총계	33	100.0	38	100.0	

### 3) 지속가능한 재정자립 여부와 재원확보 방법

단체의 주된 수입원으로 단체의 지속가능한 재정자립이 가능한가에 대해, '아니오'로 응답한 비율이 53.5%, '예'로 응답한 비율이 46.5%로 나타났다. 공익변호사 응답자 중 과반수가 넘는 인원이 소속 단체가 재정자립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는 것은, 그만큼 공익변호사들이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불안정한 상황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한편, 로펌 기반 공익변호사의 68.4%가 단체의 재정자립이 지속가능하다고 응답하였고, 로펌 기반이 아닌 공익변호사는 38.5%만 단체의 재정자립이 지속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로펌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경우 대체로 재정환경이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단체의 재정자립이 지속가능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재원확보 방법을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한 재정 자립이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재원확보 방법으로는, '후원행사'가 37.0%로 가장 많았고, '추가재원 확보가 어려워 인건비 등 경상비 감축'이 13.0%, '소셜펀딩·크라우드펀딩'이 9.3%,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지원' 5.6%로 나타났다. 그 외 기타 의견으로는 연구사업 공모 및 자립지원사업을 활용하거나,회원 확대를 위한 개별 홍보. 후원·모금활동 등이 있었다.

[표 52] 단체의 지속가능한 재정자립 여부와 재원확보 방법

	78	공익변호	从(N=74)
	구분	빈도(명)	비율(%)
단체의	예	33	46.5
지속기능한 재정 자립	아니요	38	53.5
	총계	71	100
	추가재원확보 어려워 경상비 감축	7	13.0
	후원행사	20	37.0
재원확보 방법	소셜펀딩/크라우드펀딩	5	9.3
(다 <del>중응</del> 답)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지원	3	5.6
	기타	19	35.2
	총계	54	100.0

'단체의 재정자립이 지속할 수 없다'고 응답한 변호사 중 재원확보 방법을 다중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로펌 기반 공익변호사와 로펌 기반이 아닌 공익변호사 모 두 후원행사, 추가재원확보가 어려워 경상비 감축 방법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53] 단체의 지속가능한 재정자립 여부와 재원확보 방법

	구분	로 공익변호		로펌 이외 공익변호사(N=54)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단체의	예	13	68.4	20	38.5	
지속가능한	아니요	6	31.6	32	61.5	
재정 자립	총계	19	100.0	52	100.0	
	추가재원확보 어려워 경상비 감축	1	10,0	6	13.6	
	후원행사	5	50.0	15	34.1	
재원확보	소셜펀딩/크라우드펀딩	_	_	5	11.4	
방법 (다 <del>중응</del> 답)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지원	_	_	3	6.8	
	기타	4	40.0	15	34.1	
	총계	10	100.0	44	100.0	

'단체의 재정자립이 지속할 수 없다'고 응답한 변호사 중 재원확보 방법의 기타 응답으로는 공모사업, 연구용역 등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로펌을 기 반으로 하지 않는 공익변호사가 더 다양한 재원확보 방법을 제시하는 경향이 보였다.

[표 54] 재원확보 방법 기타의견

로펌 기반 공익변호사	로펌 기반이 아닌 공익변호사
• 공모사업 지원 •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모금활동 • 새로운 후원자 모집 등 펀딩 방안 마련 • 연구용역, 지원사업공모 등 재원확보 방안 모색	각종 연구사업 공모 및 자립지원 사업 활용     국립대학법인 예산     기업 후원 및 기금 등     다른 사업모델 발굴     연구사업(용역)     외부교육 등 고유목적 사업     적극적인 모금활동 진행     지속적인 소액 후원자 모집     추가재원마련 방법이 없음     후원행사 및 각종 모금활동     회원 확대를 위하여 회원 개별적으로 홍보

## 4) 단체 소식을 알리는 방법(홍보)

단체 소식을 알리는 방법으로는, 홈페이지가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SNS가 26.0%, 이메일(뉴스레터) 22.0%, 소식지(연간, 계간 모두) 17.5%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언론보도 자료, 유튜브 채널, 문자, 공익보고서 등이 있었다.

[표 55] 단체 소식을 알리는 방법(다중응답)

구분	공익변호사(N=74)					
<u> </u>	빈도(응답수)	비율(%)				
홈페이지	68	30.5				
SNS	58	26.0				
이메일(뉴스레터)	49	22,0				
소식지(연간, 계간 모두)	39	17.5				
없다	1	0.4				
기타	8	3,6				
총계	223	100.0				

## (5) 공익변호사를 위해 필요한 것들

### 1) 현재 단체에서 일하게 된 배경

현재 단체에서 일하게 된 배경을 조사한 결과, 1순위가 '이 일이 하고 싶어서 스스로 찾아보고 지원했다'는 응답이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순위로는 '채용공고를 보고'가 45.7%, 3순위는 '실무수습 등 이전부터 단체와 관계가 형성되어서'라는 응답이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가중 순위로는 '이 일이 하고 싶어서 스스로 찾아보고 지원함'이 125점으로 1순위, '채용공고를 보고'가 92점으로 2위로 나타났다.

[표 56] 현재단체에서 일하게 된 배경

	다중응답		1순	1순위		2순위		3순위		가중
구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가중 점수	순위
채용공고를 보고	39	30.0	16	22.5	21	45.7	2	15.4	92	2
실무수습 등 이전부터 단체와 관계가 형성됨	22	16.9	8	11.3	8	17.4	6	46.2	46	4
이 일이 하고 싶어서 스스로 찾아보고 지원함	47	36.2	32	45.1	14	30.4	1	7.7	125	1
기타	22	16.9	15	21.1	3	6.5	4	30.8	55	3
총계	130	100.0	71	100.0	46	100.0	13	100.0		

그 외, 기타 의견으로는 공익변호사 지인 소개 및 추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구성원들과 단체가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 및 다루는 의제가 다양하고 활동가 중심의 조직이라서, 희망하는 활동분야의 선배가 이미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서,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접하고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연고 등이 있었다.

### 2) 단체 내 공익전업변호사로서 힘든 점

단체 내에서 공익변호사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 가중 1순위로 '전문가로서역량 강화를 혼자서 해내야 한다는 점'이 가장 많았고, 2순위가 '변호사업무에특수한 실무들을 모두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점', '변호사·활동가로서 장래가 불투명해서'가 3순위로 나타났다. 이후에서 살펴볼 해외 사례에서 미국의 공익변호사들의 이탈율이 높은 이유로 주로 급여를 꼽은 것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공익변호사의 역사가 짧기에 이번 조사에서 경향성이 온전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한국의 공익변호사들은 미국보다 급여가 적은데, 이미 급여 자체를 심정적으로 포기하고 공익변호사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아, 급여와의 상관관계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기타 의견으로는 공익변호사 업무 이외의 (행정)업무가 많음(비법률적 업무의 과다함), 지속가능성 및 단체 성장에 대한 고민, 개인적 역량 부족, 변호사와 활동가로서 모두 인정받아야 한다는 부담감, 법인과의 관계 및 독립성, 비변호사 활동가와의 관계, 변호사 아닌 윗사람과의 관계 매김의 어려움, 저녁 일정이 많아일가정 양립이 어려움, 지역에 선배 공익전업변호사가 없음 등이 있었다.

[표 57] 공익전업변호사 가장 힘든 점

	다중응답		1순	1순위		2순위		3순위		가중
구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기중 점수	순위
단체의 이름으로 서면을 낼 수 없는 것	10	5.7	2	2.9	2	3,3	6	13.3	16	8
단체와 법사무소 세무 회계 분리로 인한 이중고	13	7.4	2	2.9	7	11.7	4	8.9	24	6
비변호사활동가와의 관계 매김	11	6.3	1	1.4	4	6.7	6	13.3	17	7
변호사업무에 특수한 실무들을 모두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점	32	18.3	11	15.7	17	28.3	4	8.9	71	2

	다중응답		1년	-위	2순위		3순위		가중	   가중
구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점수	순위
변호사 아닌 윗사람 (대표, 팀장 등)과의 관계 매김	4	2,3	2	2,9	_	_	2	4.4	8	9
전문가로서 역량 강화를 혼자서 해내야 하는 점	42	24.0	26	37.1	11	18.3	5	11.1	105	1
급여가 적어 가계 재정이 어려워져서	21	12.0	6	8.6	8	13,3	7	15.6	41	5
변호사/활동가로서 장래가 불투명해서	25	14.3	9	12.9	8	13,3	8	17.8	51	3
기타	17	9.7	11	15.7	3	5.0	3	6.7	42	4
총계	175	100.0	70	100.0	60	100.0	45	100.0		

공익전업변호사의 가장 힘든 점을 소속된 공익단체 형태별로 분석한 결과, 변호사 중심으로 설립된 공익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된 공익단체, 로펌이 설립한 공익단체는 '전문가로서 역량 강화를 혼자서 해내야 하는 점'이 가장 힘들다고 응답하였고, 활동가 중심의 공익단체는 '변호사업무에 특수한 실무들을 모두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점'이 가장 힘들다고 응답하였다.

[표 58] 공익단체 형태에 따른 공익전업변호사의 가장 힘든 점 1 (다중응답)

7.11	1		2		3		4		(5)	
구분	빈도(명)	비율(%)								
단체의 이름으로 서면을 낼 수 없는 것	2	3.2	1	6.3	2	5.7	_	_	4	9.3
단체와 법사무소 세무 회계 분리로 인한 이중고	6	9.5	_	_	2	5.7	_	_	4	9.3
비변호사활동가와의 관계 매김	2	3,2	1	6.3	5	14.3	_	_	1	2,3
변호사업무에 특수한 실무들을 모두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점	12	19.0	3	8,8	8	22,9	_	_	7	16.3
변호사 아닌 윗사람 (대표, 팀장 등)과의 관계 매김	_	_	2	12,5	1	2,9	_	_	_	_

7.14	1		2		3		4		(5)	
구분	빈도(명)	비율(%)								
전문가로서 역량 강화를 혼자서 해내야 하는 점	16	25.4	5	31,3	7	20.0	_	_	11	25.6
급여가 적어 가계 재정이 어려워져서	10	15.9	1	6,3	6	17.1	_	_	1	2,3
변호사/활동가로서 장래가 불투명해서	7	11,1	2	12,5	4	11.4	_	_	9	20.9
기타	8	12.7	1	6.3	_	_	1	100.0	6	14.0
총계	63	100.0	16	100.0	35	100.0	1	100.0	43	100.0

- ③ (변호사 아닌) 활동가중심의 공익단체
- ⑤ 로펌이 설립한 공익단체
- ⑦ 지방변호사회가 설립한 공익단체 8 다른 NPO의 부설 단체
- 9 기타
- ① 변호사 중심으로 설립된 공익단체 ②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된 공익단체
  - ④ 일반변호사 업무와 공익활동 병행
  - ⑥ 변호사와 활동가가 함께 설립한 공익단체

## [표 59] 공익단체 형태에 따른 공익전업변호사의 가장 힘든 점 2 (다중응답)

7H	(6)	3)	C	Ď	(	3)	9	
구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단체의 이름으로 서면을 낼 수 없는 것	_	_	1	33,3	_	_	_	
단체와 법사무소 세무 회계 분리로 인한 이중고	_	_	_	_	1	16.7	_	_
비변호사활동가와의 관계 매김	1	20.0	_	_	_	_	1	33.3
변호사업무에 특수한 실무들을 모두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점	1	20.0	_	_	1	16.7	_	_
변호사 아닌 윗사람 (대표, 팀장 등)과의 관계 매김	_	_	_	_	1	16.7	_	_
전문가로서 역량 강화를 혼자서 해내야 하는 점	1	20.0	1	33,3	_	_	1	33,3
급여가 적어 가계 재정이 어려워져서	1	20.0	_	_	2	33.3	_	_
변호사/활동가로서 장래가 불투명해서	0	_	1	33,3	1	16.7	1	33,3
기타	1	20.0	_	_	_	_	_	
총계	5	100.0	3	100.0	6	100.0	3	100.0

- ① 변호사 중심으로 설립된 공익단체
- ③ (변호사 아닌) 활동가중심의 공익단체 ④ 일반변호사 업무와 공익활동 병행
- ⑤ 로펌이 설립한 공익단체
- ⑦ 지방변호사회가 설립한 공익단체
- ⑨ 기타

- ②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된 공익단체

  - ⑥ 변호사와 활동가가 함께 설립한 공익단체
- ⑧ 다른 NPO의 부설 단체

### 3) 공익변호사를 하면서 시급하게 바뀌었으면 하는 것

공익변호사를 하면서 시급하게 바뀌었으면 하는 것으로 나 자신의 변화를 포함한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을 구분하여 질문했다.

먼저 개선되어야 할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공익변호사에 대한 인식 변화와 관련 제도적 변화(변호사법 개정 등)가 있었고, 적절한 재정 지원과 펀드(기금)조성 지원, 공익법무법인 등의 단체 설립과 행정업무 등 기타 업무의 간소화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활동 다양성 인정의 필요. 멘토 양성에 대 한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내부적 요인'으로는. 전문성과 조직을 강화할 수 있는 공 익변호사로서 역량 강화, 재정이나 안식년, 휴식, 업무량 조절 등을 통한 지속가 능성 확보 등의 의견이 있었고. 멘토나 협력·교류 등을 통한 정보공유. 공익변호 사에 대한 인식 변화. 법인으로부터의 독립 등의 의견이 있었다.

[표 60] 시급하게 바뀌었으면 하는 것

구분	외부적	내부적(나 자신의 변화포함)
내용	공익변호사에 대한 인식 변화     공익변호사 관련 제도적 변화 (변호사법 개정 등)     재정 지원(급여, 기부금 등)     펀딩(기금) 조성으로 인한 지원     공익법무법인 등의 단체 설립     행정업무 등 기타업무의 간소화     활동의 다양성 인정     멘토 양성	공익변호사로서 역량강화(전문성, 조직 강화 등)     지속기능성(재정, 안식년, 휴식, 업무량 조절 등)     정보공유(멘토, 협력, 교류 등)     공익변호사에 대한 인식변화     법인으로부터 독립

### 4) 현재 급여 수준과 지속가능한 급여 수준

현재 급여 수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세전 기준, 이하 같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34.2%,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21.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항목은 로펌 기반 공익변호사와 로펌 기반이 아닌 공익변호사를 구분해 추가로 분석했다. 로펌 기반 공익변호사는 현재 급여 수준이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52.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4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로펌 기반이 아닌 공익변호사는 '2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이 46.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33.3%, '400만원이상 500만원 미만'이 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급여 수준은 로펌 기반 공익변호사가 로펌 기반이 아닌 공익변호사보다 더 높았으며, 로펌 기반이 아닌 공익변호사 간에도 급여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급여가 공익변호사로서 지속가능하고 지치지 않도록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가'에 대해 '지금으로 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45.7%, '충분하지 않다'가 54.3%로 나타났다. 그리고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지속가능한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과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각각 40.4%로 나타났다. 그 외 기타 의견으로는 300만원 전후, 개인별 상황과 재정을 고려한 경력, 연차, 담당 업무에 따라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급여 수준의 충분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 로펌 기반 공익변호사의 73.7%가 충분하다고 응답하였고, 로펌 기반이 아닌 공익변호사는 35.3%만이 충분(64.7% 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급여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변호사 중 로펌 기반 공익변호사는 60%가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지속가능한 급여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로펌 기반이 아닌 공익변호사는 48.5%가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6.4%가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지속가능한 급여라고 응답하였다.

[표 61] 현재 급여와 충분 여부와 지속가능한 급여 수준

	7H	공익변호	从(N=74)
	구분	빈도(명)	비율(%)
	200만원 미만	4	5.5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5	34.2
현재 급여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6	35.6
수준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6	21.9
	500만원 이상	2	2,7
	총계	73	100.0
	충분하다	32	45.7
현재 급여 충분 여부	충분하지 않다	38	54,3
9E VIT	총계	70	100.0
	200만원 미만	_	_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	4.3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9	40.4
지속가능 급여 수준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9	40.4
<b>□</b> √1 1 ℃	500만원 이상	1	2.1
	기타	6	12,8
	총계	47	100.0

[표 62] 현재 급여와 지속가능한 급여 수준

	구분	로펌 공익변호	기반 사(N=20)	로펌 기반이 아닌 공익변호사(N=54)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200만원 미만	_	_	4	7.4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_	_	25	46.3	
현재 급여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8	42.1	18	33.3	
수준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0	52.6	6	11.1	
	500만원 이상	1	5.3	1	1.9	
	총계	19	100.0	54	100.0	
-1-11 -1 a l	충분하다	14	73.7	18	35.3	
현재 급여 충분 여부	충분하지 않다	5	26,3	33	64.7	
9E 411	총계	변도(명) 비율(%) 변도(명) 4 원 미만 25 원 미만 8 42.1 18 원 미만 10 52.6 6 1 5.3 1 19 100.0 54 14 73.7 18 5 26.3 33 19 100.0 51 원 미만 - 1	100.0			
	200만원 미만	_	_	_	_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_	_	1	3.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_	_	16	48.5	
지속가능 급여 수준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	60.0	12	36.4	
급여 수준	500만원 이상	1	20.0	_	_	
	기타	1	20.0	4	12.1	
	총계	5	100.0	33	100.0	

변호사 연차에 따른 급여 수준을 분석한 결과, '3년차 미만'과 '5년차 이상 10년 차 미만'은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고, '3년차 이상 5년차 미만'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36.8%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결국, 공익변호사의 경우, 변호사 연차가 오를수록 급여가 오른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변호사 연차와 급여 수준의 상관관계는 찾기 어려웠다.

[표 63] 변호사 연차에 따른 급여 수준

				변호시	변호사 연차						
구분	3년차 미만		3년차 5년차			· 이상 :h 미만	10년치	나 이상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200만원 미만	_	_	1	5.3	3	10.0	_	_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33.3	7	36.8	10	33,3	4	36.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5	41.7	6	31.6	11	36.7	4	36.4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	25.0	5	26,3	5	16.7	2	18.2			
500만원 이상	_	_		_	1	3.3	1	9.0			
총계	12	100.0	19	100.0	30	100.0	11	100.0			

공익변호사 활동기간에 따른 급여 수준을 조사한 결과, '3년 미만'과 '10년차 이상' 은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각각 44.0%, 80.0%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다. '3년차 이상 5년차 미만'과 '5년차 이상 10년차 미만'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각각 33.3%, 44.0%로 다른 항목에 비해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64] 공익전업변호사 활동기간에 따른 급여 수준

	공익전업변호사 활동기간(전/현직 전체)							
구분	3년차	3년차 미만		· 이상 · 미만		· 이상 나 미만	10년치	나 이상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200만원 미만	_	_	2	11,1	2	8.0	_	_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7	28.0	6	33.3	11	44.0	1	2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1	44.0	4	22,2	7	28.0	4	80.0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7	28.0	5	27.8	4	16.0	_	_
500만원 이상	_	_	1	5.6	1	4.0	_	_
총계	25	100.0	18	100.0	25	100.0	5	100.0

현재의 급여가 충분한지에 따라 급여 수준을 분석한 결과, 급여가 충분한 집단은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43.8%로 가장 많았고, 급여가 불충분한 집단은 현재 급여 수준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47.4%로 응답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에 따른 급여의 충분성을 추가로 분석해 본 결과, '200만원 미만'의 경우 응답자 4명 전원이 급여가 불충분하다고 답변했고,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응답자 23명 중 18명(78.3%)이 급여가 불충분하다고 답변했다. 반면, '500만원 이상'의 경우 응답자 2명 전원이 급여가 충분하다고 답변했고,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의 경우 16명 중 14명(87.5%)이 급여가 충분하다고 답변했다. 즉, 급여가 낮을수록 급여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경향성을 확인할수 있었다.

[표 65] 급여의 충분 여부에 따른 급여 수준

구분	급여 충	·분하다	급여 불충분하다			
TE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200만원 미만	_	_	4	10.5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5	15.6	18	47.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1	34.4	14	36,8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4	43.8	2	5.3		
500만원 이상	2	6.3	_	_		
총계	32	100.0	38	100.0		

'현재 급여 수준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변호사 중 로펌 기반 공익변호사는 '400 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64.3%로 가장 많았고, 로펌 기반이 아닌 공익변호사는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38.9%로 가장 많았다.

'현재 급여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변호사 중 로펌 기반 공익변호사는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상'이 80.0%, 로펌 기반이 아닌 공익변호사는 '200만

원 이상 300만원 이상'이 54.5%로 가장 많았다.

[표 66] 현재 급여 수준의 충분성에 따른 현재 급여 수준

		로펌 기	반 공익변	호사(N=20	)/n=19)	로펌 기반이 아닌 공익변호사 (N=54/n=51)			
	구분	충분	하다	충분하	지 않다	충분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지 않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200만원 미만	_	_	_	_	_	_	4	12.1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_	_	_	_	5	27.8	18	54.5
현재 급여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	28.6	4	80.0	7	38.9	10	30.3
수준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9	64.3	1	20.0	5	27.8	1	3.0
	500만원 이상	1	7.1	_	_	1	5.6	_	_
	총계	14	100.0	5	100.0	18	100.0	33	100.0

현재의 급여가 충분한지에 따라 공익단체 형태를 조사한 결과, 급여가 충분한 집 단은 '로펌이 설립한 공익단체'가 43.8%로 가장 많았고, 급여가 불충분한 집단은 '변호사 중심으로 설립된 단체'가 36.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 유형 별로 급여의 충분 여부를 추가로 분석해 본 결과, '활동가 중심의 공익단체'의 경우 응답자 12명 중 11명(91.7%),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된 공익단체'의 경우 응답자 6명 중 5명(83.3%), '변호사 중심으로 설립된 공익단체'는 응답자 25명 중 14명(56.0%)이 급여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일반변호사와 공익활동을 병행'하는 단체의 경우 응답자 2명 전원, '로펌이 설립한공익단체'의 경우 응답자 19명 중 14명(73.7%)이 급여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표 67] 급여의 충분 여부에 따른 공익단체 형태

78	급여 충	충분하다	급여 불충분하다		
구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변호사 중심으로 설립된 공익단체	11	34.4	14	36.8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된 공익단체	1	3.1	5	13,2	
(변호사 아닌)활동가 중심의 공익단체	1	3.1	11	28.9	
일반 변호사 업무와 공익활동 병행	2	6.3	_	_	
로펌이 설립한 공익단체	14	43.8	5	13,2	
변호사와 활동가가 함께 설립한 공익단체	1	3,1	1	2.6	
지방변호사회가 설립한 공익단체	1	3.1	_	_	
로스쿨이 설립한 공익단체	_	_	_	_	
다른 NPO(예. YMCA 등)의 부설 단체	_	_	2	5.3	
기타	1	3,1	_	_	
총계	32	100.0	38	100.0	

현재의 급여가 충분한지에 따라 변호사 연차를 조사한 결과, 변호사 연차가 높을 수록 급여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변호사 연차가 '5년차 이상 10년차 미만'이 급여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63%), '10년차 이상'이 급여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72.7%).

[표 68] 급여의 충분 여부에 따른 변호사 연차

	구분		급여 충분하다		급여 불충분하다		총계	
	T <del>T</del>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3년차 미만	5	41.7	7	58.3	12	100.0	
변호사	3년차 이상 5년차 미만	7	36,8	12	63.2	19	100.0	
연차	5년차 이상 10년차 미만	17	63,0	10	37.0	27	100.0	
	10년차 이상	3	27.3	8	72.7	11	100.0	
	총계	32	46.4	37	53.6	69	100.0	

### 5) 연차에 따른 급여 상승 여부

소속단체의 연차별 급여 상승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급여가 상승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5.%, '상승하지 않는다'가 24.7%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이 급여가 상승한다고 응답하였다. 로펌 기반 공익변호사는 85.0%, 로펌 기반이 아닌 공익변호사는 71.7% 연차별 급여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에 따른 급여 상승 비율은 로펌 기반 공익변호사가 높게 나타났다.

[표 69] 연차에 따른 급여 상승 여부

구분		로펌 공익변	[호사(N=20)	로펌 이외 공약	로펌 이외 공익변호사(N=54)		
T	<del></del>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연차에 따른	예	17	85.0	38	71.7		
급여 상승	아니오	3	15.0	15	28.3		
여부	총계	20	100.0	53	100.0		

그리고 연차에 따라 급여가 상승된다고 응답한 경우, 상승 정도는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가 가장 많았고,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5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응답한 초과상승분 기준이 월 기준인지 연 기준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설문의 한계가 있다. 또한, 물가상승률, 연마다 합의를 하거나 5% 미만 상승의 응답이 있었다. 그 외 연봉 80만원(월 약 6만원), 150만원(월 약 12만원), 300만원(월 25만원)의 응답도 있었다.

단체의 연차별 급여가 상승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재정부족'이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도 미비'가 11.8%, '다른 활동가와 급여에 있어 형평성'이 5.9%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관례가 없어서, 2년 계약으로 급여가 일정해서. 후배 양성을 위해서라는 의견이 있었다.

[표 70] 단체의 연차별 급여 상승 여부

	구분	공익변호	사(N=74)
		총계 73 100.0 배정부족 8 47.1 베도미비 2 11.8 급여에 있어 형평성 1 5.9	비율(%)
	예	55	75.3
급여 상승 여부	아니오	18	24.7
	총계 73 재정부족 8	100.0	
단체의 연차별	재정부족	8	47.1
급여 상승 여부	제도미비	2	11.8
아니오_이유	다른 활동가와 급여에 있어 형평성	1	5.9
	기타	6	35,3
	총계	17	100.0

또한, 소속단체의 급여 상승 여부를 공익단체의 형태별로 살펴보았다. 연차에 따라 급여가 상승한다고 응답한 경우, '변호사 중심으로 설립된 공익단체'가 38.2%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로펌이 설립한 공익단체'가 30.9%로두 번째로 높은 순으로 응답하였다.

연차에 따라 급여가 상승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변호사 중심으로 설립된 공익단체'가 33.3%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변호사 아닌)활동가 중심의 공익단체'가 22.2%로 두 번째로 높은 순으로 응답하였다.

다시 말해, 현재 소속단체의 연차별 급여 상승 여부에 대해 '예'와 '아니오' 모두 '변호사 중심으로 설립된 공익단체'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예'의 경우 '로 펌이 설립한 공익단체'가 '아니오'의 경우 '(변호사 아닌)활동가 중심의 공익단체'가 그 다음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표 71] 급여 상승 여부에 따른 공익단체의 형태

		연차별 급여	부 상승 여부		
구분	0	4	아니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변호사 중심으로 설립된 공익단체	21	38,2	6	33.3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된 공익단체	6	10.9	_	_	
(변호사 아닌)활동가 중심의 공익단체	8	14,5	4	22.2	
일반 변호사 업무와 공익활동 병행	1	1.8	1	5.6	
로펌이 설립한 공익단체	17	30.9	3	16.7	
변호사와 활동가가 함께 설립한 공익단체	1	1.8	1	5.6	
지방변호사회가 설립한 공익단체	_	_	1	5.6	
로스쿨이 설립한 공익단체	_	_	_	_	
다른 NPO(예. YMCA 등)의 부설 단체	1	1.8	1	5.6	
기타	_	_	1	5.6	
총계	55	100.0	18	100.0	

# 6) 현재 소속 단체에서의 계속 근무 의사

지금 일하고 있는 단체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은지를 조사한 결과,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모르겠다' 42.2%, '아니오' 12.7% 순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공익변호사의 과반수 이상인 55%가 현재 소속 단체에서 계속 근무할지 모르거나 근무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 단체에서 계속 근무 희망 여부

기 <b>니</b>	공익변호	공익변호사(N=74)				
구분	빈도(명)	비율(%)				
예	32	45.1				
아니오	9	12,7				
모르겠다	30	42,2				
총계	71	100.0				

현재 소속 단체에서의 지속 근무 희망 여부에 대한 응답을 공익단체의 형태별로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변호사 중심으로 설립된 공익단체'의 경우 현 단체에서 근무를 지속하고 싶은 지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48.2%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모르겠다' 가 37.0%, '아니오'가 14.8%였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된 공익단체'의 경우 '예'가 50%, '아니오'가 33.3%, '모르겠다'가 16.7%였는데, 다른 공익단체에 비해 근무를 지속하고 싶지 않다는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펌이 설립한 공익단체'의 경우 현 단체에서 근무를 지속하고 싶은지에 대해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57.9%로 가장 많았다.

'일반 변호사 업무와 공익활동을 병행하는 단체'와 '변호사와 활동가가 함께 설립한 공익단체'의 경우 모두 계속 현 단체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물론 응답인원 자체가 적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각 2명 응답).

'활동가 중심의 공익단체'에서는 '모르겠다'가 54.5%, '예'가 36.4%, '아니오'가 9.1% 순으로 나타났고, '다른 NPO의 부설단체'의 경우 '예'와 '모르겠다'의 응답율이 각 50%였다.

[표 73] 지속 근무 희망 여부에 따른 공익단체 형태

	지속 근무 희망여부							
구분	예 아니오		모르겠다		총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변호사 중심으로 설립된 공익단체	13	48.2	4	14.8	10	37.0	27	100.0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된 공익단체	3	50.0	2	33,3	1	16.7	6	100.0
(변호사 아닌)활동가 중심의 공익단체	4	36.4	1	9.1	6	54.5	11	100.0
일반 변호사 업무와 공익활동 병행	2	100.0	_	_	_	_	2	100.0

	지속 근무 희망여부								
구분		예 아니		- 오	모르겠다		총계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로펌이 설립한 공익단체	7	36.8	1	5.3	11	57.9	19	1000	
변호사와 활동가가 함께 설립한 공익단체	2	100.0	_	_	_	_	2	100.0	
지방변호사회가 설립한 공익단체		_	_	_	1	100.0	1	100.0	
로스쿨이 설립한 공익단체	_	_	_	_	_	_	_	_	
다른 NPO(예. YMCA 등)의 부설 단체	1	50.0	_	_	1	50.0	2	100.0	
기타	_	_	1	100.0	_	_	1	100.0	
· 총계	32	45.1	9	12.7	30	42.3	71	100.0	

현재 소속 단체에서의 지속 근무 희망 여부에 대한 응답을 변호사 연차에 따라 분석해 본 결과, 변호사 연차 '3년차 미만'의 경우 현 단체에서 근무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자가 0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3년차 이상 5년차 미만'과 '5년차 이 상 10년차 미만'의 경우에는 지속 근무 희망 여부에 대해 '예'와 '모르겠다'가 약 40%, '아니오'가 약 15%로 나타났다. '10년차 이상'의 경우 '예'가 50%, '모르겠 다'가 33.3%, '아니오'가 16.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74] 지속 근무 희망 여부에 따른 변호사 연차

	지속 근무 희망여부								
구분	예		아니오		모르겠다		총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3년차 미만	6	50.0	_	_	6	50.0	12	100.0	
3년차 이상 5년차 미만	8	42,1	3	15.8	8	42.1	19	100.0	
5년차 이상 10년차 미만	12	44.5	4	14.8	11	40.7	27	100.0	
10년차 이상	6	50.0	2	16.7	4	33.3	12	100.0	
총계	32	45.7	9	12.9	29	41.4	70	100.0	

현재 소속 단체에서의 지속 근무 희망 여부에 대한 응답을 연령대별로 분석해 본결과, '20대'의 경우 100% 현 단체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응답했다(단, 응답인원 2명), 반면, '30대'와 '40대'는 '예'와 '모르겠다'의 응답 비율이 각 44.0%.

42.1%로 같았고, '아니오'의 응답이 12.0%, 15.8%로 추이가 비슷했다. 즉, 30 대와 40대의 경우 현재 일하고 있는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75] 지속 근무 희망 여부에 따른 연령대

	지속 근무 희망여부								
구분	C	베	아니오		모르겠다		총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20대	2	100.0	_	_	_	_	2	100.0	
30대	22	44.0	6	12.0	22	44.0	50	100,0	
40대	8	42.1	3	15.8	8	42.1	19	100,0	
총계	32	45.1	9	12.7	30	42.3	71	100.0	

또한, 현재 소속 단체에서의 지속 근무 희망 여부 응답을 현재 급여 수준 기준으로 분석해 본 결과, 현 단체의 근무를 지속하고 싶은 희망 여부에서 급여 '200만원 미만' 및 '500만원 이상'의 경우 모두 현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저임금일수록 단체 근무 지속 의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현재 급여 수준과 단체의 지속 근무 희망 의사 사이의 유의미한 관계성은 찾지 못했다. 그러나 스탠포드 대학교의 Deborah L. Rhode 교수가 2007년 조사한 공익변호사 단체에 대한 연구<sup>22)</sup>와 비교해 봤을 때 급여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조사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보다 공익변호사의 역사가 짧아 아직 모든 경향성이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근무 지속 희망 여부에 대해 '아니오',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사람 모두 계속 근무하겠다고 답변한 사람보다 높은 급여 수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표 76] 지속 근무 희망 여부에 따른 현재 급여 수준

	지속 근무 희망여부								
구분	예		아니오		모르겠다		총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200만원 미만	3	100.0	_	_	_	_	3	100.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1	44.0	3	12,0	11	44.0	25	10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8	32,0	5	20,0	12	48,0	25	100.0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7	46.7	1	6.7	7	46,6	15	100.0	
500만원 이상	2	100.0	_	_	_	_	2	100.0	
총계	31	44.3	9	12,9	30	42.8	70	100.0	

#### ■ 자신의 전망이나 계획

현재 소속단체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응답한 32명을 대상으로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자신의 전망이나 계획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년 후는 전문성 강화, 안정적으로 정착, 지속적으로 업무 수행 등이 있었다.

5년 후는 단체 확장과 안정에 기여, 활동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새로운 행사기획 등을 계획하고 있었다.

10년 후는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단체로 성장에 대한 계획도 있지만, 단체를 떠나거나 현재 구상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77] 계속근무 희망자의 단체 내 상근변호사 전망이나 계획

상근변호사 전망이나 계획						
3년 후	5년 후	10년 후				
<ul> <li>전문성 강화(업무, 네트워크 등)</li> <li>안정적인 정착(업무, 재정 등)</li> <li>지속적 업무 수행</li> <li>상근변호사 추가채용으로 단체 형성</li> <li>지역사회 홍보</li> <li>장·단기 계획 지금 제시 어려움</li> <li>제대 개선 및 정보 공유</li> </ul>	<ul> <li>단체 확장과 안정에 기여 (재정, 상근직원 채용 등)</li> <li>활동분야에 전문성 확보 (노동, 이주민, 아동, 사회적경제 등)</li> <li>지역 사무소 설립 및 노하우 전수</li> <li>이전에 하지 않은 새로운 행사 기획</li> <li>독립하여 자립의 길을 찾음</li> <li>그만두고 공부를 더하고 싶음</li> </ul>	<ul> <li>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단체로 성장</li> <li>단체 설립 및 지속가능한 기틀 마련</li> <li>전문영역 확장 및 연계</li> <li>단체를 떠난다.</li> <li>구상하고 있지 않음</li> </ul>				

#### ■ 지속 일하기 어렵거나 지속성을 모르는 이유

현재 소속단체에서 근무를 지속하고 싶은지에 대해 '아니오'와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경우, 계속 일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처음부터 지금 일하는 단체에서 2~년간 경력을 쌓고 다른 일을 할 계획이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13.1%, '비전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10.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차가 높아지면 내 급여가 단체의 재정에 부담을 줄 것 같아서'. '일하는 것이 힘들어서'가 각각 5.3%를 차지했다.

기타 응답으로는 다른 환경에서 활동이나 경험을 하고 싶음,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됨(재정적 부담, 조직구조 등), 매너리즘에 빠져 발전가능성이 없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전문성 및 역량 증진을 위해 경력을 더 쌓은 후 결정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78] 현 단체에서 근무를 지속해서 계속 일할 수 없는 이유

구분	공익변호사(N=39)			
1 <del>E</del>	빈도(명)	비율(%)		
처음부터 2-3년간 경력을 쌓고 이직 계획	5	13.1		
연차가 높아지면 내 급여가 단체의 재정 부담	2	5.3		
일하는 것이 힘들어서	2	5.3		
비전이 없어서	4	10.5		
기타	25	65.8		
 총계	38	100.0		

# (6) 기타, 미처 알아내지 못한 것들

### 1) 향후 설문사항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사항

향후 설문사항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은 응답은 공익변호사의 고충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일·가정 양립, 업무량, 휴식시간, 근무환경 등과 관련된 문항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공익변호사에 대한 인식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 외에역량 강화, 활성화되어야 하는 분야, 지원받고 싶은 것, 법률지원 대상 선정시어려움, 지속가능성에 대한 설문문항이 포함되었으면 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표 79] 향후 설문 사항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사항

내용	빈도
공익변호사의 고충사행(일·가정 양립, 업무량, 휴식시간, 근무환경 등)	8
공익변호사에 대한 인식	3
공익변호사 급여(인건비)에 관한 내용	2
역량강화에 관한 내용	1
공익활동 분야에서 더 활성화되어야 하는 분야	1
공익변호사로 가장 지원받고 싶은 것	1
법률지원 대상 선정 시 어려움	1
비영리활동만 하는 법률사무소에 관한 질문	1
졸업 이후 공익변호사가 될때까지 기간	1
지속가능성에 관한 질문	1
로펌 공익변호사에게는 맞지 않음	1
모바일로 응답할 수 있으면 좋겠음	1

# 2) 향후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정책

향후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제도·정책에 대해, 지속가능한 공익변호사 기금 마련, 공익법활동에 대한 기부 확산, 공익변호사 지원 구조

의 시스템화 등 공익변호사 및 소속 기관(단체)을 위한 재정 지원 및 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변호사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 많았는데, 소속 공익단체 이름으로 소송 등 법률지원이 가능하고 법률지원으로 생기는 금액(소송구조금, 자문료 등)을 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공익법무법인 설립 등 공익변호사단체 법적 근거 확보, 변호사 아닌 자(단체)가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비영리단체와 법률사무소 세무·회계분리로 인한 이중고 해결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부담 없이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송환경 구축을 위한 (공익)소송비용 감면(패소비용 부담 등), 세금 감면 등을 위한 법률 개정, 불필요한 행정업무 (세무, 회계) 개선 등의 의견도 많았다.

로스쿨에 관한 의견도 여럿 있었는데, 공익전업변호사 로스쿨 학자금 및 생활비지원, 리걸클리닉, 공익법률 관련 커리큘럼 강화, 공익변호사 연구 협력 등 로스쿨 재학 중이나 졸업 후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 연구교수 채용 등 로스쿨이 공익법률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있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응답도 많았다. 공익 변호사 양성 및 지원 기금 마련(공간 지원 포함), 전국 및 지역별 프로보노지원 센터 설립 및 활성화, 공익법률활동 관련 예산 확대, 변호사 등록비 공익변호사 지원, 협회 공익사건 판단기준 확대, 무료경유증표 발급요건 완화 및 발급대상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공익변호사 교육 및 훈련시스템 구축에 대한 욕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단체 내에서 공익변호사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에 관한 설문에서 1순위로 '전문가로서 역량 강화를 혼자서 해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응답이 많았다는 점과 연결된다.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같은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 의 공익변호사 의무채용 법제화(기관의 권리옹호기능 및 인권침해 상담 기능 확 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변호사 채용 확대, 지역사회 공익변호사의 활성화에 대한 의견도 여럿 있었다.

그 밖에 보다 유연한 기부금 모집 및 활용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규제 완화), 회계·세무 등 비영리단체의 운영을 위한 업무 지원 및 비영리법인(단체) 관련 제도 개선, 공익변호사단체 및 공익법률활동 홍보와 공익변호에 대한 인식 개선, 공익변호사 정보 공유, 법률구조예산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변호사 배출 숫자 확대 및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표 80] 향후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정책

내용	빈도
공익변호사 및 기관 지원(재정, 제도, 보조금 등)	20
제34조 등 변호사법 개정 (공익변호사단체 이름으로 법률지원 가능, 공익법무법인 설립, 자문료, 패소비용, 기부금품모집 및 활용 등)	15
소송구조 확대, 소송비용 감면, 세금 감면 등을 위한 제도 개선	11
로스쿨 재학 중/ 졸업 후 공익활동 활성화(리걸클리닉, 학자금 및 생활비 지원 등)	11
공익변호사 교육 및 훈련 시스템 구축	10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의 지원(전국 단위 프로보노지원센터 설립 등)	9
불필요한 행정업무 개선(세무, 회계 등)	6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 공익변호사 의무채용 법제화	5
지역공익변호사 활성화 및 지원	4
비영리단체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회계·세무 등)	3
공익변호사단체 및 활동 홍보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변호사 채용 확대	2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규제 완화)	2
공익변호에 대한 인식 개선	2
공익변호사 정보 공유	1
법률구조 예산이 다양한 곳에 활용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1
변호사 배출 숫자 확대 및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1
집단소송제도 도입	1

### 3) 공익변호사모임에 바라는 점

현재 공익변호사들은 격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공익변호사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공익변호사모임에 바라는 점으로는, 공익변호사들의 고충 상담, 의견공유 등을 할 수 있는 모임의 지속 및 유지가 가장 많았다. 공익변호사를 위한 교육이나행사 진행을 통한 저변 확대를 바랐으며, 조직화된 사무국 운영<sup>23</sup>)을 통한 공익변호사 활동의 활성화, 공익변호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임(멤버십) 결성, 그리고후배 양성을 위한 선배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표 81] 공익변호사 모임에 바라는 점

구분	내용			
바라는 점	공익변호사들의 고충 상담, 의견 공유 등을 할 수 있는 모임의 지속 및 유지	16		
	공익변호사를 위한 교육이나 행사 진행(저변확대)	5		
	조직화된 사무국 운영으로 인한 공익변호사 활동 활성화	4		
	공익변호사들만 대상으로 하는 모임 결성(멤버십 등)	3		
	후배양성을 위한 선배들의 도움이 필요	2		
	총계	30		

### 마. 소결

설문조사에는 전·현직 공익변호사 74명이 응답했고, 여성과 30대가 가장 많이 응답했다. 변호사 경력 및 공익변호사 활동기간 모두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대부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공익변호사를 하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특징적인 것은, 공익변호사 활동의 지역 간 편차가 매우 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경기 외에 공익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은 전라가 유일하다. 공익변호사를 그만 둔 이유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급여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sup>23)</sup> 현재 느슨한 형태로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다.

공익변호사가 소속된 단체의 형태로는 변호사 중심 설립 공익단체가 36.5%로 가장 많았고, 로펌이 설립한 공익단체가 27%, 활동가 중심의 공익단체가 16.2%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속단체의 주된 활동분야로는 공익인권일반,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난민, 노동 분야 등 다양하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소속 단체의 주된 법률활동 방식은 5점을 만점으로 할 때, 제도 개선(평균 4.29), 연대활동(평균 4.18), 상담·면담(평균 4.07), 소송지원(평균 3.99), 연구조사(평균 3.96) 순으로 나타났다. 공익변호사들이 공익변호사가 아닌 변호사와 달리, 다양한 방식으로 공익법률활동을 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유엔 및 국제기구 대응활동(평균 2.86)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점차 공익변호사들의 국제연대활동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향후 유엔 및 국제기구 대응활동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내부 구성원 회의·내부규정에 따른다는 응답이 많았다.

현재 활동하는 공익변호사의 소속 단체는 2014년에 가장 많이 창립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젊은 조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창립 연도는 1988년부터 2017년까지 다양했다. 연도별 단체의 상근변호사 전체 숫자를 조사한 결과 2006년 6명에서 2018년 68명으로 공익변호사의 숫자가 점점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근변호사는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추가로 채용했고(46.3%), 추가 채용을 위한 재원 마련 방법은 적극적인 후원을 독려해서 마련했다(42%)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추가 채용하지 않은 이유로 채용할 재원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재원만 있다면 상근변호사를 추가로 채용하고자 하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재원 마련만 된다면 상근변호사의 인원이 부족하다(추가로 채용하고 싶다)에 74.3%가 응답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단체의 인적 구성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공익변호사들은 대부분 단체에서 유일한 변호사 구성원으로서 상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28.8%). 반면, 변호사가 아닌 상근자 인원의 경우, 한 명도 없음이 가장 많았다(26.0%). 공익변호사들은 비변호사 상근자 없이 홀로 고군분투하며 현장에서 뛰고 있었다. 변호사가 아닌 상근자가 0명인 이유로는 재정적인 부담감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아, 재정이 가능하다면 비변호사 상근자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변호사

와 비변호사 상근자가 함께 일하면서 발생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의견도 다양했다. 대신, 단체에서 상근이 아닌 변호사가 함께 활동하는 비율이 67.1%에 달했는데, 이사, 고문 내지 자문, 운영위원 등의 방식으로 외부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었다. 인턴·자원활동가의 경우 59.2%가 현재 함께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시간과 비용 내지 교육 여력의 부족 등 인턴·자원활동가를 선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단체의 물적 구성현황 및 재정에 관한 사항도 분석했다. 단일한 재정수입원을 가진 단체는 총 20곳이었고, 대부분 복수의 재정수입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1곳). 단체의 연간 수입·지출액은 로펌 기반 공익변호사 단체의 경우 5억이상 10억 미만이었지만, 로펌 기반이 아닌 단체의 경우 1억 미만에서부터 10억이상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지속가능한 재정자립이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53.5%였다. 반면, 로펌 기반 공익변호사의 경우 68.4%가 재정자립이지속가능하다고 응답해, 상대적으로 일반시민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의 경우지속가능한 재정자립이어렵다고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단체에서 일하게 된 배경으로는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스스로 찾아보고 지원 함이 가장 많았다. 반면, 공익변호사들은 전문가로서 역량 강화를 혼자서 해내야 한다는 점을 공익변호사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 꼽았다.

현재 급여 수준으로는 로펌 기반 공익변호사는 400만원 이상 500만원이 가장 많은 반면, 로펌 기반이 아닌 공익변호사는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급여의 편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변호사 연차와 급여 수준의 상관관계는 찾기 어려웠다. 변호사 연차에 따른 급여 수준 상승이 많지 않아, 로펌 기반이 아닌 공익변호사의 경우 급여 수준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으로 급여 수준의 변동이 거의 없었다.

공익변호사의 55%가 현재 소속 단체에서 계속 근무할지 모르거나 근무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근무하지 않겠다는 응답을 분석해 본 결과, 재정적 부담이나 조직 구조 등 장기근무 환경이 안 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처음부터 2~3년간

경력 쌓고 이직 계획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향후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정책에 대해서는 결국 지속가능한 재정지원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소속 공익단체 이름으로 소송 수행(법률지원) 등 변호사법 개정에 대한 욕구도 많았다. 로스쿨 학자금 내지 생활비 지원, 리걸클리닉 활성화, 공익법률 커리큘럼 강화 등 로스쿨에 관한 의견도 여럿 확인할수 있었다. 공익변호사 기금 마련, 전국 단위의 프로보노지원센터 설립 및 공익법률활동 예산 확대 등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홀로 활동하면서 역량강화를 해내야 하는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다보니, 공익변호사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도 많이 개진되었다. 지역사회 공익변호사 활성화,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변호사 채용 확대에 대한 의견도 여럿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공익변호사들은 다양한 기반과 방식으로 활동하는 만큼 각자 매우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공통문항으로 질문하는 설문조 사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이번 설문조사 또한 공익변호사의 각 기 다른 욕구를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추후에는 공익변호 사의 존재지반, 형태·유형별로 설문을 달리 설계해,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미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했던 사람들만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도 있다. 공익변호사를 꿈꾸지만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지 못했다.

또한, 설문조사가 자기보고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실제보다 긍정적으로 답변할 가능성이 높고, 한 단체에 여러 공익변호사가 상근하는 경우 특정단체의 응답이 조사에 과다 반영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소속 단체에 대한 질문과 공익변호사 개인에 대한 질문에 함께 응답하도록 했는데, 보다 단체에 대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설문을 구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본 연구에서는 공익변호사의 활동 유형별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해. 이와 같은 한

계를 보완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공익인권단체의 욕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일하는 비변호사 활동가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담는 후속 연구도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 2. 심층면접조사 : 더 깊은 고민과 이야기들(각 유형별 공익변호사 이야기)

앞선 설문조사는 객관식 문항의 선택지가 많고 주관식 답변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에 공익변호사의 목소리가 드러났다. 심층면접조사에서는 여러 가지 걱정(후원 모델은 안 된다, 힘들지 않느냐)과 오해(변호사법 위반 아니냐, 왜남의 손을 빌어서 하려고 하느냐 등) 속에서도 공익변호사의 길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지내왔던 지난 10여년의 목소리들을 되도록 많이 담고싶었다. 공익변호사 전체의 이름으로 말이다.

# 가. 변호사 중심 조직

# (1) 다양한 조직 설립 배경

비영리단체를 모델로 하는 단체는 2010년 초반까지는 재단이나 다른 법인의 인큐베이팅(주로 재정적인)을 받아 설립되는 경우가 많았다. 별도의 인큐베이팅이 없이 처음부터 풀뿌리 후원을 바탕으로 비영리단체 설립을 최초로 시도하여 어느정도 안착한 것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이었고 그 이후 지역에서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이 만들어졌다. 풀뿌리 후원을 바탕으로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단체를 만든 경우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노력을 투여하여 (처음 단체를 설립할 때 부정적인 추측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의 펀딩이 이루어졌다.

### 1) 인큐베이팅 과정이 있었던 비영리단체 경우

## ○ A 비영리법인 - 2004년 설립

고 재단 이사장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2004년에 시작했다. 재단은 인큐베이팅 역할이고 재정과 모금은 독립되어 있었다. 재단에서 재정을 책임진 것은 1년차까지였고, 2년차 이후는 자체모금 으로 이어나갔다. 활동과 관련해서도 이해상반이 대립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와 소송하는 데 재단이 \*\*\*부터 후원을 받고 있다던가 하는.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은 계속 있었으나 독립의 방법과 시기가 일치되지 않아 미루다가 2013년 경 의견 일치 후 별도 재단으로 독립했다.

### ○ B 비영리법인 - 2011.1. 설립

처음 일했던 법무법인에서 공익사건을 같이 하는 구조였다. 그런데 영리와 공익사건을 같이 하는 것이 둘 다에 집중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얼마 후 전업으로 하기 위해 소속된 법무법인에 제안서를 냈다. 그 내용은 1년 동안 인큐베이팅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처음 10명 정도 동료들이 주로 후원을 해주었고 당시 시드머니도 2천만원 가량 있었다.

## 2) 풀뿌리 후원 모금부터 시작했던 비영리단체 경우

#### ○ C 비영리민간단체 - 2012년 설립

C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자본을 비롯한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모임을 만드는 것,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넓은 운동의 일부로서 활동하는 것이 새로 만들고자 하는 단체의 중요한 정체성이자 활동 원칙이라는데 합의가 있었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모델은 풀뿌리 후원으로 재정을 마련하는 비영리단체라고 생각했다.

후원만으로 단체의 운영비를 모두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있었다. 단체의 가치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서민과 약자의 권리를 지키는 일반 영리 사건도 일부 수임하는 방식으로 영리·비영리를 병행하다 비영리 전담으로 옮겨가는 모델에 대해서도 고민했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이 현실적으로 크지 않고 영리와 비영리를 혼합하는 경우에는 사무실 재정 유지를 위해 결국은 영리를 중심으로 운영되게 될 위험이 높다는 조언들을 들었고 이에 공감하여 영리를 병행하는 모델은 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C는 영리 목적의 사건 수임은 일체 하지 않고, 풀뿌리 후원을 기반으로 하여 단체의 미션에 따라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법·제도관행을 바꿀 수 있는 사건만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로활동하게 되었다. 다만, 미션에 따라 지원하기로 한 사건이 소송구조 등이 가능한 요건을 갖춘경우 소송구조를 일부러 거부하지는 않는다.

### ○ D 비영리민간단체 - 2015년 설립

많은 분들(특히 민변 소속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이 법인에서 돈 벌면서도 비영리와 관련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조언해주셨다. 비영리단체를 만드는 것이 지역에서는 처음이고 지역 경제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후원 모델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법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인권의 경계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변화를 일으키는 이슈파이팅 활동을 하고 싶었고 그러자면 시민들과 함께하는 비영리 후원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3) 로펌을 기반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경우

## ○ E 비영리법인 - 2014년 설립

기업들이 만드는 재단법인은 대체로 재산이 의미가 있는데, E는 공익변호사들을 계속 모아서 활동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본질상 사원과 사람 중심이 되는 사단법인이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E를 만든 배경에는 원래 로펌 안에서 공익위원회를 꾸려서 활동을 해왔는데, 그것이 가지는 한계가 있었다. 우선 로펌에서 영리를 위주로 업무를 하다보면 공익업무는 아무래도 보조적이 거나 부차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추동력이 잘 안 생긴다. 그래서 공익활동 단위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사실 처음에는 공익로펌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미국에서 연수받았을 때 LA에 있는 공익로펌에서 인턴십을 했었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이주민을 돕는 단체였고, 그곳 변호사가 30명 정도였다. 그 분야에서 오래된 20년 된 변호사님이 나와서 설명해주었는데, 그런 것이부러웠다. 그런 조직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조직형태가 무엇일지는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다. 법률전문성을 가지고 공익관련활동을 하는 단위가 A, 민변 등 여러 형태가 있을 텐데, 그 흐름 사이에서 로펌이 무언가를 하는 흐름도생긴 것 같다. 예전에는 대체로 공익활동을 장식품처럼 코디네이트하는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공익법도 전문성이 있어야 하니까. 그러려면 규모, 조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 조직을 장기적으로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로펌 베이스니까 로펌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들과 시너지를 만들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생각했다. 실제로 (E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로펌 변호사들이 참여하면서 같이 연구하거나 공익소송을 하고 있다. E 변호사와 로펌 변호사들이 같이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이다.

로펌에 기반을 둔 모델은 2010년 재단법인 동천을 시작으로 현재는 대형로펌을 중심으로 로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로펌에 기반을 둔 모델은 아무래도 다른 조직보다도 안정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운영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로펌 안에서 해당 비영리법인의 자율성과 활동성이 어느 정도로 확장되느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조직을 설립하게 된 배경은 당연히 공익적인 지향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주제들과 방향성이 정해져 있었다.

## 4) 법률사무소 경우

### ○ T 법률사무소

법률구조공단 법무관으로 9년간 일을 했는데, 한계점도 많이 느꼈다. 현장에서 떨어진 느낌이 랄까. 예를 들면 이주외국인이 임금체불확인원을 받는 절차에는 함께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절차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 못했던 것 같다. 계속 있으면 사실 좋은 보직에 월급도 좋아서 안정적이긴 한데 내가 변호사가 되고자 했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을 느끼게 된 것 같다. 엄청고민하다가 2011년 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나와서 '\*\*동(현장)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2012년 4월에 시작했다.

- (…) (\*\*\* 변호사에게) 이 동네에서 내가 가졌던 비전들, 예를 들면 왜 법원 앞에만 변호사 사무실이 있을까, 변호사는 왜 법원단계에서만 도우려고 할까, 왜 더 힘든 일은 하려고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주민에 관한 토털서비스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등의 생각을 공유했다. 1달 정도 고민하시고 같이 하신다고 하더라. 그렇게 책상 두 개 놓고 같이 시작한 거다.
- (…) 우리는 두 가지 핵심적인 가치관을 정립했는데, 첫 번째는 누구를 대리할 것인가, 그 영역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약자로 하자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매출의 일정부분을 공익기금으로 적립하거나 분배액의 상한액을 정해 초과되는 금액을 새로운 공익사업에 투자해보자는 것이었다(그런데 아직까지 분배액의 상한액을 초과해보지는 못했다).

# (2) 재정구조 선택 관련 - 왜 비영리(혹은 비영리에 가까운) 모델인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고,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치열하게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재정구조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왜 후원 모델을 생각하는가, 아 니면 왜 수익이 발생해도 일정 정도 이상을 배분하지 않고 적립하는가에 대한 근 본적인 고민이다. 변호사라는 전문 직역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 이익을 통한 사회적 기여도 가능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답을 들었다. 선택과 집중, 수익이 되지 않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집중하고 싶은 지향, 영리사업과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채산성이 떨어졌다 하는 등의 답이 그것이다. 후원을 받는 경우 내부적으로 후원에 관한 원칙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 1)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경우 - 법률사무소 수입이 없는 경우

### ○ A 비영리법인

문 : 왜 후원 모델인가.

**답**: 기부는 하나의 모델이고, 그만큼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다. (…)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돈을 많이 벌어가면서 전념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 현재 연간 재정은 8~10억 정도 된다. 연간보고서를 참고하면, 2017년 8억 6천. 개인기 부가 75%, 기업, 단체, 로펌이 25%이다.

문 : A는 비영리단체고 완전히 펀딩으로만 운영이 된다. 수익구조의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일단은 비영리냐 영리냐 하는 부분은 창립 때부터 계속 고민했었던 부분인데. 제 생각으로 는 비영리와 영리는 같이 가긴 어려운 것 같다. 이럴 순 있다. 의뢰인이 인지대도 낼 수 가 없다면 법원의 법률구조기금을 받아서 영리를 보완하는 것. 그런 정도는 가능하지만... '나는 비영리지만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충당하면서 비영리를 할 거야.'라고 한다면 주되게 해야 되는 비영리 역할, 즉 대중으로부터의 정기기부나 일시기부는 느슨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에 걸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냥 100퍼센트 비영리로 가고, 일반 대중이나 로펌으로부터 기부받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것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만 15년이 되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구조는 갖추게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가려고 계획하고 있다. 일반시민들의 정기기부를 70%로 맞추고, 나머지를 기업이나 로펌에서 충당을 하는 형태를 가져나갈 것 같다. 소송구조로 충당할 것 같진 않다. 우리가 그렇게 안 해왔었으니까.

<u>그런데 우리 이후 후발주자들은 비영리로 모금만 해서 올라서기엔 너무나 힘들고, 특히</u> 지역에 가면 더 힘든 건 당연히 이해가 된다.

예컨대 지역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후배들한테 어떻게든 비빌 언덕을 만들어 줘야겠다는 책임감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 활동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변협 차 원에서 공익변호사 기금을 만들려고 논의 중이다. 서울에는 이미 많은데, 서울 이외의 지 역에서 혹은 새로운 영역에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다. <u>그걸 꼭 수익활동 모델로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은가. 비영리모델도 있는 거니까. 국가나 변협의 공적기금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u> 거니까.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나는 공익변호사 '단체'를 꾸린다고 했을 때는 좀 더 정면승부로 갔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다. 누구한테 강요할 건 아니지만, 비영리로 마음을 먹으면 어쨌든 파 보자, 하는 것이고, 우리도 아는 로펌대표가 아무도 없었다. 그냥 무작정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하는 거다.

### ○ B 비영리법인

초창기에 일반사건도 하고 공익사건도 해서 지속가능하게 해보자고 생각했던 적도 있지만 금방 마음을 바꿔 먹었다. 지속가능하지 않더라. 첫째, 제공하는 서비스가 채산성이 높지 않았다. 둘째, 후원 요청할 때 선명하지 않았다.

## 2) 법률사무소 수입을 병행하는 경우<sup>24)</sup>

### ○ C 비영리민간단체

문 : 비영리민간단체와 별개로 소송지원을 위해 법률사무소를 따로 두고 있는데 법률사무소의 재정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답: 법률사무소는 소송당사자로부터 착수금을 받지 않지만 소송구조 등을 통한 수입이 일부 있다. 그러한 수입에서 법률사무소 비용을 충당하고 남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다시 단체에 후 원하다.

법률사무소 수입을 목표로 잡지는 않는다. 소송 등의 법률지원은 그러한 지원이 C의 미션에 맞는가(법률지원을 통해서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법·제도·관행을 바꿀 수 있는 가)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건 수임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다만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음에도 굳이 받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건 중에 요건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소송구조를 신청하기도 하는 것이다. 소송구조를 통한 수입은 지원하는 사건이 소송구조 요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의 수입을 따로 목표로 두지 않으며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으로여기지 않고 있다.

#### 문 : 재정 구조, 재정 확보 방법은?

답: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후원에 관한 원칙 중 하나는 일정규모 이상의 정부나 기업으로부터는 후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풀뿌리 후원 중심이다. 수입구조는 회비와 후원 금으로 구성되며, 이 중 회비가 70퍼센트 이상이다.

강의료, 원고료, 발제비와 같이 개인에게 발생하는 수입이 있는데, C의 업무와 관련된 수입이라면 100% 단체에 다시 후원하고 있다. 이런 개인수입을 처리하는 기준은 단체마다 다다르다. C도 처음에는 수입의 50%를 단체에 후원하기로 정했는데, 개인수입이 생기는 업무와 생기지 않는 업무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데 어떤 종류의 일을 많이 맡느냐에 따라구성원들의 수입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겨 단체의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단체에모두 후원하는 것으로 내부 기준을 수정하였다.

### ○ D 비영리민간단체 - 지역 변호사 중심 단체

기본적으로 인권의 벽을 허무는 것과 관련한 사건들(그것이 이주노동자든, 난민이든, 장애인차별 사건이든)은 그 자체로 안정된 수입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그 벽들은 반드시 허물어져야 하고, 그 벽을 허무는 것은 단지 변호사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알고 관심을 가지고 돌을 던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려면 후원이 바탕이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 돈이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시민후원이 필수적이다. 그 벽들은 변호사혼자의 힘으로 깨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 벽들은 계속 돌을 던져야 깨지는 것인데, 그것이 단지 한 번의 소송, 한 번의 이슈 파이팅으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재정구조는 정기후원과 특별후원이 2018년 기준 1억원 정도(그런데 2018년 연말에 후원의 밤행사를 해서 조금 과잉 평가되었다. 후원은 현재 기준은 8천만원 정도로 보아야 할 듯 하다), 아름다운재단 사업지원금이 2천만원, N과 Z의 지원금이 1천만원, 법률사무소 수입이 2천5백만원 정도 되었다.

법률사무소 수입은 내부 구성원이 나누지 않고 모두 사무실 운영과 법률사무소의 고유한 갖가지 지출을 하는데 쓴다. 지출을 하고 남는 돈은 비영리단체 로 전용하여 사용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일단 다 쓰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지출을 하고 남는 돈을 비영리단체로 전용한다고 하여모든 금액이 기부금영수증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수입을 내부 구성원이 나누지 않는다는 원칙은 별도로 내부 운영규정을 두었다. <u>법</u>률사무소 수입이 전체 수입의 20-25%의 선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 ○ F 단체 - 지역 활동가 중심 단체

(급여를 위한)기금은 외부에서 받는 펀딩보다는 돈을 공익변호사가 직접 모으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근변호사가 절박해서 모으기도 하지만 직접 펀딩을 해야 단체들도 책임감이 생긴다. 단체도 외부에서 돈을 받아오면 자체 펀딩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지역에서) 회원 모집을 했다. (후원)회원을 모집해야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지속가능한 기금 마련을 위해 10만원 일시기부보다 1만원 정기기부가 더 중요하다.

사업비를 따내는 것보다는 풀뿌리 회원모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회원 300명 모집을 목표로 해서 지속가능한 급여를 만들어 F에서 일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200+ 우리지역 공변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F 상근은 2016. 10.부터 했는데, 2016. 6. 펀딩 준비부터 같이 시작했다. 그 때 150명 회원 모집에 성공했다.

(···) 나의 경우 소송구조로 받은 돈까지 모두 F에 다 기부했는데도 F는 재정이 모자라게 되었다.

## 3) 법률사무소/법무법인이 일정 이상의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는 대부분 미래의 어떤 목적을 위해 준비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 ○ T 법률사무소

우리는 두 가지 핵심적인 가치관을 정립했는데, 첫 번째는 누구를 대리할 것인가, 그 영역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약자로 하자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u>분배액의 상한액을 정해서 그보</u>다 양여 가치가 생기면 적립하고 그것을 다시 분사무소 설립에 쓴다는 것이다.

(…)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서로 본질적인 가치가 맞으면 확장을 해보자는 생각이다. <u>무리하</u>면서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기 때문이 중요한 이유 같다.

### ○ G 법무법인의 경우

문 : 재정구조는?

답: 소송수임료(성공보수금 포함)로 약 80%의 재정을 충당하고, 나머지 20%는 노동조합들과 자문계약에 따른 자문료, 연구용역, 교육, 의견서 등 수입으로 운영한다. 소속 변호사들에 게 호봉체계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만, 따로 이익을 분배하거나, 개별적인 성과보상은 없 는 구조이다. 이 부분이 다른 일반 사무실과는 차이가 있다면 있을 것 같다.

 $(\cdots)$ 

문 :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을 나누는 것이 개인을 독려하는 의미가 될 수 있기도 한데,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는지.

답: 노동운동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익을 배분하는 구조라면 모순 아닌가. (웃음) 내부적으로는 자연스러운 것이라서. 대신 내부에 적립하게 되면 이후 후배들이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내부에 노동자권리연구소(준)같은 것을 만들어 노동관련 법제도 연구나 대응도 더 잘해볼 수 있고.

## (3) 조직 내 역할 배분 및 논의 구조

비영리단체의 경우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점, 또 종전 변호사와 다른 일들을 함께 해내야 한다는 점에서 조직 내 역할 배분과 그 논의 구조에 대한 고민들이 남다르다. 이런 고민들은 공익변호사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비영리단체 조직에 있는 고민들이라 하여 가과할 수 없다

#### ○ C 비영리민간단체의 예

문 : 변호사님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답: 올해 대표를 담당하고 있다. (돌아가면서 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가 있어 복잡하긴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대표를 바꾸고 있다.

대표 재임 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한 고민이 없진 않지만, 대표를 하게 되면 단체 운영을 총괄하고 회의주재를 하기 때문에 신경써야 하는 게 있다. 지금까지는 한사람이 계속 전 담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고 실무를 분담하는 차원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

문 : 구성원끼리의 역할분담은?

답: 비변호사 상근자는 운영지원을 맡고 있으며, 현재 회계·재정·총무를 담당하는 상근자와 모금·홍보를 담당하는 상근자가 있다. 변호사 상근자는 4개의 사업팀에 각각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다. 변호사들도 운영과 관련해서 일을 분담을 하고 있다. 올해 총회에서 의결된 운영과 관련한 직책은 대표, 사무총장(올해 처음), 교육부서장, 홍보부서장, 후원부서장, 각 사업팀장이다. 매년 누가 대표를 맡느냐에 따라 운영부서의 구성도 조금씩 달라진다. 사무총장은 올해 처음 만들어진 직책이다. 단체의 성장에 따라 대표의 업무 부담이점점 커지게 되면서 모두들 대표를 맡기 부담스러워하는 문제가 생겼고 그것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올해는 사무총장을 두어 대표가 맡던 업무를 분담하게 되었다. 대표는 기본적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대외적으로 단체를 대표하는 업무들을 하고, 사무총장은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매주 1회 주간회의를 하고 있고, 한 달에 한번 운영위원회(정관에 따른 공식적인회의)가 있다.

그래서 C의 전체적인 기조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전원이 논의해서 합의하여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 업무분장은 조정을 하는 식으로 한다. 내가 대표를 맡아서 다른 것들을 일상적으로 조정을 한다. 내부적인 계속적인 조정과 조율을 하고 있다.

#### 문 : 최근 C의 고민은 무엇인가.

답: 인원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느냐가 큰 고민이다. 사실 회의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진다고 구성원들이 느껴서 중간에 일상적인 회의를 줄인 적도 있었다. 올해는 매주 하고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간회의를 격주로 줄여서 한 달에 두번 정도만 진행했고 평상시에는 메신저와 메일을 통해 소통을 했었다.

그런데 올해 다시 회의를 매주 하게 된 이유가 일상적인 회의를 줄였을 때 당장은 회의가 적어져서 좋다는 느낌이지만, 조직이 커진 상황에서 평상시 소통의 기회가 줄어들다보니 한 번 회의를 할 때 공유를 할 내용이 너무 많아지고 일상적인 공유나 의사소통이 잘안 되어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오히려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해 서로가 하는 일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거나 중간에 오해가 생기거나 잘 챙겨지지 않거나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누었고, 회의를 짧게 짧게 자주 하는 것이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소통이 원활히 안 되었을 때의 스트레스를 체감하였기 때문에 다시 회의를 자주하기로 하였다.

### ○ B 비영리법인의 예

문 : 구성원의 역할(총괄, 회계, 세무, 펀딩, 회원관리, 기부금품 관리, 홍보, 인턴 관리 등) 분배를 어떻게 하는가.

답: 우연하게 정했다. K는 후원자 관리, J는 회계, 세무는 Y, S, J는 자원봉사자 관리, 홍보는 각자. 홍보는 전문화되면서 Y가 한다. 왜냐하면 탁월하게 잘하니까.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일이 많아지니까 결국 분화가 되었다. 또 그러다가 비영리법인과 관련한 복잡한 회계·세무 신고들이 있음을 깨닫고 그 것 역시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 부분을 맡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행정활동가를 뽑게 되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함도 있었다.

### ○ A 비영리법인의 예

처음에는 간사 1명에 변호사 5명이었다. 변호사들이 홍보도 맡고 했지만 잘 안됐다. 그래서 2~3년차 때 간사분들을 더 채용했다. 총무부분, 교육부분. 세 번째 간사분은 독립해야 했기 때문에 회계부분을 채용했다. 인턴은 업무를 같이 해야 하므로 담당구성원이 인턴과 같이 일하는 구조이다. 펀딩은 변호사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펀딩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고 담당하는 분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펀딩은 인적관계에서 형성되는 부분이 많다.

. . . . . .

팀이 엄청나게 많다. 이번에도 유튜브 팀을 만들었는데, 모금팀, 홍보팀, 15주년팀, 교육중개팀 등 온갖 팀들이 만들어졌다 사라졌다 잘 모였다 안 모였다 반복을 하는데…… 그건 당연히 가동이 되어야 할 거고. 사람은 적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거니까. 사람은 한 명이지만 내부에서도 여러 팀에서 활동을 하고, 외부에서도 여러 역할을 맡고 그렇지 않나. 공익변호사를 하려면 불가피하지 않나. 법률자문이나 소송만 잘 하면 안 된다. 손을 빨고 있어야 하니까. 모금도 해야 하고 홍보도 해야 하고, 필요하면 유튜브도 해야 되고.

. . . . . .

재단 산하에 있을 때에는 팀장으로서 재단 조직과의 소통이나 의견전달사항이나 이런 걸 담당했다. 독립하면서는 사무총장으로서 대내, 대외를 총괄해야 하니까 역할이 엄청나게 커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사무총장을 했다. 그 때는 이사회랑 임기를 같이 했다. 임기를 같이할 수밖에 없고, 상임이사이니까, 우리 중에 2명이 상임이사로 이사진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사무총장이 되고 다른 한 명은 사무차장이 되거나 다른 역할을 하고, 그러다 작년부터 이사회 임기가 3년 임기로 바뀌면서 사무총장임기도 바뀌었는데, 쉽지 않다.

사무총장이 모금을 책임지고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대외업무를 줄이지 않으면 엄청나게 힘들다. 왜냐면 둘 다 제대로 못 하게 되어버리니까. 그런 자리다. 그럼에도 당연히 중요한 자리이고 누군가는 해야 될 자리이기도 하다. 스스로 잘 업무를 컨트롤 하는 게 중요하다.

창립 세대와 그 이후 변호사들이 느끼는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무게나 책임감이 달라서 그것도 힘든 것 같다.

### ○ E 비영리법인의 예

#### 문 : E를 설립하면서 만들었던 조직구조. 의사결정 단위가 궁금하다.

답: 이사회, 사무국회의가 있는데, 처음에 이사회는 외부 2분(로스쿨 교수 1분, 시민단체 1분), 나머지는 전부 로펌 변호사들로만 구성을 했다가 최근에는 이사회의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단체의 외연을 확장하자는 취지로 내부이사 2명, 나머지는 모두 외부이사로 바꿨다. 그럼 사무국과 상근변호사의 위치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있을 텐데, 처음에는 자신이 없어서 한 명 외에는 모두 펠로우로 뽑았다가 모두 상근으로 전환했다.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단법인이 고용한 근로관계 혹은 일종의 조합을 생각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합 성격이라고 본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상근변호사의 자발성과 동력이다. 법무법인에 의지해서만은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구성원각자가 다 펀딩능력이 생겨야 한다.

#### 문 : 사무국 안에서의 의사결정 구조에 관한 어려움은 없나.

답: 업무를 잘 분배하지 않아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지금은 사무국장, 운영 지원팀장, 법률사업팀장, 홍보팀장을 두고 각각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면서 예전보다 안 정화된 것 같다.

## ○ H 비영리법인의 예

재단법인이 만들어지면서 공익법활동과 법무법인의 CSR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법무법인의 공익위원회 변호사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 있고 CSR로 통칭되는 봉사활동 시상, 장학금, 공익인권 대상 등의 사업이 있는데, 사무국 직원들은 주로 후자의 업무를 하고 있다. 사무국 직원들은 사회공익 사업 진행 전반을 담당하시고 공익법 전담은 변호사들이 하고 있다. 재단 사무업무도 사무국 분들이 더 분담하고 있고, 특히 세무가 그렇다.

보통 팀장님이 작성한 서류를 상임변호사랑 사무국장, 상임이사님이 결재를 한다. 사안에 따라 최종결재권자가 다르다.

### ○ T 법률사무소의 예

우리는 두 가지 본질적인 가치에 동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다. 두 가지 가치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다면 깨졌을 거다.

오히려 요즘은 사건을 같이 하는 게 쉽지 않다. 일을 공유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 같다. 사건 진행 방향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독립성을 보장해 준다. 처음에는 개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착각에 빠졌었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빠지고 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서로 믿으려고 하는 편이다. 물론 한 달에 한번 꼴로 "집담회"등을 개최해 사건을 공유하고, 조언을 받고 싶은 사건들은 자유롭게 토론하는 회의를 한다. 가급적 짧게.

### ○ G 법무법인의 예(지부가 많음)

문 : 구성원들이 늘어났고 지역사무소도 있는데 구성원 간의 소통, 회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 처음에는 한 사무실에서 전체 회의, 면접도 전체가 같이, 변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역이다 같이 하는 구조였다. 그런데 지금은 20,30명 인원이 늘어나면서 그럴 수가 없어서 운영위원회, 면접위원회 등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다.

문 :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답: 각 사무소의 담당 책임자들, 각 직역별 대표, 구성원 중 저년차 대표 등 10여명 안팎으로 구성되어 있고, 월 1회 회의를 한다. 여기에 지역사무소 대표들까지 들어오면 확대운영위 원회가 된다. 2개월에 한번 전체 구성원이 모여서 3-4시간 워크숍(공부)도 하고, 각 사무소의 그간 사업내용 공유라든가, 주요 판결 등을 공유하는 전체회의가 있다.

문 : 대표의 역할은 무엇인지.

답: 대표변호사의 역할은 전체 총괄 관리라든가, 각 사무소별로 업무부하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지원을 한다든지 등 그런 역할을 한다.

## (4) 조직의 주요 변화/구성원의 변화와 적응 과정

## ○ B 비영리법인의 예

문 : 조직 구성원의 변화와 역할 배분 과정은?

답: 2011년 1월 초에 혼자였다가 2011년 말에 한 명 더, 2013년 두 명 더, 2016년에 한 명 더 변호사를 뽑았고 2018년 리서처를 채용했다.

모두 재정 확보 후 뽑았다. 예를 들어 콘서트 같은. 모금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일을 줄여야 한다.

구성원이 많다고만 좋은 건 아니다. 단체의 힘이 구성원들 사이의 공동체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효율적으로 분업해서 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앞으로는 모르지만)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성원들이 대부분 B의 수습이거나 인턴이었거나 하는 분들이 들어왔다.

서로 격 없이 가볍게 소통하려고 한다. 플랫폼과도 연결된다. 의사결정을 빨리하고 소통을 가볍게 한다. 처음엔 페이스북(비공개 페이지), 지금은 슬랙으로 한다.

문 : 기록을 남기는 것도 의미가 있나?

답: 그렇다. 내부적 기록을 따로 남기지 않은 것이 조금 부족한 점이다. 후원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내부적 기록(회의록)을 따로 남기지 않는다.

조직이 5-6명이 되니 어떻게 조직화를 할 것인가 숙제이기도 하다. 내 스타일은 공동체 성을 지향하는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조직화, 구조화가 될 단계가 왔다고 평가한다.

요즘이 가장 큰 변화다. 행정간사 뽑고 조직화 하고.

행정간사는 우리에게 실험이다. 지금까지 변호사들이 직접 행정업무를 한 이유는 첫째, 행정직과 변호사의 호환이 안 되는 이원구조가 싫었다. 행정간사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구성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더 어려운 방법이다(왜냐면 사회적 평가가 다를 수 있어 이를 이상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쉽지 않음). 둘째, 일을 하는 사람이 행정일을 더잘할 것 같았다.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규모가 커지면서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했다. A 비영리법인의 실장님과 상담하면서 든 생각이, 행정적인 일이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급여도 변호사들과 같이 받는다.

#### 문 : 구성원 변화와 어려움, 한계와 해결방안은?

답: 조직화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은 \*\*\*변호사님의 부재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변호사님의 성품에 의존해서 일을 하는데, 이분이 사라지면, 모든 면의 지주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된다. \*\*\*변호사님이 안계시면 우리 사이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있었다.

내규가 없었다가 최근에 마련했다(예. 안식년, 탄력근무, 자원봉사자, 인턴관리, 근무). 조직화, 기록화가 절대 필요하다. 사람은 계속 변한다. 새로 뽑는 행정실장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체계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분에게는 예측가능성이 없다.

## ○ C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일단 신입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변호사든 비변호사든 지금까지는 새로 들어올 때마다 주로 맡게 될 영역이 정해져있었다. 그 경우 새 구성원이 담당하게 될 업무 부서, 예를 들어 변호사 구성원이라면 해당 사업팀에서도 교육을 하지만, 그거말고도 조직 전체에서 교육을 같이 담당하기 위해 신경을 쓰고 있다. C의 비전과 미션, 가치와원칙, 지금까지의 역사, 단체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등을 자세히 교육하려 하고, 각 부서마다 개관하는 시간을 따로 갖는다. 집중적으로 교육받는 시기인 3-5개월 동안은 다양한 업무를 해보실 수 있도록 회의에서 계속 교육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내용을 조정해나간다.

### ○ A 비영리법인의 예

전환점이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다. 이번에 15주년 맞이하면서 대규모 후원행사를 한 것이 처음이었는데, 처음으로 큰 행사를 한 거다. 창립 이후에 복수의 변호사를 채용한 것도 올 해가 처음이었다. 이번에 3명의 변호사를 뽑아서 변호사 11명, 간사 3명 총 14명이 되었다.

- (…) 원래 ㄱ 재단에서 만들어진 것도 \*\*\*변호사님이 재단의 상임이사였기 때문에 덜컥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원래 독립은 예정되어 있었고, 그게 언제냐가 문제였던 거다. 내부적으로도 우리는 활동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자체적으로 홍보나 모금처럼 다른 변호사들은 전혀 하지 않았던 일을 많이 해야 했었다. 그러다가 독립이 무르익을 시점이 돼서 9년 만에 독립을 했다.
- (…) 지금 3명 들어왔을 때하고 그 전하고는 다른 것 같다. 정말 신입이 들어온 것은 2014년 \*\*\*변호사 때부터였다. 그 전에는 다 경력이 들어왔다. \*\*\*변호사는 장애, 노동 쪽 담당하고 \*\*\*변호사가 멘토 내지 사수가 되어서 같이 일을 많이 하고 그랬다. 일종의 교육훈련을 했다. \*\*\*변호사도 국제 인권, 성소수자 쪽이었으니까 \*\*\*변호사님이나 \*\*\*변호사가 같이 했고, 지금은 세 명이 와르르 들어와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이다. 어떻게 교육훈련을 잘 할 수 있을지. 사무총장은 교육훈련의 당사자는 사실 아니고, 예컨대 자기 영역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들어오면 자기 책임인 거다.

#### ○ T 법률사무소의 예

- 문 : 1인 공익전담 방식으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도 있지만, T 법률사무소의 경우 계속 확장해 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인터뷰 대상자가 되시기도 했다.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텐데 왜 혼자가 아니고 후배변호사를 채용하면서 계속 확장한 것인가.
- 답: 한 명 더 고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시도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종의 실험을 해보고 싶었다. 어떤 실험이었냐 하면, 고용변호사를 2년 정도 훈련시켜서 파트너십을 갖자라는 생각이었다. 1년차는 소수자를 위해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학습하고, 2년차에는 어떻게 사무실을 운영할 것인지를 학습해서 우리가 \*\*동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그 분이 새로운 지역에서 개업할 수 있도록 돕는 거다. 자립할 때까지 재정 등 여러 지원을 해 드릴 생각인데, 이게 사무실의 분사무소 형태가 될지, 아니면 느슨한 네트워크(연대)의 형태가 될지는 아직 미정이다.

우리는 두 가지 핵심적인 가치관을 정립했는데, 첫 번째는 누구를 대리할 것인가, 그 영역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약자로 하자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분배액의 상한액을 정해서 그보다 잉여 가치가 생기면 적립하고 그것을 다시 새로운 곳에 개업하려는 후배변호사의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등 공익적인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서로 본질적인 가치가 맞으면 확장을 해보자는 라는 생각이다.

<u>"그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인 것 같다.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변호사들을 만난다는 게</u> 쉬운 게 아니니까.

\*\*\*변호사의 경우도 공익기금을 받아 단체에서 공익전담변호사로 일하면서 우리와 교류하였고, 전담변호사를 마치고 우리 사무실에서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고 찾아 왔는데, 그 변호사에게 자리를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경영이 쉬운 건 아니지만 어디든 뛰어들려고 하는 후배가 있다면 자리를 마련하고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 ○ G 법무법인의 고민

지금은 노동운동을 우리도 같이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있는 것 같다. 이전에는 대부분이 학생 운동을 했거나 그런 친구들이 왔다. 앞으로는 인권변호사를 지향하고 노동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올 텐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향하는 노동변호사로 키워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고민이자 과제이기도 하다.

## (5) 원심력과 구심력

각 구성원들이 자신의 전문분야를 가지고 활동해 나가는 원심력과 조직의 중심인 구심력 사이의 긴장 관계와 관련한 문제는 주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는 조직에서 문제가 되었다. 한 가지 주제만을 다루는 경우(예를 들어 민주노총법률원은 노동문제만, 환경법률센터는 환경만) 원심력과 관련한 문제가 없지는 않으나,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였다. 한 가지 주제만을 다루는 공익변호사 조직의 경우는 대체로 법률사무소/법인의 형태이고 후원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심력이 작용하는 경우 구심력으로 붙들 수 있기보다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경우가 더 쉽게 발생하지 않는가 라는 짐작을 할 수 있었다.

#### ○ C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그 밖에 현재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의사소통을 하는 구조다. 이제 구성원이 제법 많은데 의사소통 구조를 위계가 있는 방식으로 설계해두지 않았고 전원이 합의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간과 에너지가 들게 된다. 이것을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다.

또 한편, C는 현재 4개의 주요한 사업 영역이 있는데, 각각의 영역이 전문화될수록 원심력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직으로서 C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무엇이 우리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느냐라는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나가고 있다. 1—2년 동안 이 주제에 대한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누구이고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공익인권변호사 조직은 기존 NGO와 또 다른 특수한 지점이 있어서 고민이 있다.

사실 단체의 지향성과 관련된 논의를 계속해나가는 것은 중요하면서도 힘들다. 게다가 공익변호사 조직은 다른 일반적인 비영리단체와 또 다른 특수성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외부 진단을 받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외부 진단 프로그램들은 기존 NGO 조직을 바탕으로하고 있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또 비슷한 성격의 공익변호사 단체라고 하더라도 단체를 어떻게 설계했는가,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따라 고민지점과 해결책이 서로 다를 것이다. 결국 이문제는 현재 구성원들 각자가 '내가 왜 C에 있는지, 내가 C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는 C

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C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논의하여 합의점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 같다.

초창기에는 전부 다 문장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미션, 가치, 원칙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그렇게 합의된 내용을 실제 활동을 통해서 더 구체화하고 확인해보는 과정들이 초반에 있었던 것 같고, 이후 이러한 합의들을 그냥 '니 맘이 내맘이다'로 두지 않고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일단은 조직이 초창기에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모이더라도 계속 정체성을 유지하며 나아가려면 구심이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의 공통된 생각을 문장으로 세세하게 확인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고 C가 단순한 개개인의 합이 아니라 하나의 조직으로서 가치와 원칙을 가지고 정렬을 해서 나아가려면 그러한 정체성에 대한 합의를 명시적으로 남겨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2, 3년차에 C의 비전, 미션, 가치와 원칙을 정식으로 정리하자고 결정하여 그 해에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문장으로 정리를 했다. 그리고 이러한 지향과 원칙은 잘 지키고 유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구성원의 변동, 조직의 성장에 따라 원칙에 대한 합의가 잘유지되고 있는지, 혹시 그 사이 변화가 생겨 다시 논의해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계속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C는 작년부터 이에 대한 논의를 다시 집중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 ○ A 비영리법인의 경우

문 : 그런 원심력과 구심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 계속해서 고민하는데 해결 방법이 간명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공익변호사 조직들이 수평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누가 누구한테 지시하고 감독하는 사이가 아니지 않나. 원심력이 작동하는 것은 수평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취하는 한 불가피하다. 수직적인 구조는 한 사람이 모든 걸 장악하고서 지시하고 배치를 하는 것이다. 그럼 원심력이 작동할 수 없다. 그런 구조가 공익변호사의 틀에 안 맞는 건 아닌데 대부분은 수평적인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각자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 것인데. 원심력의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수직적인 구조로 간다거나. 위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평적인 구조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최대한 그 형태에서 취할 수 있는 단점 및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형태를 갑자기 바꾼다고 조직이 갑자기 잘 굴러가고 이런 건 아니니까.

원심력의 문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해결방안은 두 가지인 것 같다. 하나는, 누군가가 그걸 잘 엮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우리 같은 경우는 사무총장이 그런 역할을 최대한 한다. 사업을 엮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엮는 것도 필요하다. 사람이 다 각자노니까.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각자이다. A의 구성원으로서 함께하는 동료의식, 공동체의식을 갖도록 엮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또 다른 하나는, 서로 공유하는 것. 공유가 잘 안 되면 각자 어디 가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것도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서로의 활동을 잘 공유하고, 나누는 것. 나누는 것은 정보를 나누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서로 인지하는 것. 정보를 나눈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걸 병행해서 조직의 문화를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 (6) 활동의 동력, 좋은 점과 힘든 점

9년차다. 여전히 아직까지는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 건 없지만 활동 과정이 의미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나의 동력이다. 힘든 것은... 음... 이쯤에서 돈 이야기를 해야할까. 힘든 것은 일의 성격상 여러 가지 감정적인 소진이 될 수 있다라는 게 힘든 점이다. 그런 부분에서 공익이나 인권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소진되지 않게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풀고 활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개인도 조직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한 모델이, 내가 5년 후 10년 후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는 모델이 없기 때문에 활동할수록 고민이 쌓인다. 공익변호사단체의 초창기 멤버 분들이 나가고 있는데, 그 분들의 행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내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무엇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다 하더라도 그런 모델이 많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델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다는 것이다.

## (7)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것

## 1) 재정(후원)

어려운 건 너무 많다(웃음). 돈이 없다. 가장 큰 건 돈이다. 계속 풀뿌리 후원 원칙을 가져가려고 한다. 모든 단체들이 이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단체에 가장 부합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 기업의 인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독립성,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는다.

그러다보니(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u>재정에서의 어려움</u>이 있고, <u>작은 풀뿌리 후원을 가지고</u> <u>서 단체를 지속가능하게 운영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지속 가능성 관련해서는</u> 가장 큰 고민인데, 뚜렷한 해결방안은 없고 우리 활동을 잘 홍보하고 활동할 문제인 것 같다.

모금이 필요하다. 후원자 관리가 중요하다. 이 이슈가 사라지면 일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중요하지 않다. 아예 새로운 후원자를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 회원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원자들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성과 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설립자 \*\*\*이 사라졌을 때에도 우리 단체가 지속가능하려면 조직이 체계화 되어야 한다.

### 2)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

### ○ C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일단 신입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변호사는 비변호사는 지금 까지는 새로 들어올 때마다 주로 맡게 될 영역이 정해져있었다. 그 경우 새 구성원이 담당하게 될 업무 부서, 예를 들어 변호사 구성원이라면 해당 사업팀에서도 교육을 하지만, 그거 말고도 조직 전체에서 교육을 같이 담당하기 위해 신경을 쓰고 있다. C의 비전과 미션, 가치와 원칙, 지금 까지의 역사, 단체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등을 자세히 교육하려 하고, 각 부서마다 개관하는 시간을 따로 갖는다. 집중적으로 교육받는 시기인 3—5개월 동안은 다양한 업무를 해보실 수 있도록 회의에서 계속 교육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내용을 조정해나간다.

지금 현재도 체계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음에 비해서는 조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u>무엇보다</u> 신입구성원의 교육은 몇 달 동안 조직 전체가 신경써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중요하다.

처음 구성원 6명 중 많은 수가 신입변호사로 시작했고 따로 변호사로서 교육을 받지는 못했다. A 나 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려 했지만 조직 안에서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우리도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우리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 뭘 교육을 해야 할지 몰라서 헤매기도 했다. 하지만 신입변호사에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알아서 배우라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새로 들어온 구성원들의 항의성 피드백이 꾸준히 있었고, 그러다보니 조금 더 체계를 만들기위해 노력을 해왔다. 아직도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다. 그래도 요즘에는 민변의 신입변호사 교육같은 것들이 활성화 되고 있어 그 도움도 받고 있다.

#### ○ G 법무법인의 경우

지금은 송무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2주 정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다. 과거에는 그럴 여력이 되지 못했고, 신입 변호사들이 들어오면 바로 사건을 던져주고 모르는 것은 알아서 물어보고 일을 하면서 배우는 방식이었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다. 그 외에 정기적인 케이스 스터디 같은 워크숍이나, 자발적인 공부모임들이 있다.

### 3) 조직구조 체계화

단체의 시간이 지나면서 구성원이 변화하거나 조직이 변화하는 것을 겪으면서 단체 안에 속한 공익변호사들도 비영리조직의 활동가들이 겪는 조직의 변화에 따른 구조의 변화, 체계화, 교육 등에 대한 고민이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엿볼 수있었다.

## ○ B 비영리법인의 예

조직화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은 설립자인 \*\*\* 변호사님의 부재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설립자의 성품에 의존해서 일을 하는데, 이분이 사라지면 모든 면의 지주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된다. \*\*\* 변호사님이 안계시면 우리 사이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있는가.

내규가 없었다가 최근에 마련했다(예. 안식년, 탄력근무, 자원봉사자, 인턴관리, 근무). 조직화, 기록화가 절대 필요하다. 사람은 계속 변한다. 새로 뽑는 행정실장님 입장에서는 아무 것도 체계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예측가능성이 없다.

### 4) 기타 : 결국은 사람

문 : 지속가능한 단체(G 법무법인)를 위하여 가장 크게 신경 쓰시고 노력하는 부분은? 그런데 어려운 부분은?

답: 첫 번째는 사람이지 뭐. 사람이 더 필요하다.

예전보다 확실히 업무 가중도가 줄긴 했다. 절대적인 노동의 시간이 엄청나게 차이 난다는 아닌데, 여기 일이라는 것이 갑자기 대응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 (…) 변호사들이 적지 않은 사건을 하면서 이런 업무까지 하니까 죽어나는 거지.

지금은 그런 일의 가중은 낮아졌지만 예상치 못한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다. 좀 더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재원이 부족하더라도 좋은 사람 있으면 일단 뽑는다.

# (8) 장기 계획 또는 공익변호사의 전망

# ○ A 비영리법인의 경우

더 현장으로 가야 한다. 정책기능 등 전체를 보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구가 공존한다. 한 조직 내에 다양한 연차가 존재하고 상근으로 일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때에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요구받는 기능이 다르다. 10년차만 되도 정책기능 협상기능을 요구받는다. 반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또 그렇지 않다. 소송하면서 현장을 배우고 싶어 한다. 중간에서 그 둘을 병행하는 다른 조직도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구조가 맞는지 고민이 있다. 관심과 현실이 다르다는 괴리감을 처음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 작년이다. 예전에는 원래 있던 그룹도, 새로 들어온 그룹도 "마음껏 뛰어노세요"의 측면이었다면 이것이 이제는 문제가 될 수도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책, 협상기능을 하다보면 소송이 줄고 현장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창립할 때 비전으로 제시한 것, 15주년 행사 때 발표를 한 것이 대동소이하다. 그게 뭐 나면, <u>하나는 공익법이나 공익변호사 활동의 허브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u>. 구체적인 모습들은 다양하다. 인권법캠프나 로스쿨 실무수습같이 교육의형태가 될 수도 있고, 공익변호사 자자립지원사업이 될 수도 있고, 공익변호사모임이나 로펌변호사들 코디를 하는 중개자 역할일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허브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의주된 미션 중의 하나로 갖고 가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법 분야에 있어서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사람들의 창구 같은 역할. A에 오면 사람이 연결되거나 자료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연결링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주된 <u>과제라고 생각한다.</u> 그 연장선상으로 공익활동중개센터, 국제인권센터를 만들어서 공익법 분야 에서의 교육중개 역할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건 A가 하는 것보다 공적인 영역에서 하는 게 좀 더 적절하다 싶어서 서울변회의 프로보노지원센터의 계획과 맞물려서 A의 구성원 중 한 명이 거기로 가서 일 하는 걸로 수렴이 됐다. 국제인권센터는 \*\*\*변호사님이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올해부터는 센터를 열고 상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제인권분야에서 좀 더 자원을 모으고 연결시켜주고 다양한 국제인권 이슈를 다루는 역할도 앞으로 더 하려고 한다.

### ○ E 비영리법인의 경우(로펌 기반)

#### 문 : 상근변호사를 20명으로 증원하겠다고 했는데, 왜 20명을 생각하는 것인지?

답: 예를 들면 기존의 공익변호사단체들을 보면 자기 영역을 혼자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 각자 개인의 전문성은 쌓이지만 조직적으로는 좀 약한 느낌이 들어서, 조직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쌓아가는 느낌이 중요하다. E의 \*\*\*변호사도 혼자 아동 영역을 하다가 \*\*\*변호 사가 들어오면서 영역이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명 중에 아동인권을 하는 사람 5명이 연차도 나눠져 있고, 전문화를 하려면 일정규모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다보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으니까. 이런 규모는 사실 NGO베이스에서는 어려운 부분이고, 아무래도 로펌베이스에서 인원을 늘리는 것이 쉬우니까. 결국 공익변호사를 뽑아서 양성하고 배출하는 것이 로펌의 책무인 것 같다. 로펌공익네트워크도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다른 로펌들도 점차 늘어날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5년 후에는 (E가) 20명 정도가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를 바라면서도, 공익변호사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한다. 전문화와 현장과의 밀착이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되면 사회에 아젠다를 던지고 E 그 자체로 무언가를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결국 E만 커지는 것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공익변호사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같고, 로펌 공익변호사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는 나름 E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 같다. 여기서도 과제가 있다. 한 명만 코디네이터로 뽑아서 지속가능하지 않게고생만 시킬 것인가. 각 로펌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고민이다.

<u>그 다음 단계로 지역 공익변호사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u>고 생각한다. 개별적인 도움도 중요하지만 공익변호사 생태계를 만들려면 사회가 공익변호사를 어떻게 이해하는 가, 공익변호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주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특히 <u>기업이 인권에 기부하게 하는 것이 개인적인 목표 중 하나</u>이기도 하다. 공익변호사생태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E가 그런 면에서 기업이 인권에 기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 ○ H 비영리법인의 경우(로펌 기반)

문 : 장기계획은 무엇인가요.

답: 활동이라는 게 우리가 단체와의 협업 속에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H의 공익변호사활동이나 공익법률활동을 보면, 지금 NPO센터를 운영하면서 네트워크를 넓히는 것도 그렇고 입법활동도 그렇고, 최대한 시민단체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일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할 것 같다.

### ○ 기타

문 : 3년 후, 5년 후, 10년 후 계획은.

답: 계획이 없이, 그냥 재미있게 일하는 게 목표다. '재미있게'하는 것에 방점이 있었다. '사회적인 변화'보다는 재미있게 일하는 거에 초점이 있었다. 재미있게 일해야지 지치지 않고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으니까. 재미있게 일하는 것은 좋았는데, 사회적인 변화는 뭐가 있었는가 싶으니까, 사회적인 변화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

문 : C의 3년 후 5년 후 10년 후 계획은.

답: 궁극적으로는 단체의 중장기 전망을 세우기 위해 평가와 전망 논의를 최근 1~2년 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솔직히 10년 후 계획은 세우는 게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당장 4,5년 후의 사회변화도 알기가 어려운데. 다른 단체들은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일단 10년후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정리하는 걸로.

## 나. 활동가 중심 단체

# (1) 변호사 활동가와 비변호사 활동가의 관계

활동가 중심의 단체에서는 비변호사인 활동가와의 관계 정립에 대한 부분을 섬세하게 고민을 하고 들어가야 한다. 그 다름을 뛰어넘을 수 없다면 활동을 접거나, 변호사로만 구성된 단체에서 일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비변호사와 변호사의 업무를 구분해야 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하는 부분이 있다. 행정업무는 비영리조직이 운영되기 위한 필수적인 살림이므로 이는 여러 사람이 업무를 나누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적어도 다른 사람의 일의 중요성에 대한공감대와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발생할 수 있다. 아래는 그와 관련한 이야기이다.

변호사가 단체에 상근하게 되면, 단체의 모든 일을 변호사가 하게 되지만, 활동가들은 변호사 일을 하지 못한다. 모든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활동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왜 변호사는 우리 일은 안 하지? 생각했던 것 같다. 우리 사회의 변호사 업무형태(변호사 고유 업무는 변호사, 그 외 업무는 비변호사)가 있는데, 우리는 그 방식을 시민단체에서 구현하려고 하는데, 너무다르다. 활동가는 비서가 아니다. 활동가들 간에 역할에 대한 고민,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시민단체에 오시는 활동가 외의 회원이나 다른 당사자분들이 활동가를 바라볼 때, 변호사 보조업 무를 담당할 수밖에 없게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 7~8년 동안 일했던 활동가가 법률지원 업무를 하면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다(결국 그 활동가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비변호사 상근 자와 변호사 상근자 간의 역할 고민은 어느 단체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반면, 변호사는 지역 언론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150만원만 받고 공익변호사가 일한다, 너무 훌륭하다! 홍보 포인트이긴 하지만 활동가들은 "나는 150만원이면 충분하고, 변호사는 부족한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반면, 나의 경우 소송구조로 받은 돈까지 모두 소속 단체에 다 기부했는데도 센터는 재정이 모자라게 되었다. 일은 많은데 회원 모집이 잘 안 되니까. 회원 800명에서 정체되었다. 회원을 확대해야한다는 압박감도 생기게 되었다.

결국, 내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자립지원기금을 신청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기금이 급여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었다. 150만원만 주겠다는 것. 평등한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변호사만 300만원만 받는 상황이 되니, 단체도 고민을 시작했다. 단체는 그 150만원을 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지원되기를 원했지만, \*\*자립지원기금은 "단체 기부는 안 된다. 공익변호사 급여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결국 \*\*자립지원기금은 안 받게 되었다.

한편, 활동가와 변호사의 급여 차이가 결국 조직 내 보이지 않는 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활동가가 설립한 단체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모두가 임금을 상향하여 받으면서 추가적인 펀딩을 하거나 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되지 않는가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그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실행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비영리단체라면 원칙적으로는 활동가와 변호사의 급여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다. 비영리단체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중요시하는 단체이고, 민주적 의사결정이란 모두가 동등한 지위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활동가이냐 변호사이냐의 정체성. 급여의 관계에 대한 아래의 인터뷰를 읽어보자.

문 : 센터 입장에서도 법률가가 처음이어서 채용 형태나, 일하는 형태나,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을 것 같다.

답: 둘 다 같이 고민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다. <u>어쨌든 둘이 합의된 것은 내가 '활동가'라는 것</u> 이다. 물론 지식을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합의 하에 첫 해에 사법절차에서의 아동인 권 관련 외국문헌을 번역을 해서 한국법과 비교한다든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 제도와 방안 연구용역이 그 해 한 5월쯤 시작되었던 터라 갑자기 그 연구에 투입되기도 했다. <u>활동가이지만, 기왕이면 좀 더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찾은 거다.</u> 그 때 그런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문 : 센터 활동가와 같은 초봉으로 들어간 것인지.

답: 똑같고. 지금도 똑같다.

문 : 그런데 일하다 보면 변호사만 할 수 있는 특수한 역할이나 전문성이 있을 텐데 인정받거나 지지받지 못한다는 느낌이나 고민은 없는가.

답: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은 괜찮다. 사실은 시민단체는 단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다른 단체와 연대를 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게 시민단체가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출생등록도 만약 내가 없었다면, 실태조사 같이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다른 공익변호사단체에서 법률지원이나 소송을 했다든가 그렇게 했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입법활동도 다른 네트워크 단위에 한 두 사람의 변호사는 반드시 있으니까. 변호사가 아니어도 관련 필드에서 법을 보다 보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이해도는 생기니까. 그냥 내가 우연히 여기에 있어서 조금 더 법을 공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더 상호작용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뿐이지, 내가 일을 더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 나는 인권활동가로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고민만 있다. 사실 그 정체성이 급여나 처우보다 더 중요한 것 같다. 시민단체에서 일한다고 해서 변호사라는 정체성을 지워야 한다는 것까진 아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선 안 되고, 변호사니까 다른 처우를 받고 싶단 기대도 접어야 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인정해주시니까.

## (2) 활동가와 변호사 두 마리 토끼

단체에는 나 말고 10년 이상 일한 베테랑 활동가 한 명이 더 있다. 다만 비변호사이다보니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 서로 역할 분담 등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활동가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없어서 변호사의 활동을 도와줘야겠다에 그쳤던 것 같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메인 컨텐츠를 채우는 일을 하려다 보니 부담스러웠다. 이전에 일했던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로 업무를제한했던 것 같은데, 상근자(간사)로서의 업무를 많이 하지 않았고 다른 활동가들 사이에서 엇같린 평가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입사할 때에는 활동가로서의 역할을 단체에서도 기대했고, 나도 그런 일을 하고 싶었다. 활동가로서 성장하고 싶은 욕심이 컸다. 변호사/활동가로서 성장하고 싶은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었다. 그래서 자괴감에도 빠지고 힘들었던 것 같다.

(…) 시기 별로 달랐다. 송무와 비송무의 비중(시간)으로만 봤을 때, 송무가 많을 때는 50~60%, 적을 때는 10%. 왔다갔다 편차가 심해서 혼란스러웠다. 비교대상도 전례도 많지 않았다. 스스로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단체라면 임원들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신경을 안 써서 서운한 마음도 든다. 상근 변호사를 들인 이상 어떤 역할을 줄 것이고 어떻게 키울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사실 변호사뿐 아니라 활동가 역할 전반에 대해서 고민하는 임원이 거의 없다. 그래도 외부의 소규모 단체에서는 단체 내활동가가 역량을 잘 키운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어쨌든 조직적 고민이 없었던 점은 아쉽다. 요새 단체 재정이 없기도 하고, 상근 변호사 TO가 상시적으로 있는 것도 아닌지라 내 후임은 없고, 당분간 없을 수도 있다. 임원들도 상근 변호사 없이 운영위원으로 소송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활동가 중심 단체에서 일하는 상근 변호사의 풀리지 않는 과제 같다. 예를 들어. \*\*\*변호사님은 송무에 대한 미련이 없기 때문에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하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 중에는 3년 이상 간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어떤 형태가 활동가와 변호사가 가장 잘 협업할 수 있는 형태인지는 아직도 고민이 있다.

## 다. 지역 공익변호사 이야기

## (1) 필요성 및 준비과정 - 네트워크 구축

## ○ F 단체(지역 활동가 중심 단체)에서 일하기까지의 준비과정

공익변호사를 하겠다는 컨셉은 영리 목적이 아닌 비영리섹터에서 지역에서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활동하자. 수도권보다는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훨씬 많을 테니 지역에서 시작하자고 생각, 이러한 단순한 컨셉이 A를 통해 좀 더 구체화되었다.

당시에도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가 매우 컸다.

당시 지역 로스쿨에는 인권법학회 자체도 없었다. 그러나 수도권에는 인권법학회도 있고, 학회 중심으로 공익활동도 하고 인턴십 기회도 있었다. 인권법학회부터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 인권법학회부터 만들고, 장애 등 온갖 공익영역별로 위원회를 만들었고, 동천에서 실시하는 로스쿨 공익활동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게 되었다. 동천 프로그램 진행상황만 보아도 당시 지역로스쿨은 학생들 개인의 역량으로 진행되는 반면, 수도권 로스쿨은 교수,학교의 지원 아래 좀 더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

당시 인권법학회는 활동 중심보다는 세미나 중심이 많았다. <u>공익변호사 활동을 할 때 A를 보니. 활동기반이 NGO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 때부터 지역 NGO들과의 관계를 인</u>권법학회를 통해 맺기 시작했다. F도 이 때의 인연이었다.

A 인턴을 마치고 로스쿨 2학년 때, A에서 시작한 현장단체 파견사업(2년씩 공익변호사를 파견하는 모델)을 현장에 적용해보자고 생각했다. 인권법학회 장애인권팀하고 \*\*\*단체와 함께 성폭력상담소에 가서 같이 판례나 사례를 연구하고, 장애여성들 지원하면서 법률적으로 모르는 절차 등을 연구하는 정기적인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F도 노동인권팀과 함께 부당해고사건, 행정심판사건은 서면을 작성해 드리고 장애인권리공단에 정보공개청구 등을 진행했다.

(···) 당시 <u>리걸클리닉 센터장을 설득해서 리걸클리닉과 현장단체들이 업무협약을 맺도록 했다.</u> 법률적 수요가 있으면 리걸클리닉센터에서 도와주는 새로운 시도였다.

#### 당시 초창기에 고려한 활동모델은 3가지였다.

- 1)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 : 리걸클리닉센터에서 상근하면서 리걸클리닉 소송예산(1년에 약 1,200 만원)과 졸업생들 기금(연수원 공익변호사기금 모델 참고)으로 급여 마련하는 방안이었다.
- 2) 지역 NGO센터: \*\*NGO센터는 도에서 위탁받아 도예산으로 만들어진 조직인데,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있었다. NGO를 만들려는 사람들에게 사무실, 사무용품 지원하고 임금까지 2년 동안 지원해 주고,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이었다. 접근성도 좋고, 사무실 베이스나 공간 문제 해결 가능했고, 기금으로 임금 보전하는 방안이었다.
- 3) 단체 상근 : F는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이례적으로 회원 수도 많고 잘 되고 있는 인권단체 로서 사건도 많았다. 지역에서 법률지원한다면 이런 형태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3가지를 검토했는데.

- 1) 리걸클리닉 : 교수에서부터 학교가 공익변호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인식이 거의 없었다.
- 2) 지역 NGO센터 : 고민하는 선택지 중 하나였다.
- 3) 단체 상근 : 풀뿌리, 현장이라는 이점, 모금을 통해 시작할 수 있는 곳, 기존의 법률수요도 많아 법률지원도 마음껏 할 수 있고, 활동시작이 용이하겠다고 생각했다. F에서 상근하기 시 작했다.

## ○ D 비영리민간단체(지역 변호사 중심 단체)의 경우

D가 생각했던 선택지 그러나 선택하지 않은 이유

- 1) 리걸클리닉센터/공익법센터: 학교 자체가 공익변호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재원이 없다고 한다. 내가 \*\*대학교 출신이 아닌 것도 한계로 작용했다.
- 2) 지역NGO센터: \*\*센터의 경우는 사회적 기업이 주력사업이었고 인권분야는 관심사항이 아니었다. 또한 센터가 인권 관련 NGO들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 같지 않았다. 공익변호사가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 3) 민변 \*\*지부: 민변과 많은 작업을 함께하지만, 전문가들만이 멤버쉽을 가질 수 있기에 이슈 파이팅과 애드보커시 작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한 민변의 정치색이 부담이 되기도 하였다.
- 4) NGO 상근: 활동가들이 중심인 단체에서 변호사 역할의 외로움이 있고, 한 가지 인권분야에 만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분야에 걸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역에는 공익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모든 주제들이 집중될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 그때 단체 소속이면 운신의 폭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다. 반대로 단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단체의 예산상의 한계, 급여의 차이 여부 등에 따른 미묘한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활동가들과 그런 문제로 멀어지고 싶지 않았다.

5년차 정도의 경험이 있었고, 그 경험이 모두 NGO영역에서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만들어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NGO들과의 네트워크는 서울에서 형성된 것이 연결되기도 하였고, \*\*에서 1년 반 정도 지역 인권단체 활동 상황을 살피면서 감을 잡고 연대를 쌓아갔다. 일단 전화를 해보고 만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그렇게 라포가 형성되기 까지는 1년 이상은 걸렸던 것 같다.

#### 지역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였다.

먼저 지역의 네트워크를 조사하고 구축하는데 시간을 들였다. 천천히 여유 있게 했다. 하루 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역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았기에 학교를 접점으로 가져갈 수 없었다. 그래서 \*\*지방변호사회와 민변 \*\*지부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에 먼저 신경을 썼다. 지방변호사회의 회의에도 참석하고, 민변 \*\*지부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노력들이 가능했던 것은 민변 본부에서 회원팀장으로서의 경험과 현장단체에서의 활동가들과의 코워킹의 경험이 밑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다.

학교에 공을 들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설립 초기부터 공익법센터 등에 문을 두드렸으나 한두명의 교수 이외에 학교 전반적으로 매우 소극적이었고, 소극적인 태도는 3년이 넘어도 거의 변하지 않았다.

NGO 상근변호사의 경험들과 네트워크가 \*\*지역에도 조금은 걸쳐 있었다. 그럼에도 지역 사회의 인권단체들에게 공익변호사의 역할을 알리는 것만 해도 시간이 꽤 들었다. 일단 지역에서는 인권활동가들조차도 공익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거의 알지 못했고, 그래서 대부분 먼저 거리를 두었다(단체들은 자신들만의 일정과 사업이 있으므로). 활동가들과 라포를 가지고 깊은 연대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시간이 필요 했다. 분야에 따라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은 걸리는 것 같다.

# (2) 어려웠던 점

공익변호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것을 설명하고 알리는 것이 힘들었다는 점이 공통된 어려움이다. 지역에서는 공익변호사가활동하는 것 자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의도를 의심받기도 하고, 무엇을 할 수있는지 능력에 대한 의심을 받기도 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받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공익변호사를 값싼 전문 노동력 정도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공익변호사의 활동과 지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발생한다.

지역 공익변호사를 시작할 때 생각한 모델 중 하나가 리걸클리닉센터 상근이었다.

로스쿨 졸업 직후 리걸클리닉센터 당시 운영상황은, 센터장이 로스쿨 졸업생 중 지도하던 제자나 아는 (동문) 로펌변호사 중 개업변호사에게 사건을 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리걸클리닉뿐만 아니라 학교 전반적으로 공익변호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다.

리걸클리닉센터에 이주여성 사건과 관련한 공익소송지원신청서를 냈다. 그 때 받았던 금액은 모두 상근하던 단체에 다시 전액 기부를 하게 되었다. 이후 리걸클리닉센터에서 공익변호사 1 명에게만 사건이 몰린다며, 형평성 문제제기를 하였다. 그러면서 리걸클리닉 사건을 그만두게 되었다. 리걸클리닉센터의 공익사건, 공익변호사 활동에 대한 개념, 이해도가 매우 부족했던 것 같다. 지방대학교는 돈이 부족하니 사건 지원금을 학교 발전기금을 내라고 종용하기도 한다.

또한 지역 공익변호사는 다양한 인권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기에(지역에 유일하므로) 다방면의 법률실무경험이 필요한데(비영리단체 운영이라는 특수한 문제들을 겪는 것도 물론이고) 이것이 부족하기에 오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관련한 실무경험이 부족한 것이 어려웠고 그 경험을 쌓으려고 했던 것이 힘들었다는 의견은 신입 변호사들이 지역공익변호사로서 접근하는데 어떤 장벽이 있는가를 짐작하게하는 부분이다

또한 한두 가지 영역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다양한 분야의 요청이 쇄도하기에 일이 많아서 어려웠다는 것은 공통된 경험이다.

### ○ F 단체(활동가 중심 단체)

당시 \*\*공익변호사자립지원기금도 있었고, 지역 공익변호사단체를 만들 수도 있었지만, 결국 지원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실무능력 부족 문제 때문이었다. 일반 송무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은 법률문제라고 하면서 온갖 문제를 다 가져온다. 대신 일반 시민, 같이 활동하는 활동가조차도 공익변호사, 공익활동에 개념이 전무하고 인식수준이 정말 낮은 상태였다. 공짜인 변호사 정도? "국선하고 뭐가 달라요?" 정도의 인식 수준이었다. 지금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본다.

이러한 상황을 뚫고 지역에서 공익사건을 하려면, 공익법률활동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야 하고, 공익변호사는 일반변호사로서의 능력, 송무 전반을 두루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시 지역\*\*의 상황은 인권단체와의 접점만 있을 뿐 \*\*지역변호사회와의 연도 없고, 민변베이스도 부족(민변이 조직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지역), \*\*지역변호사회의 경우 공익활동에 대한 인프라도 전무했다. 네트워크가 형성된 단체들은 여러 소송을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송무

를 배우고 함께 송무할 사람이 전무했다.

현장단체 경험은 있으니까, 일반 변호사로서의 송무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일반 사무실에서 반상근 제안이 들어왔을 때, 1년은 해 보자고 마음먹었다. 반은 일반사무실에서 영리업무를 하고, 반은 공익활동을 수행했다(급여는 150만원 정도였다). 하지만 마음처럼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고, 월급은 반토막이었지만 영리일도 적지 않았다. 일반(영리)사건도 점점 하기 싫어졌고, 공익전업으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문제는 일이 너무 많아졌다. 상근하는 단체에서 대응하는 사건만 들어오지 않았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공익사건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조직의 정체성부터 충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나는 '5년 정도는 상근단체 관련 사건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단체에 들어갔고, 단체에도 \*\*사건을 중심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안에서도 특화된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각종 공익사건을 하게 되었다.

### ○ D 비영리민간단체(변호사 중심 단체)

서울에 있을 때는 내가 주제에 집중해서 잘 할 수 있었다. 지금은 장애도 하고 아동도 한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지역은 정말로 모든 이슈를 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수행하는 소송의 개수가 여러 가지 형사 민사 행정을 다 포함한다면 한 30건 정도 될 것 같다. 국가보안법 사건, 난민 사건, 장애학대피해 사건,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을 위한 피해아동보호명령 신청 등등이 있다. 성매매피해여성의 선불금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있다. 이걸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나씩 이슈파이팅을 같이 할 때에는 각 주제별로 이주노동자가 잡혀가면 성명서를 내고, 대응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너럴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다.

# (3) 극복방안과 지역공익변호사의 전망

지역 공익변호사의 경우는 특히 재정적인 비빌 언덕 이외에도, 실무와 관련한 부분, 비영리단체 운영에 있어 고유한 부분을 '가까이에서' 수시로 문의하고 상의할 수 있는 선배 조직들이 필요하다.

D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변호사 연차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없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안에 대해 풍부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실무 경험이 부족한 부분은 민변과 같은 선배 변호사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거나 활동가들에

게 직접 물어서 진행했다. 실수가 있기도 했고 식은땀 나는 경우도 없지 않았지만,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했고 어차피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에 깨지면서도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핵심은 선배 변호사들, 활동가들에게 끊임 없이 계속 물어보고 찾아보고 엮어내고 조직해냈었다는 것이다.

한편, 지역공익변호사 단체는 원하든 원치 않든 지역의 여러 가지 인권 문제가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인권 이슈에 대한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한다. D의 경험을 들어보자.

#### 문 : 어떻게 보면 플랫폼같이 이슈가 생기면 여기로 다 모일 것 같다.

답: 민변 \*\*지부에 상근변호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대응을 같이 하는 소송 대리인단 역할을 하지, 민변 자체가 이슈를 가지고 같이 운동성을 가지고 애드 보커시를 이렇게 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그냥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야겠구나.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다전문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지역의 법조인들을 엮어 대리인단을 꾸리고 지역 법조의 저변을 확대하면서 D의 저변도 확대해 가야겠다 정도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작년 말에 D 변론 낭독회를 하면서 다른 차원으로 나아갈 필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낭독회 컨셉이 D의 변론을 '활동가가 낭독'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재정사업을 조금 멋있게 해보자는 취지로 기획한 것인데, 당일에 생각보다 많은 활동가분들이 오시고 낭독회 이후의 평가도 굉장히 좋았다. 낭독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지방에 많은 훌륭한 인권단체가 있고 활동가가 있기에 D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동시에 이분들의 활동과 저변을 알리는데 D도 뭔가 함께 해야겠다고 느꼈다. 활동가분들이 변론 낭독회를 보시고 법률대응을 넘어 무언가 하는 것을 재미있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다.

D가 지역에서 물론 젠더분야도 있고 장애분야도 있고 아동분야도 있지만, 이걸 전체를 아우르는 인권 이슈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것을 해보고 싶다는 하는 생각을 그런 상을 갖게 되었다. 단순히 법률지원과 관련해서 법률대응에 관해서만 하는 것을 넘어서, 왜 나면 지역의 인권감수성이 사실 서울과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인권감수성 격차를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D도 문화적으로 무언가 같이 해보는 플랫폼의 역할 같은 것.

처음엔 우리가 교육을 생각했다. 청소년 인권교육, 이런 걸 배워가지고 해봐야겠다 생각했는데, 교육은 안 되겠더라. 일단은 품에 비해서 이게 너무 힘들고, 또 재미있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인권 플랫폼으로서 메시지를 전하는 무언가를 하고 싶은 기획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하는 '오늘, 인권을 그리다'라는 전시를 지역\*\*에 유치해서 전시도 보고 강연도 듣고했었다. 지역\*\* 활동가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유치해서 함께 보았는데 젊은 인권활동가들이 생각보다 많이 왔다. 그걸 보면서 인권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지역NGO센터가 하지 않은 그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왜냐면 같

이 일하는 인권활동가들과 같이 지속적으로 일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 부분에서 D가 해볼 수 있을까 생각까지 요즘에는 갖게 되었다.

또 올해 초에 개인적으로 답답하고 배우고 싶기도 해서 비영리단체 활동가를 위한 연말정산 실무팁 강의를 했다. 우리 단체와 연대하는 세무사를 모셔서 아는 활동가를 몇 명 불러서 강의를 했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많이 오셨다. 그러니까 문의가 오는 거다. 단체를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 그런 단계로 언젠가 나아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매뉴얼들을 만드는데 그것과 비슷하면서 도 다르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면서 직접 겪었던 그 매뉴얼에 나오 지 않는 여러 가지 실무팁에 대해 그냥 가까이에 알고 지내는 활동가들에게 전수하고 알리고 우리도 배우는 그런 것들을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진행하고 싶다.

## 라.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1)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공익변호사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전반적으로 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재정적인 돌파구가 있으면 한다. 약간 큰 액수에서 적어도 몇 개 그룹을 안정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시스템 전체적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가 많다. 마을변호사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다. 무책임한 착취이다. 재정적으로 변협이나 정부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법적인 것도 해결이 되어야 한다. 공익변호사모임이 가지는 모호하고 불법적인 요소와 변호사법위반 여지와 관련해서도 명쾌해졌으면 한다.

미국도 하버드로스쿨을 제외하고는 공익활동이 잘 되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미국의 지방 로스쿨도 임상법학 정도 시작 수준. 하버드는 한 학년 580명 중 약  $30\sim40$ 명이 1년씩 공익펠로우를 한다.

우리의 경우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은 2년 동안 지원 아래 활동하면서 실무 경험도 쌓으면서 2년간 재정적 기반까지 스스로 마련해서 그 이후에 계속 활동하라는 의미인 것 같다. 반면, 하 버드로스쿨의 공익펠로우 기금은 '공익변호사는 실무능력이 부족하니 2년 동안 실무능력을 쌓는 동안 학교가 너의 생활비(급여)를 줄게.'라는 정도의 경력을 쌓는 돈을 지원하는 형태라는 점이 차이점이다. 그 실무교육을 위해 임상법학 차원의 리걸클리닉이 활발하게 움직인다. 클리닉을 50시간만 참여하면 되는데, 평균 600시간, 3,000시간 공익활동 하는 사람도 많다. 미국은 한국보다 변호사시험의 부담이 없는 대신 취업이 중요하니, 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해 리걸클리닉 활동이 중요하고 활발하다. 이러한 모델을 참고해 리걸클리닉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고민하고 있다.

재정은 공익변호사가 속해 있는 단체의 재정적인 안정도 있지만 공익변호사 개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급여 지원, 학자금 대출 면제)도 생각해볼 수 있다. 미국은 주로 로스쿨이 공익 펠로우 기금을 2년간 지원하면서 학교가 바탕이 되어 리걸 클리닉 활동이 활발하게 되고 이 속에서 상근변호사가 성장하는 측면이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 로스쿨 리걸클리닉 제도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상근변호사를 채용하여 유기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은 서울대학교 로스쿨이 시도하고 있는 정도이다. 오히려 로스쿨과 관계없는 법조공익모임 나우와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에서 자립지원금을 2년간 지원하고 있는데, 2년 동안 재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자립'까지 이루어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한편, 해외 사례에서 미국의 공익변호사들의 이탈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과, 미국 로스쿨들의 펠로우지원이 2년인 것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미국의 리걸클리닉 공익펠로우 변호사의경우도 펠로우 기간 2년 이후에도 공익변호사가 지속가능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미국 로스쿨 리걸클리닉과 공익 펠로우 기금도 한계가 있기는 하나, 미국에서는 로스쿨 자체에서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적극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는 점과, 공익변호사를 하는 경우 학비가 탕감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제도가 있음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이미 공익변호사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 공익변호사에 뜻이 있어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충분한 조명이 이루어지 지 못했다. 대체로 급여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그 이유를 추정해볼 수 있기는 하지만, 이후에는 예비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익변호사의 진입 장벽에 대해도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2) 공익변호사단체들이 만들어지던 초창기에는 변호사법 개정이 필요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으나 현재는 변호사법 개정에 대한 것보다는 의외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나 공익법인 운영과 관련한 노하우 공유 등에 대한 욕구가 많았다.

문 : 처음에 설립할 때 뭐가 가장 필요했고 힘들었는가.

답: <u>공익변호사 모델이 많지 않으니까 그것이 힘들었고 정보가 많지 않은 것도 힘들었다.</u> 우리 단체 같은 경우 <u>변호사법상 단체와 법률사무소를 따로 운영해야 하는 것이 문제이</u> 다. C는 후원을 받아서 운영되기 때문에 기부금품법상의 문제가 크다.

공익변호사모임이 너무 다양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같이 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 느슨한 네트워크는 좋으나 성격이 다양한 조직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싶다.

우리 단체는 앞으로도 단체가 가볍게 움직이고 논의의 경직성. 형식성을 지양하고 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비영리단체' 형태로 가져갈 것이다. 그런데 지정기부금단체인 것과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인것의 차이가 매우 불편하다. 어차피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것은 변함이 없는데, '법인'이 아니면 '법인'으로부터 후원을 받아도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역의 작은 주식회사에서 후원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일일이 설명을 하고, 법인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되는 제3의 기관이 대신 기부를 받아우리 단체에게 전달되는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복잡하고 불필요하게 느껴진다. 그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기부금품 등록을 해야 하고 이를 형벌로 처벌 하는 부분은 비영리단체의 자율성을 몹시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단체의 행정적 업무를 가중시킨다. 이 부분도 개선되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

### (3) 변호사법 개정 관련 여러 가지 생각들

#### ○ 이런 생각

공익변호사 시스템 관련해서, '변호사법 굳이 바꿔야 돼?'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어쨌든 변호사법 개정은 우리가 하는 일의 근거를 마련하는 코를 꿰는 정도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걸 발판으로 해서 또 요구를 하면 되는 것. 모든 제도 개선이 그렇더라. 그런 걸 좀더 같이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에 더해 공익변호사기금도 함께... 우리 단체 먹고살기도 힘든데 공익변호사기금을 같이 만들 필요가 있나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마음을 써주면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같이 해야 바뀌는 거지 혼자 해서는 바뀌기가 힘들다.

지금 공익변호사에게 필요한 것. 변호사 내부에서 공익변호사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다. 자업자득인 것 같다. '공익변호사들은 왜 나한테 돈 달라고 해? 공익변호사가 뭐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변호사들이 있다. 그렇지만 공익변호사를 하려고 한 이상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인 것같다. 공익변호사 생태계가 긍정적인 때는 당연히 없었다. 지금도 부정적이지만, 함께 공익변호

사의 영토를 넓혀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게 인식을 바뀌게 하는 것이고, 악순환의 고리를 선순환의 고리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 그걸 바꾸는 건 공익변호사들밖에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변호사들의 인식이 바뀌고 변호사들의 인식이 바뀌면 공익변호사한테도 좋고... 이 런 거다.

공익변호사의 향후 전망. 이건 우리가 하기에 따라 달렸다.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 같다. 지금 여러 모습의 공익변호사가 생겼는데, 각자 어떻게 하냐에 따라 더 퇴보할 수도 있고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다. 누가 그림을 그려주고, 배치를 해주고, 컨트롤타워처럼 그런 건 없다. 현실에서는. 내가 바꿔나가야 하는 문제고, 내가 스스로 밝혀야 전망도 밝아지는 거다.

#### ○ 저런 생각

아주 소소하게는 저도 공익변호사모임에서 논의하는 것을 보고 처음 깨달았는데, 소속된 비영리단체 이름으로 서면을 낼 수 없는 게 안타까웠다. 그건 개선되면 좋겠다. 유엔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를 우리가 만약 비준을 한다면, 국내에서 침해에 대한 구제가 불가능할 때 국제기구에 청원을 할 수 있다. 그 때 변호사 대리도 할 수 있지만 NGO도 대리를 할 수 있다. NGO가대리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 아닌가.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여전히 NGO 소속 변호사로서는 그런 걸 못하지 않은가?

변호사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의견과 긍정적인 의견이 서로 다른 상황이다. 공익변호사 비영리활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 변호사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W. 3. 비영리 공익전업변호사들에게 맞지 않는 변호사법의 문제 및 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에서 후술하겠다.

#### (4)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

#### ■ 공익변호사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

문 : 지금 현재 공익변호사에게 필요한 것은?

답: 자율적, 느슨한, 평등한 네트워크의 핵심은 원심력과 구심력이 유지되는 팽팽한 긴장관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구심력이 조금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익변호사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 최소한 사무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보다 더 창의적이고 열린 가능성을 보는 방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우리 모델은 천 개의 모델 중에 하나의 모델에 불과하다. 모델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그 모델을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지키고 있을 뿐이지 어떠한 모델

이든 생각할 수 있다.

라운드테이블도 매번 같은 걸 한다는 비판도 많았다. 지금은 바뀌었지만 라운드테이블이 그런 비판을 받아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이 아니라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이기 때문에.

#### ■ 공익변호사에게 필요한 자질

주체적으로 주인의식이 있어야 한다. 뭐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군가 막연하게 해주길 바라고 그러면 안 되고, 뭐든지 알면 도움이 된다. 단체 운영, 회계, 동영상 제작 등등. 내가 변호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단체 운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트렌드를 읽는 것.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듣고 싶어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5) 공익변호사 실태조사에서 더 살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

이번 조사는 첫 번째 실태조사인 만큼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설문조사에서 민주노총법률원이 포섭되지 못한 부분을 포함해, 여러 가지 형태로 일하는 공익변호사 모두를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앞으로 공익변호사 실태조사를 또 진행한다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았다.

영역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공익변호사가 100명이라면, 어떤 영역들을 해왔는가에 대한 것들. 이주·난민·장애는 과잉대표됐다는 생각도 있다.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평가될 수도 있겠지만 혹시 다른 평가는 없는지. 추후 이 평가가 사회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데에 임플리케이션은 없었는지.

B의 경우도 A활동과 80% 겹치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점에서는 편하지만, 일반에 대한 설득, 이미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접근성. 이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재난영역과 같이 단체 내부에서도 처음에는 환영받지 못했던 이슈가 있지만, 재난은 확 시간을 투자해야하는 부분이라 그 쪽에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 재난은 하나의 예이다. 세월호 같은 큰 사건을 겪고서야 공익변호사 목록에 없던 리스트가 하나 추가된 것이다. 우리가 평소에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센터들의 리스트만 뽑아보아도 법적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가 보일 수 있다.

노인학대만 해도 처음 결합했을 때 충격이었다. 2년차 때 우리가 노인학대까지 할 수 있겠나, 거절하기 위해 경기도노인학대예방센터에 갔다. 그러나 차마 거절할 수 없어 1주일에 한 번씩만 가기로 했다. 상담내용을 보면 경제적 학대가 많고 상담내용의 50% 이상은 법률문제이다. 그러나 상담원들의 법률교육 시간은 적고 기본매뉴얼도 없었다. 그래서 기본매뉴얼을 만들고, 변협사업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했다.

아동도 더 부딪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동은 탈시설을 이야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러한 화두를 던지는 것에 있어서 제대로 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는 남들이 관심 없는 영역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이 영역이 '뜨면서' 유행을 타는 영역이 되어버렸고, A 차원에서도 다른 영역을 개척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고민이 있을 수 있고 공익변호사 내에서도 그러한 문화가 형성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6) 공익변호사의 전망

공익변호사의 전망과 관련하여 2014년 제1회 공익변호사 한마당에서 논의되었던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유효한 공익변호사 10년에 대한 평가를 여기에도 남겨 보다

지난 10년은 분명 긍정적이다. 앞으로의 고민은 다음과 같다.

하나, 수입모델의 창출,

- 둘, 전문성의 고립화를 경계하면서도 선택과 집중 속에 전문성을 제고해 가는 노력,
- 셋, 공익변호사 모임을 자주 가져 개인의 고립화를 완화할 것.
- 넷, 유연하고 빠르게 다른 인권단체들과 만나 의제를 찾아내고 활성화하는 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것.

(토론: 조영선)

# IV.

# 국내·외 문헌 및 관련 법령 연구

- 1. 국내 문헌 연구 : 과거 기초 연구 및 현황
- 2. 해외 사례 연구
- 3. 비영리 공익전업변호사들에게 맞지 않는 변호사법의 문제 및 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

### 1. 국내 문헌 연구: 과거 기초 연구 및 현황

공익변호사의 현황에 대하여 분석한 최근의 연구로는 염형국, "한국의 공익변호 사 현황과 전망".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2」(2018)25)가 대표적이다. 공익변호사 의 의의, 공익변호사의 현황·유형, 공익변호사 활성화 방안, 공익변호사의 전망 에 대하여 담고 있다. 역사적으로 무변호되거나 저변호되어 왔던 이익들에 대하 여 법적 대표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노력이 공익법이라고 정의하면서. '공익변호 사'의 개념은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일부 공익전담변호사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당 시간을 할애하여 '공익활동'에 관여하는 변호사들로 확대하 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익변호사 의 현황·유형에 대하여 ① 공익전담변호사단체. ② 시민단체를 기반으로 하는 공익전담변호사. ③ 로펌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전담변호사. ④ 노동·환경 등 특 정 공익영역의 변호사단체.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위탁을 기반으로 하 는 공익전담변호사. ⑥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전담변호사. ⑦ 공익변호사 지 워단체로 분류하고. 공익변호사의 활동형태를 ① 공익소송. ② 입법운동. ③ 연 구조사. ④ 공익법 교육·중개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공익변호사의 현황을 주제로 하여 분석한 국내 유일의 연구이며. 2000년대 들어 생겨난 공익 활동을 전담으로 하는 공익변호사단체들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황승흠, "변호사의 공익활동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성신법학 제4호 (2004)에서는 변호사 공익활동의 과제, 공익활동의 네트워크, 공익법단체로서의 시민단체의 위상, 공익활동중개센터의 역할, 변호사단체의 역할 등에 대하여 논하였다. 특히 공익변호사가 상근하면서 공익소송의 제기를 주로 하는 사회운동단체인 공익법단체 혹은 공익법센터(public interest law center)를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sup>26)</sup>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공익변호사를 얼마나 배출해 내느냐가 우리나라 공익법운동의 관건이라고 주장하였다. 더 많은

<sup>25)</sup> 저자가 공익과 인권 제13권(2013) pp.5~47에 게재한 동명의 논문을 수정·보완한 글이다.

<sup>26)</sup> 우리나라 최초의 공익변호사단체인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 2004년도에 만들어졌으므로 논문 게재 당시 공익법단체는 찾아볼 수 없었을 것이다.

수의 공익변호사가 배출되어야만 이들이 조직화된 공익법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고 공익변호사와 공익법단체를 근간으로 공익법운동이 움직여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익변호사의 필요성과 역할을 의미 있게 서술하였다.

김준우, "공익전담변호사의 길",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10권 제1호(2019)27)에서는 공익변호사를 하게 된 이유, 공익활동의 개념의 모호성 또는 다차원성, 공익변호사의 생태계, 공익변호사의 전망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공익변호사모임에서도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공익변호사가 직접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공익변호사 활동 전반에 대하여 생각을 밝힌 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민욱, "지역 기반 공익변호사 Followship을 도입하자", 인권법평론 제9호(2012)에서는 공익변호사를 위한 기금 마련 활동으로서 서울대 로스쿨과 사법연수원의 공익기금, 미국 공익법 Fellowship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지역 거점 법학전문대학원을 주축으로 동문회·재학생·지역 시민단체·지역 로펌 및 변호사 단체·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기금 마련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에서도 공익변호사의 근무지역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 5.4%에 불과한 것으로나와 위 연구의 주장과 같이 공익변호사 활동의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지역기반의 공익변호사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상철, 「법원의 프로보노 활동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7)에서는 미국, 영국, 홍콩, 싱가포르,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외국과 우리나라의 프로보노 활동 현황을 담았는데 우리나라의 프로보노 활동 현황에서 변호사 공익활동의 역사, 변호사 공익활동 규정과 현황,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의 활동 현황, 변호사 공익활동의 최근 동향 및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에 대해 분석했다. 이 연구는 공익변호사 현황에 대하여 앞의 염형국 저(著) 논문의 내용을 다수 이용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 새로운 내용이 담겨 있지

<sup>27)</sup>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의 주최로 2018년 10월 24일 진행된 강연자들의 녹취를 "변호사와 공익활동"이라는 제목으로 옮긴 것 중 김준우 변호사 부분에 해당한다.

않으나 법원의 프로보노 활동 지원 방안을 분석하면서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의 활동 현황'을 별도의 목차로 검토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익법활동에 대한 연구로는 한상희, "변호사의 공익소송", 「한국의 공익인권소 송 2」(2018)에서 변호사의 공익활동, 공익인권소송, 공익소송의 한계와 그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익법소송이 사회적인 소수자. 약자들이 법적 으로 충분히 보호를 받지 못하게끔 하거나 혹은 커다란 공익상의 필요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그 위험부담 때문에 섣불리 법적 문제로 제시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이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새로운 판결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의 공익활 동이나 인권활동들이 종래의 개별적 수준에서 점차 조직적·체계적 수준으로 발 전하고 그 활동의 방식도 다양화되는 한편. 공익인권소송이나 공익활동을 풀타임 으로 전담하는 변호사와 변호사단체도 등장하게 된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공익전 담변호사의 조직화가 공익인권사건의 범위와 종류를 급진적으로 확장하였다고 분 석하였다. 저자는 공익법활동 혹은 공익소송을 통한 사회변화라는 근본적인 목표 는 법규율의 한 축을 차지하는 시민의 주체화와 그들의 사법적 참여가 보장되지 아니하고는 결코 달성될 수 없으며. 사회 · 경제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삼아 변호 사가 이들을 원조하는 체제를 넘어서서 그들이 능동적으로 법주체로 나설 수 있 도록 역량을 강화하며 그들이 실질적인 평등과 실체적 정의를 향유할 수 있도록 법제와 사법과정을 개선해나가는 운동을 변호사들이 그들과 함께 주도해 나가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공익법활동을 통한 사회변화라는 근본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변호사가 비변호사와 협업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황필규, "공익법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소고",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5권 제1호(2014)에서는 공익법운동의 의의, 헌법상 기본권인 사법접근권의 보장, 공익법운동 주체로서의 법조인 양성, 전업적 공익변호사의 활성화에 대하여 살폈다. 이연구에서는 전업적 공익변호사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법무부가 제안한 법무법인(공익)제도가 신생 공익변호사단체 등이 이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양한형태를 수용하는 형식을 취할 필요가 있고, 법률구조단체의 요건을 완화, 실질화

할 필요가 있으며,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던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공익변호사 멘토링, 특강 등을 체계화, 확대하여 공익변호사에 관한 정보제공 및 멘토링을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학비지원, 공익전담변호사 임금지원제도(펠로우쉽), 변호사협회의 공익법률기금 조성 등 재정적인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안들이 입안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공익변호사 활성화의 구체적인 대안을 적극 제시하였다.

또한 황필규, "한국 공익법운동의 성과와 도전 - 한국 공익법운동의 현주소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인권법평론 제4호(2009)에서는 공익법운동의 '운동성'에 주목하여 소수자의 인권 보호 및 민주화의 권력 감시라는 협의의 틀에서 법률가가주도하는 한국 공익법운동의 현주소와 성과 및 과제를 분석하고, 공익법운동의하나의 모델로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하 '공감')의 지향, 조직, 활동영역, 지원기준 및 비용부담, 활동내용과 방식, 재정과 홍보, 고민에 대하여 밝혔다. 이번실태조사의 목표가 첫 공익변호사단체인 공감이 설립된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공익변호사에 관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공익변호사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지향, 조직, 활동영역, 지원기준 및 비용부담, 활동내용과 방식, 재정과 홍보, 고민 등 공감의 전 영역에 대하여 분석한 위 연구는 큰 의미가 있다.

그 외 황승흠, "한국 공익법운동의 개념요소와 전망",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 5권 제1호(2014)에서는 공익법운동의 개념요소와 발전과정, 공익법운동의 제도와 문제점, 변호사 공익활동의 전망을 담았으며, 홍일표,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운동과 법의 동원: 운동 레퍼토리로서 '소송'의 가능성과 한계" 시민사회와 NGO 6권 2호(2008)에서는 공익소송을 주도해온 민변, 참여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소송을 통한 사회운동을 소개하고 있어 참고할만하다.

세미나 자료집으로는 (1) 「공익법운동의 성과와 도전 세미나」, 공익변호사그룹 공 감 5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2009), (2) 「공익법운동의 현황과 과제」, 재단법인 동천 5주년 공익세미나 자료집(2014), (3) 로펌 공익활동 활성화 세미나 자료집, 로펌공익네트워크(2016), (4) 제3회 공익변호사 한마당 자료집(2019)이 있다.

- (1) 자료집의 토론문에서는 ①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토론"에서 민변의 역사, 위원회 활동 소개, 민변 Task Force 활동 소개, 변호인단 활동, 촛불집회 관련 법률지원 활동 등과 함께 민변 공익소소송위원회와 공익법운동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어 2009년까지 민변의 공익법활동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공익변호사 김기덕, "공익법운동 논의에 관해"에서는 공익법운동의 주체, 재정, 사업에 대하여 금속노조 법률원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참고할만하다.
- (2) 자료집 가운데 양동수. "로펌 프로보노 그리고. 새로운 공익법운동 상상하기" 에는 로펌 프로보노와 공익법운동 생태계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 로펌의 사회 공헌 역할을 담당했던 재단법인 동천(이하 '동천')이 스스로 공익법의 주체로 각 성하게 된 역사와 활동의 변천사를 소개하고. 국내의 로펌 프로보노와 공익법운 동의 관계, 새로우 공익법은동에의 전망을 분석하였다. 로펌이 설립한 공익단체 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현재 소속된 공익단체 형태 중 27%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의 로펌 기반 공익변호사단체인 동천의 역사와 활동의 변천사에 대한 소개는 의미가 있다. 한편 이 자료집에서는 참고자료 2 "〈공익법운동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유형을 나누어 [유형1] 예비법조인, [유형2] 현직에서 공익법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 활동가 등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공익법운동의 주요활동 주체. 공익법운동의 개념. 공익법과 관련한 활동의 인지도 및 접근성. 공익법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공익변호사 와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 공익변호사의 요건 내지 자격. 공익변호사 활동에 대 한 제약 및 개선사항, 공익변호사의 양성제도에 대한 인식과 기대ㆍ전망, 공익활 동의 유형에 대한 전망. 로펌프로보노 활동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 다. '공익변호사'에 초점을 맞춘 이번 실태조사와 달리 '공익법운동'을 주제로 하 여 항목의 차이는 있지만 기존 연구 중 공익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유일한 설문조 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3) 자료집의 토론문 중 강정은, "공익변호사의 관점에서 본 로펌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에서는 공익변호사의 개념과 전체 현황을 간략하게 제시하였는데 특히최근 활동인원과 영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로펌이 설립한 공익변호사단체의 공익변호사를 중심으로 공익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았고, 염형국, "로펌 공익

활동의 현황과 과제 토론"에서는 로펌 공익활동의 과제로 전문성 강화와 공익변 호사 활성화, 로펌 공익활동 네트워크 강화를 제시하였다.

(4) 자료집 중 김준우, "공익변호사모임의 쟁점과 과제"에서는 공익변호사의 출현 및 확대과정, 공익변호사 및 공익변호사 모임의 존재지반과 특질, 공익변호사모임의 역할에 대해 살폈다. 공익변호사모임 내부 세미나 자료집이지만 공익변호사및 공익변호사 모임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으며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보고서중 공익변호사의 정의 및 공익변호사 존재지반, 공익변호사 활동의 특수성은 위발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그 밖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법지원센터설립준비위원회 연구보고서(2012)에서는 국내법률구조현황연구소위원회의 연구 결과로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공익법률 기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법센터 어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희 망을 만드는 법, 난민인권센터, 녹색법률센터, 재단법인 동천 등의 단체 설립 현 황 및 단체의 활동내용, 단체의 구성 및 활동을 위한 재원, 단체의 법률관련 활 동 내용, 법률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방식 및 과제, 법률구조제도의 활용과 만족도 등에 대한 질문과 단체의 응답을 담아 참고할만하다.

NPO를 설립준비 중이거나 운영하고 있는 활동가 및 이를 지원하는 변호사들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매뉴얼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NPO 법률지원 매뉴얼」(2019)이 있는데, 이 매뉴얼에서는 NPO의 설립, 운영, 회계와 세무, 모금, 노동관계, 지적재산권, 개인정보보호, 기타 정보공개청구 및 부정청탁금지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실무적인 법률지식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공익변호사 또는 공익법운동에 대한 선행연구 및 자료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중에서 아직까지 공익변호사에 대한 양적·질적실태조사는 전무하여 공익변호사 실태조사를 기획, 시행하게 되었다.

# 2. 해외 사례 연구

#### 가. 미국

### (1) 변호사의 동업에 관한 규제

#### 1)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의 동업 및 보수 분배 금지

변호사와 변호사 아닌 다른 직역의 전문가가 동업(협업)하는 것 또는 그런 동업 조직체를 다직역 실무(Multidisciplinary Practice 이하 'MDP')라고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변호사 이외의 다른 관련 법률전문가를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MDP 논의의 중심은 변호사와 회계사 간의 동업을 허용할 것인가에 있다. 28)

미국 변호사협회 윤리장전(ABA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sup>29)</sup>은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와 보수를 분배하거나, 변호사 아닌 자와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Rule 5.4.).<sup>30)</sup> 이와 같은 동업 금지 규정은 1729년 English Act of Parliament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며, 1925년 미국 변호사협회가 변호사가 비영리단체들과 보수를 분배하는 것 역시 윤리적으로 금지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sup>31)</sup> 1960년대 들어 연방 대법원에서 비영리단체는 수정헌법 제1조에 기하여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등의 권리가 있다고 판시<sup>32)</sup>하였

- 28) 이전오, "변호사와 비변호사간의 협업방안 연구" (2012), 5.
- 29) https://www.americanbar.org/groups/professional\_responsibility/publications/model\_rules\_of\_professional\_conduct\_model\_rules\_of\_professional\_conduct\_table\_of\_contents/
- 30) RULE 5.4. PROFESSIONAL INDEPENDENCE OF A LAWYER
  - (a) A lawyer or law firm shall not share legal fees with a nonlawyer
  - (b) <u>A lawyer shall not form a partnership with a nonlawyer</u> if any of the activities of the partnership consist of the practice of law
  - (c) A lawyer shall not permit a person who recommends, employs, or pays the lawyer to render legal services for another to direct or regulate the lawyer's professional judgment in rendering such legal services.
  - (d) A lawyer shall not practice with or in the form of a professional corporation or association authorized to practice law for profit
- 31) Roy D. Simon Jr., Fee Sharing Between Lawyers and Public Interest Groups, 98 Yale L.J. 1069 (1989)

으나, 변호사와 공익단체 간 보수 분배를 허용하지는 않았다.

#### 2) 비변호사와의 보수 분배를 허용하는 일부 주의 규정

일반적으로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의 동업이나 보수 분배는 금지되어 있지만, 메 사추세츠 주, 네바다 주, 노스캐롤라이나 주 등 일부 주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보수 분배를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변호사와 '비영리단 체' 간의 보수 분배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메사추세츠 주의 변호사 윤리장전(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은 미국 변호사협회 윤리장전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의 보수 분배를 금지한다. 다만 예외를 두고 있는데, ① 검증된 법률 보조 단체(Qualified legal assistance organization)가 해당 사건을 변호사에게 소개한 경우, ② 의뢰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③ 승소를 통해 상대방이 지급하게 되는 변호사비용이나 조정을 통해 지급되는 변호사 비용을 ④ 위 단체와 분배할 수 있다[Rule 5.4: Professional independence of a lawyer(a)(4)]. 33) 여기서 검증된법률보조 단체란 이러한 법률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이윤을 취하지 않는 단체를 말하며, 해당 단체들은 중요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보수 분배

32) 436 U.S. 412 (1978) (변호사는 민권단체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United Transp. Union v. State Bar, 401 U.S. 576 (1971) (노동조합은 특정한 변호사를 그 조합 원에게 추천하고 수임료를 제한할 수 있다.)

United Mine Workers v. Illinois State Bar Ass'n, 389 U.S. 217 (1967) (노동조합이 조합원 개인을 위해 일할 변호사를 고용할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가진다는 사례)

Brotherhood of R.R.Trainmen v. Virginia ex rel. Virginia State Bar, 377 U.S. 1 (1964) (노동조합이 부상을 입은 조합원을 위해 특정한 변호사를 추천할 권리를 가진다)

NAACP v. Button, 371 U.S. 415 (1963) (민권단체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대신하여 학교의 인종 차별철폐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특정 변호사를 추천하고 비용을 지불할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가진다)

- 33) RULE 5,4 PROFESSIONAL INDEPENDENCE OF A LAWYER
  - (a) A lawyer or law firm shall not share legal fees with a nonlawyer, except that:
  - (4) a lawyer or law firm may agree to share a statutory or tribunal approved fee award, or a settlement in a matter eligible for such an award, with a qualified legal assistance organization that referred the matter to the lawyer or law firm, if the client consents, after being informed that a division of fees will be made, to the sharing of the fees and the total fee is reasonable.

에 대한 예외가 허용되는 것이라고 한다. 34)

한편, 네바다 주의 변호사 윤리장전에서도 변호사가 자신을 고용하거나 추천한 비영리단체와 승소 비용을 분배하는 것을 변호사 보수 분배 금지 규정의 예외로 두고 있다[Rule 5.4. Professional Independence of a Lawyer (a) (4)].<sup>35)</sup> 네바다 주는 이와 같은 규정을 메사추세츠 주만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외 규정을 둔 취지는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노스캐롤라이나 주 역시 네바다 주와 거의 같은 문구의 규정을 두고 있다[Rule 5.4 Professional Independence of a Lawyer. (a)(5)].<sup>36)</sup>

미국의 경우 오랜 민권운동과 공익변호사 활동의 역사를 바탕으로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수익으로 단체와 분배하는 것에 관하여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그 결과 몇몇 주에서는 위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이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 이는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제3의 기관에서 법률구조 명목으로 지급하는 소액의 변호사비용을 단체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조차 매우 제한적인 한국에 던지는 시사점이 크다.

- 34) Rule 5.4(a)(4) explicitly permits a lawyer, with the client's consent, to share certain fees with a qualified legal assistance organization that has referred the matter to the lawyer. The financial needs of these organizations, which serve important public ends, justify a limited exception to the prohibition against fee—sharing with nonlawyers.
  - (https://www.mass.gov/supreme-judicial-court-rules/rules-of-professional-conduct-rule-54-professional-independence-of-a#-d-참조)
- 35) Rule 5.4. Professional Independence of a Lawyer.
  - (a) A lawyer or law firm shall not share legal fees with a nonlawyer, except that:
  - (4) A lawyer may share court—awarded legal fees with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employed, retained or recommended employment of the lawyer in the matter; and
- 36) Rule 5.4. Professional Independence of a Lawyer.
  - (a) A lawyer or law firm shall not share legal fees with a nonlawyer, except that:
  - (5) A lawyer may share court—awarded legal fees with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employed, retained or recommended employment of the lawyer in the matter.

### (2) 프로보노 및 공익 법률활동 지원 정책

1) 공익 로펌(Public Interest Law Firm)에 대한 세금 면제 제도

미국 국세청은 <u>국세법(the Internal Revenue Code)에 근거</u>하여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하여 연방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고, 기부자들에게도 기부액만큼 세금을 공제한다[Section 501(c)(3)].<sup>37)</sup> 대신 이러한 단체에 해당하려면 ① 오로지 공익만을 목적으로 활동해야 하고, ② 정당한 용역의 대가 외에는 순수익 또는 자산을 지분을 가진 개인에게 분배해서는 안되고, ③ 입법에 영향을 주거나, 선거에 참여하는 등의 정치활동에 제한이 있다.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은 공익 로펌을 국세법 Section 501(c)(3) 이 정한 세금을 면제받는 단체로 인식하고 있다. 다만 국세청에 의해 공익 로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로펌과는 달리, 중요한 공익 이슈를 소송을 통해 다루어야 한다.<sup>38)</sup> 미국 국세청이 공익 로펌을 공익단체로 인식한 초창기에는 법원이나 정부로부터 받는 금원이나,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부담하는 비용 외에 의뢰인에게서 비용을 받는 것을 금지했었다.

- 37) Kathryn A, Sabbeth., What's Money Got to Do With It?: Public Interest Lawyering and Profit,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School of Law, 454-456, (2014);
  - 26 U.S. Code § 501. Exemption from tax on corporations, certain trusts, etc.
  - (a) Exemption from taxation
  - An organization described in subsection (c) or (d) or section 401(a) shall be exempt from taxation under this subtitle unless such exemption is denied under section 502 or 503.
  - (c) List of exempt organizations The following organizations are referred to in subsection (a):
  - (3) Corporations, and any community chest, fund, or foundation, organized and operated exclusively for religious, charitable, scientific, testing for public safety, literary, or educational purposes, or to foster national or international amateur sports competition (but only if no part of its activities involve the provision of athletic facilities or equipment), or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or animals, no part of the net earnings of which inures to the benefit of any private shareholder or individual, no substantial part of the activities of which is carrying on propaganda, or otherwise attempting, to influence legislation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subsection (h)), and which does not participate in, or intervene in (including the publishing or distributing of statements), any political campaign on behalf of (or in opposition to) any candidate for public office.
- 38) 나아가 선거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Not participate in or intervene in any political campaign on behalf of (or in opposition to) any candidate for public office).

그러나 현재는 ① 의뢰인에게 받은 변호사 비용이 공익 로펌 운영비의 50퍼센트를 넘지 않을 것 ② 의뢰인에게서 수수하는 변호사 비용이 실제 업무 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③ 사건을 수임할 때 변호사 수임료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것 ④ 영리로펌을 보유하지 않을 것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의뢰인에게서 직접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2) 비영리 차등제 로펌(Nonprofit Sliding Scale Law Firm)의 가능성

위스콘신 로스쿨의 Mitch 교수는 비영리 차등제 로펌이 일반적인 비영리단체나 공익 로펌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39)</sup> 비영리 차등제 로펌은 의뢰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수임료를 받는 형태를 말한다. 이러 한 형태의 조직은 공익 로펌이 아닌 "법률구조단체(Legal Aid Organization)"로 등록하여 여전히 국세법에 따른 소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공익 로펌 이 받는 수임료 등의 제한을 받지 않으려는 것이다.

Mitch 교수는 비영리 차등제 로펌을 운영함으로써 전통적인 비영리단체나 공익로펌이 지원해 오던 계층을 벗어나, 빈곤 기준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법률 지원으로부터는 소외되어 있는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차등제 로펌 역시 앞으로 한국의 공익변호사 저변이 확대되어 나가는데 모델이될 수 있다. 한국의 공익변호사/단체들은 대부분 비영리의 형태를 주로 취하면서, 장애, 난민, 아동, 이주민, 성소수자 등의 소수자를 위한 제도 개선 영역에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고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소득층이 겪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재산, 금융등)를 위해서 기존의 비영리단체나 법무법인이 아닌 차등제 로펌과 같은 새로운모델의 제안이 필요하다.

<sup>39)</sup> TIPPING THE SCALES OF JUSTICE: THE ROLE OF THE NONPROFIT SLIDING SCALE LAW FIRM IN THE DELIVERY OF LEGAL SERVICES, Mitch. University of Wisconsin, School of Law.

#### 3) 프로보노 활동 권장

미국 변호사협회 윤리장전은 프로보노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Rule 6.1. Voluntary Pro Bono Publico Services). 40) 이에 따르면 모든 변호사는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 제공을 할 책임이 있으며, 연간 최소 50시간 이상의 프로보노 활동을 하도록 권장된다. 위와 같은 규정을 미국 50개주 모든 변호사협회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각 주 대법원 규칙에서 프로보노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미국 변호사협회와 미국 로스쿨협회가 협력하여 로스쿨 학생들에게 프로보노와 공익 활동을 장려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3) 단체 운영 사례

#### 1) 개관

미국에서 공익법운동이 시작된 것은 1960~70년대이다. 1975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전국 86개 공익법 단체에 평균적으로 7명의 변호사가 상근하였고, 전체공익변호사의 숫자는 3,236명으로 전체 변호사의 0.7% 정도였다고 한다. 2004년 연구에서는 공익변호사의 숫자를 13,715명으로 집계하고 있고, 이는 전체 변호사의 1.3% 비중을 차지한다.<sup>41)</sup>

미국도 공익변호사의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한국의 상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2018. 4. 기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숫자는 24.522명(서울 18.075

40) Rule 6.1: Voluntary Pro Bono Publico Service

Every lawyer has a professional responsibility to provide legal services to those unable to pay. A lawyer should aspire to render at least (50) hours of pro bono publico legal services per year.

(....)

In addition, a lawyer should voluntarily contribute financial support to organizations that provide legal services to persons of limited means.

<sup>41)</sup> Scott L, Cummings, The Future of Public Interest Law, University of Arkansas at Little Rock Law Review Volume 33 Issue 4 Article 2, 2011, 356-357.

명/지방 6,447명)이며 그 중 공익전업변호사의 숫자를 약 110명(퇴직을 제외함) 가량으로 추정되므로, 공익변호사는 전체 변호사의 0.4%에 불과하다. 또한 서울 경기 외 지역 공익변호사의 비율은 민주노총법률원 지부의 변호사를 합산하더라도 0.05%에 불과해, 서울경기와 그 외 지역 공익변호사 숫자의 심각한 편차를 가늠해볼 수 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Deborah L. Rhode 교수는 2007년 공익법활동을 하는 50여개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42) 해당 단체들의 한 해 예산의 중간값은 400만 달러(최저 40만, 최고 1억 3백만 달러), 직원 수의 중간 값은 30명(최저 5명, 최고 425명)이었다. 주된 업무 영역은 환경법(6), 재생산권, 인권,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시민권 및 자유권(20), 빈곤(10), 이주민의 권리(7), 여성의 권리(6), 자유시장 및 재산권(5), 아시아계 미국인(4), 히스패닉(4) 아프리카계 미국인(4), 비행청소년(4), 교육(3), 형사사법 및 사형(2), LGBT(2), 신체 및 정신 장애(2), 기술(2), 소비자(1), 노인(1) 등으로 매우 다양했다.

50여 개 단체 내 변호사를 비롯한 직원의 숫자는 30여 년 간 눈에 띄는 수치로 증가하였다. 1975년에는 10명 이하의 소수의 변호사가 상근하는 단체가 85%로 대부분이었고, 20명 이상의 변호사가 상근하는 단체는 5% 미만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2007년에는 10명 이하의 변호사가 상근하는 단체는 40%, 11-20명의 변호사가 상근하는 단체가 40%였으며, 91-100명의 변호사가 상근하는 단체도 있었다. 같은 기간 동안 해당 단체에서 비변호사 상근직원도 급증하였다. 1975년에는 비변호사 상근직원이 아예 없는 단체도 22%나 되었는데, 2007년에 그러한 곳은 한 곳 뿐이었다. 150명 이상의 직원이 상근하는 곳도 10%에 달했다. 이는 재정의 확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데, 1975년에는 28%의 단체의 연간예산이 15만 달러였는데, 2007년에는 1백만 달러 이하의 예산을 가진 단체는 8% 뿐이고, 절반 이상의 단체에서 연간 예산이 1백만 달러~5백만 달러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sup>42)</sup> Deborah L, Rhode, Public Interest Law: The Movement at Midlife, Stanford Law Review Volume 60, Issue 6.

[표 82] 변호사와 비변호사 직원의 수 변화

상근 변호사 수	해당 단체의 비율		상근 비변호사 수	해당 단체	체의 비율	
	1975	2007		1975	2007	
0	_	_	0	22%	2%	
1–2	31%	_	1–2	33%	4%	
3–5	31%	14%	3–5	28%	6%	
6–9	20%	22%	6–9	7%	16%	
10	3%	4%	10	_	4%	
11-20	11%	40%	11-20	7%	22%	
21–30	1%	10%	21–30	_	16%	
31-40	4%	2%	31-40	1%	6%	
41-50	_	2%	41-50	_	4%	
51-60	_	2%	51-60	_	_	
61-70	_	_	61-70	_	_	
71–80	_	2%	71–80	_	4%	
81–90	_	_	81–90	_	_	
91-100	_	2%	91-100	_	2%	
101-110	_	_	101-110	_	_	
			111-120	1%	_	
			121-150	_	4%	
			150-	_	10%	
	100%	100%		100%	100%	
총 인원	478(명)	855(명)	총 인원	384(명)	2747(명)	

전통적으로 공익법 단체에서 추구하는 목표달성수단은 소송이다. 그러나 2000년 대에 들어서는 소송 이외에도 다양한 수단도 활용하고 있다. 다음 표는 조사참여 단체들이 다양한 수단을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활용하고 있는지 30년 전과의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특히 소송의 비중이 줄어들고 교육 및 홍보가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표 83] 공익법활동 단체의 업무 비중	· 변화
------------------------	------

업무의 비중	소송		입법 운동 등 제도 개선		기타 연구, 교육 및 홍보		정치적 <del>운동</del>	
	1975	2007	1975	2007	1975	2007	1975	2007
0%	_	7%	25%	15%	14%	2%	_	78%
1-19%	_	17%	54%	49%	63%	43%	_	15%
20-39%	14%	9%	15%	28%	22%	36%	_	6%
40-59%	35%	26%	4%	6%	1	15%	_	_
60-79%	25%	23%	1%	2%	_	_	_	_
80-99%	24%	21%	_	_	_	_	_	_
100%	3%	_	_	_	_	4%	_	_

위 단체들의 주 수입원은 재단과 개인의 기부이다. 거의 모든 단체가 재단의 기부를 받고 있고, 대부분의 단체가 개인의 기부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98%의 단체가 재단에서 기부를 받고 있고, 비중으로 보더라도 40% 이상 재단의 기금에 의지하는 단체가 절반에 이른다(52%). 개인기부도 매우 활발하여 절반에 가까운 단체(47%)가 개인기부금에 40% 이상 의지하고 있다. 변호사비용을 수입으로 하는 단체는 절반(49%)이지만, 실제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8% 정도이고 변호사비용이 수입의 20%가 넘는 단체는 14%에 불과했다.

[표 84] 재정의 출처

수입의 비중	변호사비용	기업	행사	재단	정부	개인	회비	Sales
0%	51%	45%	69%	2%	81%	15%	82%	84%
1-19%	34%	24%	10%	20%	3%	28%	5%	16%
20-39%	7%	12%	5%	26%	8%	11%	5%	_
40-59%	5%	14%	15%	32%	8%	34%	7%	_
60-79%	2%	5%	_	10%	_	11%	_	_
80-99%	_	_	_	6%	_	2%	_	_
100%	_	_	_	4%	_	_	_	_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해당 단체에 상근하는 변호사들의 연봉의 중간값은 46,000달러(최저 30,000달러, 최고 80,000달러)로, 일반 영리 변호사 연봉의 중간값인 40,000달러보다 오히려 높았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조사 대상 단체들이 미국 내에서 저명한 단체

들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 비해 펀딩이 잘 된다는 점을 비교적 높은 연봉의 원 인으로 꼽았다. 조사되지 않은 다른 단체를 포함하면, 공익변호사의 연봉은 영리 변호사의 연봉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대부분의 단체는 변호사를 고용하는데 있어서 낮은 급여가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단체 상근자들이 경제적인 부분을 희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직군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채용에는 그다지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지속가능성이다. 급여 인상폭이 낮기 때문에 연차가 오래될수록 이탈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특히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공익변호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역사가 짧은 한국의 공익변호사 단체는 젊은 변호사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미국의 낮은 연차 변호사들이 진입 시에 급여를 중요하게여기지 않는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57] 공익전업변호사 가장 힘든점 참조). 그러나 시간이 지나 한국에도 오랜 연차를 쌓은 변호사가 증가한다면이탈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공익변호사 단체의 지속가능성과 관계가 깊다([표 73] 단체에서 계속 근무 희망 여부 참조).

# 2) Earth Justice<sup>43)</sup>

Earth justice는 비영리 환경 법률단체(nonprofit environmental law organization) 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44) 따로 수임료는 받지 않고 기부자들과 재단에서 기부를 받고 있다. 2018년의 경우 전체수입은 9000만 달러(1050억 원)로 개인기부금이 74%, 재단기부금이 16% 정도 차지한다. 전체 지출은 7000만 달러(약 820억 원)로 그중 79%가 사업비이고, 그중 63% 가량인 3575만 달러(약 420억 원)가 송무에 사용되었다. 45)

<sup>43)</sup> https://earthjustice.org/

<sup>44)</sup> https://pacificlegal.org/

As the nation's largest nonprofit environmental law organization, we leverage our expertise and commitment to fight for justice and advance the promise of a healthy world for all. We represent every one of our clients free of charge,

<sup>45)</sup> Earth justice "2018 Annual Report" (2019), 21.

### 3) Pacific Legal Foundation<sup>46)</sup>

Pacific legal foundation은 대정부소송을 주로 하는 비영리 법률단체(non profit legal organization)이다. 등록된 비영리단체로 기부를 받고 있지만, 대정부활동을 주로 하는 단체 특성상 정부의 지원은 받지 않고 있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반기 총 수입은 1225만 달러(약 144억 원)이고 그 중 1096만 달러(약 128억 원)가 기부금이었다. 47)

#### 나. 영국

### (1)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동업

영국에는 사무변호사(Solicitor)와 법정변호사(Barrister)가 나뉘어져 있다. 48) 그 외에도 부동산, 특허, 상표 등에서 법률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2007년 이전 영국의 법정변호사는 4~10명 정도 모인 Chambers라는 형태로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법정변호사는 다른 법정변호사, 사무변호사, 기타 법률전문가 및 비법률전문가와 동업할 수는 없었고, 일부 법정변호사만 사무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에서 고용변호사로 근무할 수 있었다. 49) 또한, 고객은 사무변호사를 통해서만 법정변호사와 접촉할 수 있었다. 50) 법정변호사는 오직 비영리분야에서 사무변호

<sup>46)</sup> https://pacificlegal.org/

<sup>47)</sup> Pacific legal foundation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with independent auditor's report—six month period ended June 30, 2018"

<sup>48)</sup> 뒤에서 살필 호주와 뉴질랜드를 비롯한 연영방 국가들도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다만 영국 외의 다른 연방국가에서는 사무변호사와 법정변호사를 겸업하게 하는 등 느슨한 형태로 분업되어 있다.

<sup>49)</sup> sir. David Clementi, "Review of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Legal Services in England and Wales", (2014, 12, 15, 이하 "클레멘티 보고서") Chapter F Para 2,

<sup>(</sup>a) rules that prohibit partnership between barristers and between barristers and other professionals (both lawyers and non-lawyers); employed barristers may work for firms of solicitors, but may not without re-qualification become partners.

<sup>50)</sup> 클레멘티보고서 Chapter F, Para 3. "Although not the subject of this Review, it should be noted that selfemployed barristers cannot in general deal direct with the public, but must do so through instructing solicitors."

사와 함께 고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접 고객과 접촉할 수 있었다.<sup>51)</sup> 한 편 사무변호사는 다른 법률전문가 또는 비법률전문가와 동업할 수 없고, 비변호사에게 고용되는 경우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소수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서비스제공이 가능했다.<sup>52)</sup> 정리하면 2007년까지 영국에서는 법정변호사와사무변호사 사이의 동업, 변호사와 법률전문가 사이의 동업, 법률가와 비법률전문가 사이의 동업이 모두 원칙상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2007년 법률서비스법(Legal Service Act 2007)이 제정되고, 이 법이 2008년 시행되면서,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 사이의 동업뿐 아니라 다른 법률 전문가나 비법률전문가를 포함한 비변호사와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게 되었다. 즉, 기존의 로펌, 개업 사무변호사, 개업 법정변호사 외에 MDP, 유한책임 파트너십, 무한책임회사, 폐쇄회사, 공개회사, 회원조직체 등도 허가를 받아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조직을 영국에서는 대안적 영업 형태(Alternative Business Structures, 이하 'ABS')라고 한다 53)

# (2) 프로보노 및 공익 법률활동 관련 법령

영국 법률 지원 제도의 핵심은 법률구조(Legal Aid) 제도이다. 영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소득 수준이 낮거나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법률구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정부에

- 51) 클레멘티보고서 Chapter F, Para 5. "A key exception to the practice rules arises in the not-for-profit sector where, subject to certain conditions, solicitors (and those whom they supervise), barristers and other legally qualified (and unqualified) personnel employed by a Law Centre may work together and are permitted to deal directly with members of the public."
- 52) 클레멘티보고서 Chapter F, Para3
  - (b) rules that prohibit solicitors from entering partnership with members of other professions (both lawyers and non-lawyers); and
  - (c) rules that prevent, with a small number of exceptions, solicitors in the employment of businesses or organisations not owned by solicitors (e.g., banks or insurance companies) from providing services to third parties."
- 53) 이전오, 각주 28, 34-36.

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전액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사법접근성법(Access to Justice Act 1999)<sup>54)</sup> 및 그 부속법령은 법률구조 제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령이다. 이 법 제I장 법률서비스 위원회(Legal Services Commission)는 법률구조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률서비스 위원회가 법률구조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법률구조법(the Legal Aid, Sentencing and Punishment of Offenders Act 2012)<sup>55)</sup>의 제정으로, 법무부의 규제를 받는 법률구조기관(Legal Aid Agency, 이하 "LAA")이 법률구조 제도를 관장하고 있다. 법률구조법의 제정에 따라 이전과 달리 지원 대상이나 범위가 상당부분 제한되었다. 이 법의 Schedule 1에 열거된 분야,<sup>56)</sup> 즉 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건에 한하여만 법률구조가가능하다.

현재 법률구조 제도는 LAA 등의 기관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형사사 건과 상당수의 민사사건에 적용된다.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구조의 경우 일반적으

- 54)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9/22/contents
- 55)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2/10/contents/enacted
- 56) 1, Care, supervision and protection of children; 2, Special educational needs; 3, Abuse of child or vulnerable adult.; 4. Working with children and vulnerable adults.; 5. Mental health and mental capacity.; 6. Community care.; 7. Facilities for disabled persons.; 8. Appeals relating to welfare benefits,; 9,Inherent jurisdiction of High Court in relation to children and vulnerable adults,; 10,Unlawful removal of children.; 11,Family homes and domestic violence.; 12.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nd family matters,; 13, Protection of children and family matters.; 14. Mediation in family disputes.; 15. Children who are parties to family proceedings.; 16. Forced marriage; 17.EU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concerning children; 18.EU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concerning maintenance,; 19, Judicial review.; 20, Habeas corpus.; 21. Abuse of position or powers by public authority,; 22. Breach of Convention rights by public authority.; 23, Clinical negligence and severely disabled infants.; 24, Special Immigration Appeals Commission.; 25, Immigration: detention.; 26, Immigration: temporary admission.; 27, Immigration: residence etc restrictions,; 28, Immigration: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nd indefinite leave to remain.; 29.Immigration: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nd residence cards.; 30.Immigration: rights to enter and remain; 31, Immigration: accommodation for asylum-seekers etc.; 32, Victims of trafficking in human beings.; 33,Loss of home.; 34,Homelessness.; 35,Risk to health or safety in rented home,; 36,Anti-social behaviour.; 37,Protection from harassment.; 38,Gang -related violence.; 39, Sexual offences.; 40, Proceeds of crime.; 41, Inquests.; 42, Environmental pollution,; 43.Equality.; 44.Cross-border disputes.; 45.Terrorism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measures etc.; 46.Connected matters

로 LAA와 계약을 맺은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의해 많이 이루어지고, LAA에 의해 국선변호사(Public Defender)로 고용된 일부 변호사들도 제한적으로 법률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구조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의해 많이 이루어지지만 법률센터(Law Centres)나 비영리단체에 종사하는 변호사들에 의해서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영국은 중개기관(Clearinghouse)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중개기관은 프로보노 활동에 참여하여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또는 개인 변호사를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에 연결시켜주는 비영리단체이다

### (3) 단체 운영 사례

1) Anti Trafficking and Labour Exploitation Unit (ATLEU)<sup>57)</sup>

ATLEU는 인신매매, 노동착취 등의 피해자를 조력하는 단체이다. 법률구조실무그룹(Legal Aid Practitioner Group)에 속한 단체로, 자선단체(Charity) 및 회사(Company)로 등록되어 있기도 하다. 이 단체는 직접 소송대리를 하고 있지만,58) 동시에 연관영역(이민법, 노동법)에서 영리 업무를 통해 수익을 증대하기위한 별도의 자매법인 Saltworks도 있다. Saltworks의 소속 모든 변호사들은 ATLEU에서 동시에 근무하며,59) 모든 수익은 ATLEU에 기부된다.60) ATLEU의

- 57) atleu.org.uk
- 58) 실제 판결문에도 ATLEU의 이름이 등장한다. "Ronan Toal and Bryony Poynor (instructed by ATLEU) for the Respondent"
  - http://www.bailii.org/ew/cases/EWCA/Civ/2018/594.html 참조.
- 59) https://atleu.org.uk/private-law-practice
  - "While Saltworks aims to share ATLEU's legal expertise with private clients, we have no intention of abandoning our ethical roots or our commitment to justice. The same team voted as legal aid non-profit firm of the year 2016 will also work for Saltworks. The aim is that all our lawyers will continue to work for both firms so that we take the knowledge and expertise we gain from one sector across to the other."
- 60) http://www.saltworkslaw.co.uk/about-content
  "Our ethics and commitment to justice are at the core of our business. All of Saltworks profits
  go to our sister charity ATLEU that works to protect victims of trafficking in the UK,"

홈페이지에서는 이런 시도가 새로운 펀딩방법으로서 공익 단체 활동의 혁신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ATLEU에서 발행한 2017년 연간보고서<sup>61)</sup>에 따르면, 단체의 주된 수입원은 법률구조비(Legal aid fees)로 245,917파운드(약 3억 6천만 원)로 전체 수입의 50%를 차지하였다. 이외에 보조금이 28%, 회수된 소송비용 16%, 기부는 5% 등을 차지했다.

#### 2) 타워햄릿 법률센터(Tower Hamlets Law Centre)62)

타워햄릿 법률센터는 1975년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주로 다루는 이슈는 난민, 가정폭력 피해 여성, 홈리스 및 빈곤, 복지 등이다. 타워햄릿 법률센터에는 변호사가 상근을 하면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소송대리나 법률자문 등이 모두 포함된다.<sup>63)</sup> 이 센터는 자선단체(Charity) 및 회사 (company limited by guarantee)로 등록되어 있다.

센터에서 발행한 2018년 연간보고서, 회계보고서 및 재무제표<sup>64)</sup>에 따르면, 센터의 주요 수입원은 기부금과 활동수익(보조금 및 소송비용) 등이다. 이 중 기부금은 117,239파운드(약 1억 7천만 원), 활동수익은 325,239파운드(약 4억 8천만원)였다. 활동수익의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LAA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대부분이다. 다만 고객으로부터 받은 소송비용(Fees from private clients)도 26,422파운드(약 3,800만원)에 달해 8% 비중을 차지한다. 센터에서 최근 공지한 변호사 구인공고<sup>65)</sup>에 따르면, 낮은 연차 변호사의 급여는 30,000파운드 정도(약 4,400만원)인 것으로 보인다.

<sup>61)</sup> https://drive.google.com/file/d/1JJ6G28VDImpYOB7u87jDc9Z2we2BWqQN/edit

<sup>62)</sup> http://thlc.co.uk/

<sup>63) &</sup>quot;We provide specialist legal advice and representation in courts and tribunals on housing, immigration and asylum and welfare benefits law. We also hold a regular advice clinic on employment law."

<sup>64)</sup> http://apps.charitycommission.gov.uk/Accounts/Ends82/0000287282\_AC\_20180331\_E\_C.PDF

<sup>65)</sup> https://www.lapg.co.uk/wp-content/uploads/Tower-Hamlets-Law-Centre-Housing-Lawyer-Jun 19.pdf

### 3) Free Representation Unit (FRU)66)

FRU는 고용, 사회보장, 형사피해보상 관련 사건에서 무료 변론, 소송 수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선단체로 등록되어 있다. FRU에는 변호사와 로스쿨 학생들이 근무하거나 봉사를 하고 있다.67) FRU는 단체에서 상담을 한 사건을 소개 받아법률사무를 수행하는데, 이를 위해 상담을 진행한 단체들에서 연간 50파운드(약7만원)의 비용을 지불한다.68) 이 단체의 주된 수입원은 기부이다.

#### 4) LawWorks

1997년 사무변호사 공익법무그룹(the Solicitors Probono Group)이 설립되어 현재는 LawWorks라는 이름으로, 사무변호사들 간에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운영 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LawWorks는 직접 일차적인 법률자문, 소송구조 업무를 하지는 않는다. 대신 전국적으로 약 25,000명의 사무변호사, 중재인, 로스쿨 학생들이 공익 활동 내지 관련 자원봉사 활동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이 필요한 개인과 단체들을 연결해 주는 업무에 주력한다. LawWorks는 2012년도에 약 100여 개의 회원법률사무소(사무변호사) 구성원들과 사내 법무팀 소속 사무변호

- 66) http://www.thefru.org.uk/
- 67) The FRU provides legal services such as advice, case preparation and advocacy in tribunal cases to those without the means to obtain legal support through financial, personal or other reasons, It is heavily reliant on volunteers and provides excellent advocacy experience for junior lawyers. You can find out all the details regarding the application process for a volunteer position on the FRU website. FRU provides representation in employment and social security hearings. We only take cases from our referral agencies and cannot guarantee representation.

#### 68) - Referring clients to FRU

The vast majority of our cases are referred to us by front-line advice agencies who subscribe to our service. A small number of employment cases can be accepted without the need for a referral, Please see the Employment Self-Referrals page for more information. When a case is referred we look for a volunteer to represent at the hearing, If we find a volunteer they also take responsibility for preparing the case.

#### - Becoming a referral agency

There is a small annual subscription fee of £50, which allows you to refer any number of cases. The process of becoming a referral agency is very straight forward. Please complete our application form, Upon submission of the application, you will receive an invoice for the subscription fee by email, Once you have paid this invoice by your preferred payment method you will be able to refer cases to us.

사들의 법률상담 자원봉사를 통하여 약 40,000명의 개인과 350여 개 지역 사회 단체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 5) PILnet<sup>69)</sup>

PILnet은 자선 단체 및 NGO가 무료 법률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프로보노로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변호사와 NGO 간의 중개 역할을 한다. PILnet은 자선 단체, NGO,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및 지역단체를 지원하고, 개인에 대한 법률지원은 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서 PILnet에서는 펠로우쉽 제도를 운영 중으로 로스쿨 졸업생, 신입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여 공익분야 변호사를 양성하고 있다.70)

funding are encouraged to apply.

legal program, such as an LL,M. or JD. The length of the fellowship is up to 6 months, with 3 months spent at PILnet's New York City office and the option to spend an additional 3 months in a field office. Candidates from Hong Kong, China and those with independent

<sup>69)</sup> https://www.pilnet.org/

<sup>70)</sup> Fellows will join PILnet in August in residence at its New York City office receiving a series of in-house and external trainings, Fellows will learn to do what PILnet does best - identify and mobilize private sector legal expertise for the public good. Fellows will receive transactional lawyering training from corporate lawyers on the range of skills they use when advising their clients, like risk management, negotiation, and compliance. Further topics covered by trainings and workshops given by PILnet's partners from law firms, corporations, NGOs, and leading academic universitie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act financing for social change, management and leadership, social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new business models for NGOs, and technology and human rights. Midway through the fellowship, fellows will attend PILnet's Global Forum where they will have the unique opportunity to see PILnet's network in action and forge partnerships with and learn from over 300 leading activists, academics, pro bono professionals, and public interest law champions from around the world all working in benefit of the public interest. Thereafter, fellows may be placed at one of PILnet's field offices in Hong Kong or Budapest or with a PILnet partner organization in Asia or Africa to implement projects on the ground, The ideal candidate is a public interest advocate and recent graduate of a relevant academic

#### 다. 호주 및 뉴질랜드

### (1) 변호사의 동업에 관한 규제

뉴질랜드 변호사법은 동업형태로 법률유한회사(Incorporated Law Firm)를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법률유한회사의 이사(Director)가 될 수 있고대체로 변호사가 의결권을 가지는 주주(Share-holder),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 주주가 될 수 있다[변호사와 부동산변호사법 (Lawyers and Conveyancers Act 2006) 제6조].71) 예외적으로 변호사가 사망하면 재산관리인이 의결권을 가지는 주주가 되고, 변호사의 친족, 또는 변호사나 변호사의 친족의 재산관리인이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 주주가 될 수 있다. 즉,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친족, 재산관리인 외에는 비변호사와의 동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호주의 경우, 뉴사우스웨일즈주를 필두로 하여, 빅토리아주, 퀸즈랜드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태즈매니아주,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 노던준주 에서 MDP를 도입하여 타 영역 전문직과 변호사의 동업이 가능 하다. 72)

- 71) incorporated law firm means, subject to sections 15 and 16, a company that-
  - (a) provides to the public services that are, in relation to a lawyer, regulated services; and
  - (b) has as its directors no persons other than lawyers who are actively involved in the provision by the body corporate of regulated services; and
  - (c) has as its shareholders, in respect of shares that confer voting rights, no persons other than-
    - (i) lawyers of the kind described in paragraph (b); or
    - (ii) persons who are administrators of the estates of persons who, at the time of their death, were lawyers of the kind described in paragraph (b); and
  - (d) has as its shareholders, in respect of shares that do not confer voting rights, no persons other than-
    - (i) lawyers of the kind described in paragraph (b) (any 1 or more or each of whom may, but none of whom is required to, hold those shares as a trustee of a qualifying trust); or
    - (ii) persons who are relatives of lawyers of the kind described in paragraph (b); or
    - (iii) persons who are administrators of the estates of persons who, at the time of their death, were shareholders of the kind described in subparagraph (i) or subparagraph (ii)
- 72) 이전오, "우리나라의 MDP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5권 제3호(2013. 9.), 215.

시드니가 주도인 뉴사우스웨일즈주와 멜버른이 주도인 빅토리아주의 경우 독립된 개업변호사, 로펌, 유한책임 법인, 비법인, 커뮤니티 법률 서비스의 형태로만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법률전문가 통합법 (Legal Profession Uniform Law, NSW no 16a) 제6조]. 73) 유한책임 법인은 호주 회사법에 따라 등록된 회사이고, 비법인은 동업관계나 법인의 형태가 아닌 조직을 말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커뮤니티 법률 센터(Community Legal Centre) 74)로 이곳은 사무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를 제공할 수 있다. 커뮤니티 법률 센터는 유한책임 법인이나 비법인의 형태에 포함되지 않는다(법률전문가통합법 제6조). 75)

#### (2) 프로보노 및 공익법률활동 지원정책

뉴질랜드의 커뮤니티 법률 센터(Community Law Centre)는 법률서비스법 (Legal Service Act 2011)에 따라서 지역에서 법률 서비스(Community Law Service)를 제공하는 단체를 말한다. 그런데 지역공동체에 대한 법률서비스에만 국한되지 않고, 특정한 목적이나 이슈를 중심으로 전문적으로 활동하더라도 커뮤

- 73) law practice means-
  - (a) a sole practitioner; or
  - (b) a law firm; or
  - (c) a community legal service; or
  - (d) an incorporated legal practice; or
  - (e) an unincorporated legal practice;
- 74) section 116 Status of community legal services
  - (1) The status of a community legal service <u>as a body established on a not-for-profit basis is not affected by any profit made by it so long as the income cannot or will not be distributed to any member or employee of the body otherwise than by way of reasonable remuneration under a contract of service or for services,</u>
  - (2) A community legal service may, subject to Part 4.3, recover legal costs incurred by it in respect of legal services that it provides,
- 75) incorporated legal practice means a corporation that satisfies the following criteria-
  - (d) it is not excluded by the Uniform Rules from being an incorporated legal practice but does not include a community legal service; unincorporated legal practice means an unincorporated body or group that satisfies the following criteria—
  - (d) it is not excluded by the Uniform Rules from being an unincorporated legal practice but does not include—
  - (e) a law firm; or
  - (f) a community legal service; or
  - (g) an incorporated legal practice;

니티 법률 센터에 해당될 수 있다(법률서비스법 제93조).76) 현재 뉴질랜드에는 21개의 지역센터가 있고, 장애, 마오리족 토지, 청소년을 위한 3개의 전문센터가 있다. 전문센터는 조력의사결정제도나, 마오리족의 자유토지소유권, 청소년 대상 법교육 등 특정한 이슈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77) 현재 약 80명의 법률가를 포함한 170명의 종사자가 뉴질랜드 전국 24개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78)

커뮤니티 법률센터는 법무부장관과 계약을 통해 지정되고, 운영자금도 법무부장 관이 변호사회의 특별기금 등을 활용해 지급한다(법률서비스법 제94조). 79) 특별 기금<sup>80)</sup>은 변호사와 부동산변호사의 지정된 신탁기금의 은행이자로 마련되고. <sup>81)</sup>

- 76) 93 Definition of community law centres
  - (1)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a community law centre is a body whose function includes the provision of community legal services.
  - (2) A body may,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be a community law centre even if it performs functions in addition to those described in subsection (1).
- 77) 뉴질랜드 커뮤니티 법률 센터(https://communitylaw.org.nz/) 오클랜드장애인 법률 센터(http://aucklanddisabilitylaw.org.nz/) 마오리족 법률 센터(https://www.ngaitahulaw.org.nz/) 청소년 법률 센터(http://youthlaw.co.nz/)
- 78) New zealand Law Society, "New CLC head says funding still inadequate", https://www.lawsociety.org.nz/practice-resources/the-business-of-law/access-to-justice/new-clc-head-says-funding-still-inadequate
  - "Community Law Centres employ about 170 people nationally, of which 80 are lawyers, on top of the 1200 lawyers who provide pro bono services. The services are provided out of 24 community law centres but those centres reach out to more than another hundred locations, many in rural areas."
- 79) 94 Secretary may enter into contracts with community law centres
  - (1) The Secretary may enter into a contract with 1 or more community law centres to purchase community legal services as the Secretary determines appropriate.
  - (2) The money provided by the Secretary to a community law centre under a contract under this section must come from either or both-
    - (a) the Special Fund; or
    - (b) any other money.
- 80) New zealand Law Society, "New CLC head says funding still inadequate", https://www.lawsociety.org.nz/practice-resources/the-business-of-law/access-to-justice/new-clc-head-says-funding-still-inadequate
  - "It is perhaps a little-known fact the bulk of the community law centres' funding comes from the Lawyers and Conveyancers Special Fund which collects interest from banks on solicitors' and licensed conveyancers' nominated trust accounts. Each year the balance in the fund is paid to the Secretary of Justice to help fund community law centres."
- 81) NEW ZEALAND LAW SOCIETY, "ANNUAL REPORT 2017/18", 44\(\frac{14}{2}\) "New Zealand's 24 community law centres receive a large proportion of their funding from the Lawyers and Conveyancers Special Fund. Established in 1982, the fund collects interest from banks on solicitors' and licensed conveyancers' nominated trust accounts. The fund is

올해는 약 1400만 뉴질랜드 달러(한화 약 111억 원)를 커뮤니티 법률센터에 지원한다.<sup>82)</sup>

호주는 커뮤니티 법률 센터(Community Legal Centre)에서 커뮤니티 리걸 서비스(Community Leg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비영리를 바탕으로 설립된 커뮤니티 리걸 서비스 단체로서의 지위는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수익 여부의 영항을 받지 않는다. 단, 이 때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서비스 제공 관련 계약에 의한 합리적 수준의 보수 외에 다른 방식으로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 분배될수 없거나 분배되지 않아야 한다. 2017년 호주 전체 커뮤니티 법률 센터 설문조사에 181개 센터 중 124개 센터가 응답했는데, 가정폭력, 가족법, 임대차 등의사건이 제일 많이 다루는 사건이었다. 응답한 센터 중 약 78%는 법률개정과 옹호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 센터들은 보조금(Grants, 36%)과 기부금(Philanthropy, 28%) 순으로 펀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83)

뉴사우스웨일즈주의 경우 약 40개의 커뮤니티 법률 센터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 중 20개소는 일반 지역센터이고, 20개가 전문센터이다. 전문센터 20곳이 다루는 이슈 중에는 일반 인권이나 공익활동 전반을 다루는 곳도 있지만, 전문적으로 동물, 예술, 장애, 환경, 금융, 프로보노, HIV/AIDS, 이주, 지적장애, 아동ㆍ청소

vested in the New Zealand Law Society and the New Zealand Society of Conveyancers jointly and is held by them in trust for the purposes specified in the Act,

The Act allows banks to retain 40% of the interest payable on nominated trust accounts. After deduction of that amount, the banks are required to pay the remainder to the Special Fund Management Committee, which comprises two people appointed by the Law Society and one person appointed by the Society of Conveyancers, with one of the Law Society appointees to be chairperson.

After deduction of administration expenses (including an audit fee), the balance in the fund is paid to the Secretary for Justice for the purpose of funding community law centres."

82) New zealand Law Society, "Lawyers' special fund pays out \$14 million to Community Law Centres"

https://www.lawsociety.org.nz/news-and-communications/latest-news/news/lawyers-special-fund-pays-out-\$14-million-to-community-law-centres

"Justice Minister Andrew Little has revealed that the Lawyers and Conveyancers Special Fund provided the 24 nation's Community Law Centres (CLCs) with \$14.44 million between 1 November 2017 and 28 February 2019."

83) NACLC "NACLC Annual Report 2017-2018" (2018) 6.

년, 난민, 노인, 임차인, 선주민, 복지, 여성, LGBTI 등 특정 이슈만 다루는 단체가 더 많다.

빅토리아주의 경우 50개의 커뮤니티 법률 센터가 있고, 그 중 지역센터는 24개, 전문센터는 26개이다. 전문센터가 다루는 주제는 동물, 난민, 소비자, 장애인, 가정폭력, 환경, 다문화가정폭력, 여성, 학생, 노동, 정신건강, 노인, 복지, 임차 인, 선주민, 청소년, 청소년노동 등이다. 이들 전문센터는 단순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접근성 제고의 측면 뿐 아니라 권익옹호와 제도 개선, 전략소송 등을 기획하고 진행하기도 한다. 3~4명의 상근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단체부터 30여 명이 근무하는 단체까지 규모도 다양하다. 아래는 뉴사우스웨일즈주와 빅토리아 주의 전문센터 중 비교적 규모가 큰 단체의 사례이다.

### (3) 단체운영사례

1) 빅토리아주 여성 법률 서비스(Women's legal service Victoria)84)85)

1982년에 빅토리아주에서 설립된 비영리기구로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로 여성이 겪는 경제적, 사회적, 법적 불이익과 폭력, 권리 침해 등의 문제에 대응하여 법률상담과 제도 개선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약 5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그 중 절반이 법률과 정책 분야에서 일하고 있고, 그 중 절반은 변호사이다. 그 외에도 교육과 개입지원 분야에서 변호사가 3명 근무하고 있다. 2018년 총수입 362만 호주달러(약 30억 원)이고 그 중 325만 호주달러는 정부의 보조금으로 마련되었다.

<sup>84)</sup> https://www.womenslegal.org.au/

<sup>85)</sup> Women's legal service Victoria, "Impacr report 2017-2018" https://womenslegal.org.au/impact\_report\_2018/

### 2) Djirra<sup>86)</sup>

Djirra는 선주민의 언어인 오이우룽(woiwurrung) 언어로 '바구니를 만드는 갈대'를 뜻한다. Djirra는 선주민 여성의 문화를 공유하고, 가정폭력에 개입하거나해결을 지원하며, 선주민 여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02년에 선주민가정폭력예방 법률서비스로 활동을 시작해 벌서 17년째 선주민 여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로 지원받고 있는데, 2018년 수입은 약 670만 호주달러(약 56억 원)이었다.87)

#### 3) EDO NSW(Environmental Defenders Offices of New South Wales)88)

EDO NSW는 환경과 관련한 공익법률활동을 하는 법률 센터이다. 약 30여명의 상근자가 활동 중이다. 2018년 수입은 292만 호주 달러(약 28억 원)인데, 그중 37%는 정부에서, 33% 기부에서, 19%는 수수료에서, 10% 프로그램에서 각 수입을 얻었다. <sup>89)</sup>

# 라. 일본

# (1) 비변호사와 제휴금지 규정

일본 변호사법은 "변호사는 제72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에게 사건의 주선을 받거나 또는 이들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7조). 제72조는 비변호사(또는 변호사법인)의 법률사무 취급등 금지 규정이고, 제73조는 양수받은 권리를 실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sup>86)</sup> https://djirra.org.au/who-we-are/

<sup>87)</sup> djirra, "Annual Report 2017-18", 6-7.

<sup>88)</sup> https://www.edonsw.org.au/

<sup>89)</sup> EDO NSW, "annual report 2017-18" (https://www.edonsw.org.au/annual report 2018), 25.

금지하는 규정이고, 제74조는 비변호사가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또는 변호사법인 이라고 허위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즉 일본에서도 변호사 또는 변호 사법인이 아닌 자와 동업을 할 수 없다.

### (2) 일본의 공익법률활동

#### 1) 변호사단체

일본의 변호사단체는 공익단체로서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sup>90)</sup> 일본변호사연합회<sup>91)</sup>에서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인권 침해에 관한 조사를 하고 인권침해를 받은 사람에 대해 구호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인권구제신청사건을 다루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경고, 권고, 요망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그 집행을 관찰한다.<sup>92)</sup>

또한 변호사회를 중심으로 아동인권, 노동자, 고령자, 성평등, 평화, 이주와 난민 등 다양한 공익 인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집권당의 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우려 의견을 내기도 하고, 소년법 적용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 93)

# 2) 각종 기금과 공설사무소

일본의 변호사 단체는 각종 기금을 마련하여 지역의 사법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변호사연합회와 지방변호사회, 지방변호사회연합회가 조성한 히마와리기금은 과소지역에 변호사를 파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94) 1999년 도쿄변호사회가

- 90) 한겨레 "일본 돌아가 공감 같은 인권변호사 단체 만들 터" (2018. 2. 18.)
- 91) 일본변호사연합회(https://www.nichibenren.or.jp/)
- 92) 일본변호사연합회 "인권구제신청에 관한 절차(신청방법, 절차의 흐름 등)" (https://www.nichibenren.or.jp/activity/human/human rights/moushitate.html#inquiry)
- 93) 일본변호사연합회 "인권옹호활동—활동일람"(https://www.nichibenren.or.jp/activity/human.html)
- 94) 염형국. "공익인권법무 분야의 현황과 전망; 한국의 공익변호사 현황과 전망", 공익과 인권 통권

사법개혁지원금으로 기부한 1억 엔과 일본변호사연합회 창립 50주년 기념사업특별금에서 이월 받은 3000만 엔을 기반으로 일본변호사연합회가 히마와리기금을 발족했고, 1999. 12. 임시총회 결의로 2000. 1. 부터 모든 회원이 1인당 매월 1000엔씩 특별회비를 징수해 기금을 마련했다. 이후 특별회비의 징수를 2016. 3. 까지 4번 연장해 징수해왔고, 2016. 4.부터는 특별회비 대신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지원하게 되었다. 95) 히마와리기금은 최초 사무소 개설에 500만엔을 지원하고, 운영비용으로 최대 1000만엔까지 무상지원하고 있다. 2018. 10.까지 총 118곳의 공설사무소가 설치되었고, 그 중 72곳은 지원기간만료 후 지역에 잘 안착하였다. 현재는 44곳이 지원을 받고 있다. 96)

이외에도 홋카이도변호사회연합회는 스즈란기금을 마련하여 과소지역에 변호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sup>97)</sup> 제2도쿄변호사회는 프론티어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도쿄프론티어기금법률사무소를 설립·운영하고 있다.<sup>98)</sup> 규슈변호사회연합회는 아사카제기금을 같은 용도로 마련하여 변호사 육성·파견사업을 하고 있다.<sup>99)</sup> 이들 기금과 사무소는 오로지 공익법률활동을 하는 데에도 쓰이지만, 과소지역에 파견될 변호사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함으로써 사법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움직임은 단지 물리적인 사법접근성 향상에 머물지 않고, 경제적·사회적 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과소지역 뿐 아니라 도쿄 같은 대도시에서도 도시형 공설사무소를 운영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나 사회적인 약자에게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도시형 공설사무소인 변호사법인 동경퍼블릭법률사무소는 2002년 도쿄변호사회의 지원으로 설립되었다. 유상으로 취급하는 법률사무도 있지만, 일본변호사연합회나 법테라스의 법률구조기금을 받아 서

제13호 (2013), 24,

<sup>95)</sup> 일본변호사연합회 "변호사 과소 · 편재 해소를 위한 일변련 활동의 발걸음" (https://www.nichibenren.or.jp/activity/resolution/counsel/kaso taisaku.html)

<sup>96)</sup> 일본변호사연합회 "히마와리기금 법률사무소(공설사무소)의 개요와 소개" (https://www.nichibenren.or.jp/activity/resolution/counsel/kaso taisaku/himawari,html)

<sup>97)</sup> http://www.dobenren.org/suzuran/index.html

<sup>98)</sup> http://tokyo-frontier.com/outline.html

<sup>99)</sup> http://www.asakaze-law.jp/

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현재는 18명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고, 외국인·국제부문, 복지(노인, 장애, 아동), 중소기업, 노동사건 전문팀을 꾸리고 있다. 100)

#### 3) 법테라스101)

법테라스는 종합법률지원법(2004년 6월 2일 공포)에 근거하여 독립행정법인의형태로 설립된 법인으로 종합법률지원에 관한 사업을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이 목적이다(종합법률지원법 제14조). 법테라스는 재판이나 분쟁해결 제도의 이용을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변호사 및 변호사법인, 사법서사, 기타 법률전문직의 서비스를 보다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전국에 50개의 사무소가 있고, 스태프변호사들이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다. 스태프변호사들은 법률구조를 받은 민사사건, 국선변호·국선보조사건을 주로 맡고, 유상사건은 예외적으로 사법과소지역인 경우에 수임할 수 있다. 이들의 급여는 법테라스에서 법관과 검찰에 준하는 정도로 지급하지만, 법률사무에 대한 지휘명령 없이독립적인 수행을 보장한다.

#### 마. 독일

독일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는 독립적 권리구제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제2조는 "변호사는 자유로운 직업을 행사하며, 그의 활동은 영업적 활동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등 변호사의 독립성을 법치국가의 전제로 강조한 다. 102)

독일의 변호사법 제59조a 제1항 1문은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납세대리인, 회계사, 선서장부검사인과 고유한 직업적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들과 공동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103) 즉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동업을

<sup>100)</sup> http://www.t-pblo.jp/

<sup>101)</sup> https://www.houterasu.or.jp/index.html

<sup>102)</sup> 김용섭, 독일과 일본에서의 MDP 논의, 인권과 정의 Vol. 412 (2010. 12.), 32.

허용하지만, 그 범위를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이 법이 생기기 전부터 비변호사 전문직과의 동업을 독일 기본법상 직업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해석해 왔다. 104)

한편 독일 변호사법은 동업의 구체적인 형태로 공동법률사무소와 공용사무실, 그리고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의 형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의뢰인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변호사 유한회사나 변호사 주식회사의 경우 변호사가 반드시 의결권 또는 주식의 과반수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105)

나아가 독일 변호사법 제72조는 비변호사가 보수를 얻을 목적으로 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주선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의 입법취지로 판례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치하면 법률질서를 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106)

독일의 경우 미국이나 영국보다 변호사와 비변호사간 동업이나 이익 분배 규정이 엄격하여 현재로서는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지 않다. 다만 영국을 시작으로 독일 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 협업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므로 이를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바. 소결

#### (1)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동업 관련 규정

미국 변호사 협회의 윤리장전에는 비영리단체와 변호사 사이의 보수분배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일부 주의 변호사 윤리장전에서는 이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

<sup>103)</sup> 이전오, 각주 28, 43.

<sup>104)</sup> 이전오, 각주 28, 43-44.

<sup>105)</sup> 이전오, 각주 28, 44-46.

<sup>106)</sup> 김용섭, 각주 102, 43.

다. 비영리단체의 높은 공익성과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도 비영리단체에 한해 도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특히 의뢰인이 아닌 제3자나 단체에서 지원받는 매우 적은 금액의 소송구조 비용조차 비영리 법인과 분배할 수 없도록 하는 한국의 보수분배금지·동업금지규정의 엄격한 적용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영국과 호주는 변호사의 동업제한 규정을 비교적 일찌감치 삭제하였다. 애초에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 그 외에도 다양한 법률전문가들이 분절된 체계를 가졌던 이들 나라에서는 통합적 서비스의 수요가 더 컸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영국은 비영리 단체인 중개기관(Clearinghouse)이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공익법운동을 하는 단체들은 커뮤니티 법률센터 중 전문센터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는데, 호주의 몇몇 주에서 법률센터는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 동일하게 변호사의 동업을 규제하고 있고, 독일은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매우 제한된 직역만 동업을 허용하고 있다.

#### (2) 공익변호사단체와 공익활동

한국에서 앞으로 공익변호사들이 나아가야 할 전망을 그려보기 위해서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유익하다.

미국의 경우 공익 로펌을 위한 세제 혜택과 비영리 차등제 로펌 방식의 제안, 활발한 프로보노활동에서 참고할 점이 많았다. 미국의 공익 로펌은 의뢰인에게 직접 받는 보수가 50%를 넘지 않는 경우 공익단체에 포섭하여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사회적 약자나 극빈층뿐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법률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수임료에 차등을 두는 방식은 한국의 공익변호사 단체나 법무법인의 범주 중간에 새로운 모델을 고민해 보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은 보편적이고 법은 보편적 인권을 실현하는 요긴한 도구이므로 법률서비스는 누구나 접근해서 누릴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에서 이미 실시된 실태조사를 통해 공익변호사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단체의 규모도 커지며, 동시에 비변호사 상근자가 크게 증가해왔다는 것은 한국의 공익변호사 단체들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한국과 비교하여 공익변호사의 급여가 현실적인데도 연차가 쌓일수록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아, 향후 한국의 공익법활동도 역사가 쌓이면 비슷한 경험을 할 가능성 높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미국의 대규모 공익변호사단체는 재단과 개인의 기부로도 충분히 운영비를 충당하면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법률구조를 통한 단체의 지원이 활성화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개인변호사나 법무법인뿐 아니라 비영리단체에 종사하는 변호사들에 의해서도 법률구조가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영국의 단체들의 수입원 중 많은 부 분이 법률구조비이기도 했다. 다만 최근에 법률구조를 받는 요건이 까다로워지면 서 수입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지역 법 률센터는 정부 또는 주정부의 다양한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뉴질랜드와 호 주의 커뮤니티 법률 센터 중 전문적으로 인권을 옹호하고 공익을 증진하는 전문 센터는 기획소송이나 제도 개선활동 등 전통적인 공익법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들이 미국의 공익 로펌이나 비영리 법률 단체와 다른 점은 국가의 보조금으로 운 영된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변호사회에서 특별회비를 걷어 과소지역에 변호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오랫동안 실시했다. 또한 일본 법무성도 기금을 조성하여 과소지역에 변호사를 파견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기금을 조성하여 제공할 뿐 변호사들의 독립성을 존중하여 법률사무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공익활동은 사법접근성개선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신 일본의 변호사단체는 인권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 (3) 한국에 던지는 시사점

해외의 사례를 종합하면 공익법활동의 목적은 크게 사법접근성을 개선하는 정책과 인권을 옹호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운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그 방식으로는 비영리법인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비변호사 동업 형태, 공익 로펌, 차등제로펌, 법률사무가 가능한 전문 지역 법률센터, 변호사회의 지원을 받은 공설사무소 등의 형태가 있었다. 이들 중 어떤 형태가 한국에 더 적합할지는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제정적으로 기여하는 방식은 ① 미국처럼 대규모 후원과 기부가 이루어지는 경우, ② 영국, 호주, 뉴질랜드나 일본 법무성의 법테라스처럼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주된 수입이 되는 경우, ③ 일본의 히마와리 기금처럼 변호사회 자체의 기금 마련을 통해 지원받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직접적인 기금은 아니지만 ④ 일정 기준을 갖추면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도 있었다. 장기적으로 한국도 가치를 지향해 후원과 기부를 하는 문화로 이행해야 할 것이지만 단기적으로 이러한 문화를 형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의 법률구조기금을 포함한 정부의 보조금은 이미 법률구조공단과 같이 공적인 영역 안에서 배분·집행되고 있어서 이를 사적인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본변호 사연합회처럼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에서 소액의 특별회비를 모아 지원하는 방식은 단기간에 달성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된다.

물론 위 해외 사례와 조직 및 재정지원 유형은 각각 예상 가능한 부작용들이 있다. 이번 연구는 이를 거칠게 소개하는데 그쳤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공익변호사 단체들의 재정 및 조직 구조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그려갈지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3. 비영리 공익전업변호사들에게 맞지 않는 변호사법의 문제 및 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

#### 가. 전제 - 비영리·공익. 동업·수익배분 등의 의미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혼동될 수 있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앞서 이 공익변호사의 실태조사를 진행함 에 있어 '공익'의 의미를 포섭하여 정의하는데 중심을 두기보다는 공익변호사의 '활동'의 특성에 중심을 두어 공익변호사를 구분하였다고 전제하였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다. 공익변호사 존재지반과 활동의 특성을 중심으로 보자면 공익변호사란 대체로 그 활동 방식에 있어 '비영리'조직에서 전업으로 상근을 하거나, 아니면 법률지원으로 인한 '수익구조를 아예 가지지 않거나, 있다 하더라도 구성원들이 나누어가지지 않거나, 그 상한 이상의 이익을 분배하지 않으면서' 공익적인 지향을 위해 (거의) 전업으로 일하는 변호사를 의미하는 경우가많다.

본 조사에서는 비영리·공익의 의미를 혼재하여 사용했으나, 양자의 의미는 사실 별개이다.

'비영리'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말하며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107) 비영리의 경우 고유목적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의 운영을 통해 창출된 이익을 내부 구성원에게 나누지 않는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08) '공익'은 다중의 이익의 확산하기 위한 그 무엇인데 그 의미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매우 다양하다.

<sup>107)</sup> 반면, 영리란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을 의미하고 이익이 생기는 경우 이를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sup>108)</sup> 법무부, 2017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 · 공익법인 관리 · 감독 업무편람, 13면,

아래에서 논의되는 변호사법의 문제들은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공익변호사들이 소송구조, 자문,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수입이 발생하여 이를 모두 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킴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문제들에 집중하였고 모든 '공익'변호사에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님을 미리 밝히며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 나. 문제되는 변호사법 관련 조항과 발생하는 문제들

관련된 현행 변호사법 규정들은 크게 이렇다.

####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중 합명회사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으로 인해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상근변호사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비영리단체에 고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비영리단체 자체는 '변호사가 아닌 자'이므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 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모든 변호사들은 별도로 자신의 '개인'법률사무소를 세무서에 등록해야 하 고 '개인'의 이름으로 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그 변호사는 \*\*비영리단체의 상근변호사이지만 법정에서 \*\*비영리단체 상근변호사라는 직함을 사용할 수 없다.

(2) 세무/회계의 이중구조로 인한 문제도 있다.

또한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으로 인해 비영리단체의 상근변호사가 소송구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비영리단체의 재정에 바로 편입할 수가 없다. 변호사가 아 신 사람과 이익을 분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별도로 자신의 개인 법률사무소를 세무서에 등록해야 하는 것이다.

세무서에 등록한 법률사무소에서 그 어떤 작은 수입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법인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를 내는 것은 변함없지 않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변호사(혹은 변호사들)가 법률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변호사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전부를 비영리단체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어떤가? 실질적으로 공익변호사는 개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비영리법인'을 위해 사용하였음에도 결국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이다.

(3) 다른 측면으로는 비영리단체의 입장에서도 변호사법은 고용된 상근변호사가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상근변호사가 마음만 먹으면 소송구조 등으로 발생한 부수입이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비영리단체의 소속 변호사가 비영리단체 활동 에 전념하지 않고 자신의 수입을 올리는 것에 전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상 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상근하는 근로자가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기타소득의 발 생에 힘을 기울이게 된다면 조직의 통합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 공익변호사의 수입이 비영리단체에 원천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 이다.

(4) 한편, 비영리단체 상근변호사가 단체의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했고 이를 내부구성원에게 나누지 않는다면 법인세법상의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률서비스'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였다며 국세청에 법인세법 제110조109)에 따른 '비영리법인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할

<sup>109)</sup> 법인세법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u>비영리</u>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 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u>새로 수익사업(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u>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수도 있겠다.

그런데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영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변호사법에는 '비영리'를 바탕으로 한 법무법인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비영리법인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할 수 없다.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개시신고는 '비영리법인'이 '비영리'로(즉, 발생하는 수입을 내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 수익사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변호사법에는 '비영리'법무법인에 대한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설사 변호사법에서 비영리법무법인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변호사가 아닌 자와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이 존재하는 한비영리 공익법률운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상근변호사들은 여전히 비영리단체의 상근변호사로서 세무적으로든 변호사회 등록이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5) 그렇다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무법인을 설립하면 안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도 변호사법상 안 된다.

변호사법 제40조에서 법무법인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변호사법 제58조에서 법무법인에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바,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은 본질적으로 영리(수익을 내부 구성원에게 배분) 구조이기 때문이다.

- 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법인의 명칭
-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 4. 고유목적사업
- 5. 수익사업의 종류
- 6. 수익사업 개시일
- 7. 수익사업의 사업장

#### 다. 변호사법 제34조 및 제58조를 개정하는 안

#### (1) 외국 사례

위에서 언급한 미국의 여러 주에서 두고 있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보수 분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고할 만하다. 미국도 원칙적으로 보수 분배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비영리의 경우에는 일정한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메사추세츠 주의 변호사 윤리장전(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은 미국 변호사협회 윤리장전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의 보수 분배를 금지한다. 다만 예외를 두고 있는데, ① '검증된 법률 보조 단체(Qualified legal assistance organization)'가 해당 사건을 변호사에게 소개한 경우, ② 의뢰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③ 승소를 통해 상대방이 지급하게 되는 변호사비용이나 조정을 통해 지급되는 변호사 비용을 ④ 위 단체와 분배할 수 있다[Rule 5.4: Professional independence of a lawyer(a)(4)]. 110) 여기서 검증된법률 보조 단체란 이러한 법률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이윤을 취하지 않는 단체를 말하며, 해당 단체들은 중요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보수 분배에 대한 예외가 허용되는 것이라고 한다. 111)

네바다 주의 변호사 윤리장전에서도 변호사가 자신을 고용하거나 추천한 비영리

- 110) RULE 5.4 PROFESSIONAL INDEPENDENCE OF A LAWYER
  - (a) A lawyer or law firm shall not share legal fees with a nonlawyer, except that:.....
  - (4) a lawyer or law firm may agree to share a statutory or tribunal approved fee award, or a settlement in a matter eligible for such an award, with a qualified legal assistance organization that referred the matter to the lawyer or law firm, if the client consents, after being informed that a division of fees will be made, to the sharing of the fees and the total fee is reasonable.
- Rule 5,4(a)(4) explicitly permits a lawyer, with the client's consent, to share certain fees with a qualified legal assistance organization that has referred the matter to the lawyer. The financial needs of these organizations, which serve important public ends, justify a limited exception to the prohibition against fee—sharing with nonlawyers,

(https://www.mass.gov/supreme-judicial-court-rules/rules-of-professional-conduct-rule-54-professional-independence-of-a#-d- 참조)

단체와 승소 비용을 분배하는 것을 변호사 보수 분배 금지 규정의 예외로 두고 있다[Rule 5.4. Professional Independence of a Lawyer (a) (4)]. 네바다 주는 이와 같은 규정을 메사추세츠 주만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외 규정을 둔 취지는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Rule 5.4. Professional Independence of a Lawyer.

- (a) A lawyer or law firm shall not share legal fees with a nonlawyer, except that:
- (4) A lawyer may share court-awarded legal fees with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employed, retained or recommended employment of the lawyer in the matter;

그 밖에, 노스캐롤라이나 주, 콜로라도 주 역시 네바다 주와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 아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규정이다.

Rule 5.4. Professional Independence of a Lawyer.

- (a) A lawyer or law firm shall not share legal fees with a nonlawyer, except that:
- (5) A lawyer may share *court-awarded legal fees with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employed, retained or recommended employment of the lawyer in the matter,

대체로 소송구조를 통한 변호사 수입을 '비영리단체'에 고용된 변호사와 비영리단체가 나누는 것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의 공익변호사단체들이 '당사자가 아닌' 법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 공익변론센터, 리걸클리닉센터 등 제3의 기관을 통해 구조를 받아 이를 단체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 예외 규정들을 적극적으로 참조해볼 만하다.

참고로 미국은 공익 로펌의 경우에는 일정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는 세법상의 혜택이고 위에서 언급한 변호사 보수 분배 금지 예외 규정과 직접 상관관계가 있는 요건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 보수 분배 금지원칙과 그 예외는 미국 각 주마다 있는 변호사 윤리장전<sup>112)</sup>상의 것이고, 공익로펌에 대한 세제 혜택 규정은 세법상의 규정이다.

#### (2) 변호사법 제34조 개정과 관련한 국내의 상황

박주민 의원은 2017. 6. 28.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을 위하여 법률사무 취급의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주체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이유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액사건의 소송대리 등의 법률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였다(의안번호 7653). 그 내용은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에 단서를 신설하는 것이다. 113) 박주민 의원안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는 하나 비영리단체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비변호사의 변호사 고용금지 규정의 예외를 마련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또 영리분야이기에 비교의 대상이 아닐 수는 있으나 변호사와 회계사 등 유사 직역간의 동업(MDP)에 대한 논의들도 진행되고 있고 이는 모두 '영리'를 전제로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법 제34조 자체에 예외규정을 두어 제4항과 제5항의 예외를 두고 있다. 114) 특기할 점은 영리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자격조건이 인정되는 경우 '이익분배'의 예외까지 생각하는 안이라는 점이다. 이 안은 아직 발의되거나 한 것은 아니다

- 112) 미국은 변호사법이 법률로 따로 있지 않다.
- 113) **박주민 의원 개정안**

제34조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에 따라 법률 서비스 사업을 행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4) 이전오,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의 협업방안에 관한 연구', 2012, 8. 본 연구 말미에 보면 변호사법 제34조에 제6항을 신설하여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동업에 대한 예외규정을 둘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한다. 그 안은 이렇다. 변호사법 제34조 제6항 신설

"제4항 및 제5항에 불구하고, 이 법에서 정한 종합법무법인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닌 자도 종합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법 및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다."

#### (3) 생각해볼 수 있는 변호사법 제34조 및 제58조 개정안

변호사법 제34조에 제6항을 신설하거나 제34조의2를 신설하여 미국 각주의 변호사 윤리장전과 같은 내용의 예외 규정을 두고 이에 더하여 변호사법 제40조 제2항, 제58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비영리법무법인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①~⑤ (현행과 같음) 제6항 신설 (혹은 제34조의2 신설) ⑥ 제4항,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증된 비영리단체가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필요한 공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변호사를 고용할수 있으며, 소송구조 등의 수익을 비영리단체와 배분할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비영리단체는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가를받아야한다(혹은 전항의 경우 비영리단체는 대통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⑧ 제6항의 변호사가 비영리단체의 업무집행사원,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지방변호사회에 신고를하여야한다.	
제40조(법무법인의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 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 립할 수 있다.	제40조(법무법인의 설립) ① (현행과 같음) ② 변호사는 인권의 옹호와 공익적 목적 실현을 위해 비영리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여기서 비영리라 함은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수익을 내부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115)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0조제2항의 비영리법무법인에 대해서는 「민법」중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sup>115)</sup> 비영리의 의미, 공익의 의미에 대한 정의는 예시에 불과하고 다방면의 논의가 필요하다.

(4) 유의할 부분은 보수분배 금지 원칙 예외와 비영리공익법인의 세제 혜택이 반 드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양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다만 '비영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 범위를 협소하게 제한하여 보려는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비영 리공익법인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미국 공익로펌의 요 건들은 참조할 만하다.

미국 국세청은 국세법(the Internal Revenue Code)에 근거하여 공익 로펌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하는 규정[Section 501(c)(3)]이 있음은 위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 ① 의뢰인에게 받은 변호사 비용이 공익 로펌 운영비의 50퍼센트를 넘지 않을 것
- ② 의뢰인에게서 수수하는 변호사 비용이 실제 업무 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 하지 않을 것
- ③ 사건을 수임할 때 변호사 수임료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것
- ④ 영리로펌을 보유하지 않을 것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의뢰인에게서 직접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정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은 단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성급하게 공익법무법인이라는 결과로 나아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수 분배 금지 예외 규정과 비영리공익법인의 세제 혜택 규정은 엄밀히 말하면 인과관계가 없는 것인데 이를 혼동하여 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영리단체 공익변호사라면 그 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핵심인데, 세금이라는 부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설립요건과 인가요건이 강화되어 감독을 받는 것은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행정업무로 소진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 라. 법무법인 공익을 신설하는 안

공익변호사들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기존 변호사법 제도 내에 들어올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2018. 12. 법무법인(공익)과 관련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116) 변호사법 개정과 관련한 공익변호사들의 요구와 그에 따른법무부와의 논의는 2014-2015년 계속되다가 중단되었었는데, 이후 금태섭 의원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발의를 한 것으로 짐작한다. 공익변호사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에 대해서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 의원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래는 금태섭 의원의 발의안이 발전적으로 논의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동안 공익변호사 모임에서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가 작성하였던 의견서(2019. 2. 13. 작성)를 바탕으로 수정한 개선안에 대해논의해보려고 한다.

#### (1) 개정안의 요지

2018. 12. 12. 금태섭 의원 대표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6호, 이하 '본 개정안'이라 함)이 발의되었다. 위 법안의 제안이유는 공익활동을하는 변호사 증가에 따른 공익전업 변호활동에 대한 활동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변호사는 공익법률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공익)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법인(공익)은 실비 등을 수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법률활동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함.
- 법무법인(공익)은 공익법률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법인(공익)의 공익법률활동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 법조윤리협의회의 공익법률활동 관련 업무수행 근거를 마련함.

####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및 개선안

1) 법무법인(공익)의 법적 성격에 대한 정의 규정 미비 및 법적 성격 한계

#### ■ 개정안

제58조의32(설립) 변호사는 법률구조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법률사무(이하 "공익법률활동"이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공익)을 설립할 수 있다.

#### ■ 문제점

본 개정안은 법률구조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법률사무(공익법률활동)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제58조의32, 33)고 규정하였고 별도로 법무법인(공익)에 대한 정의, 공익에 대한 정의를 두지 않았다.

'법률구조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법률사무(공익법률활동)'를 수행하는 것이 법무법인(공익)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라면, 공익법률활동이 자칫 '법률구조'로 제한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법무법인(공익)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정관 기재 사항은 기존 법무법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제58조의35), 특히 출자 종류, 가액 등을 규정하도록 하여, 법인 구성원들의 출자에 의해 자본금을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내용은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제58조의45,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영리회사인 상법상 합명회사를 기본 성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무법인(공익)이 비영리로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규정과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 제58조의38은 법무법인(공익)은 결산 잉여금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지 못하며,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잉여금을 전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므로 배당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는 하다. 즉 기본적으로 상법상 합명회사에 근거하면서 비영리적 규제를 가하고 있는바, 영리성과 비영리성이 혼재되어 있다.

이 규정의 근본적인 한계는 법무법인이 직접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모델만을 변호 사법에 편입시킨다는 것이다. 이미 기존에 후원을 바탕으로 설립된 (그리고 그 안에서 상근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들은 이 규정에 편입될 수 없 을 확률이 높아 이들에 대한 고려가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다. 달리 설명하면, 기존 공익변호사들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는 변호사가 중심일 수도 있고 아닐 수 도 있다. 그런 와중에 그들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그 형식은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다양하다)는 '변호 사법'의 '법무법인'형태로 포섭이 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 ■ 개선안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세법상 과세체계가 완전히 구별되므로 법무법인(공 익)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비영리법인은 통상 기부금이 주 수입원이며,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고,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면제된다. 영리법인은 사업수익이 주된 수입원이며, 영리법인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금원(기부금)은 증여세대상이 아닌 법인 수익으로 산정되어 법인세 부과대상이 된다.

현재 다수 공익변호사단체는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 사단법인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로 등록하여 지정기부금단체, 혹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 혜택을 받고 있다. 주로 무료 법률지원을 하는 공익활동의 특성상 기부금 수입이 필요하므로 기부금 에 대한 세제혜택이 가능하도록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한다면 변호사법에서 법무법인(공익)에 대해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지정 기부금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시 간단하게 말하자면, 대부분의 공익변호사단체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영리법인을 바탕으로 한 기존 변호사법에 편입될 수 없었고 같은 이유로 기존 법인세법 체계에도 편입될 수 없었다. 그렇다면 법무법인(공익)의 성격은 '법률구조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법률사무'라고 하는 것보다는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부각시켜 정의하는 것이 더 선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법인(공익) 설립 규정에 "비영리 목적"을 포함시키고,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민법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비영리법인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있다. 참고로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은 상법을 준용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민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있다(제14조). 그러나 위 경우 법무법인(공익)의 출자에 대한 내용 등 유한회사를 전제로 한 규정들이 모두 수정되어야 하므로 새로운 법률 개정안이 필요하다. 법률 개정안을 새롭게 구성하여 비영리법인인 법무법인(공익) 설립에 대해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공익변호사단체는 포섭하지 못하고, 새로 설립될 단체에한정되므로 실효성이 낮다.

○ 또한 법률지원을 하는 비영리법인들이 수익사업의 형태로 법무법인(공익)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하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변호 사법 제34조 제4항과 제5항의 예외 규정도 같이 고민되어야 한다.

#### 2) 수익활동 금지 규정 문제점과 개선안

#### ■ 개정안

제58조의34(의무) 법무법인(공익)은 공익법률활동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검토의견

본 개정안의 법무법인(공익)이 영리회사인 유한회사를 전제로 한다면, 수익활동은 법인 유지를 위한 본질적 속성이다. 법무법인(공익)을 비영리법인으로 본다하더라도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내부구성원들에게 배분하고 그 수익을 법인에게 귀속시킨다면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이 제한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비영리법인은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며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위배되지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17) 법무법인(공익)이 비영리법인임을 전제하는 경우,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여 설립목적과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개정안은 공익법활동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대가 수수가 금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익법활동이란 공익을 목적으로 한 법률사무로 정의되는바(제58조의32), 규제 대상 사무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공익변호사단체들은 공익소송에 대하여 법률구조재단이나 법원의 소송구조금을 받기도 하고, 법률자문에 대하여 소액의 자문료를 받거나 입법 연구 등에 참여하여 연구비, 회의비 등을 받고 있으며, 위와 같은 수익활동은 공익변호사 단체 유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포괄적인 대가 수수 금지 규정으로 인해 공익변호사나 공익법단체의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 ■ 개선안

위 규정의 대안으로는 수수료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비영 리법인의 수익을 내부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법활동에 대한 수임료의 상한 혹은 전체 재정에서 수임료 가 차지하는 비중의 제한을 둘 수 있다는 정도로 규정하며, 대통령령에서 제한되 는 구체적인 활동 및 대가 한도를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 3) 기부금품 모집

#### ■ 개정안

제58조의39(기부금품의 모집 등) ① 법무법인(공익)은 공익법률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모집기관의 허가 요건 및 모집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검토의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은 1951년 제정 당시 기부금품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1995년 전면 개정을 통해 허가주의로 변경되었다. 이후 기부금품 모집 허가 역시 개인의 일반적인 활동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에 따라 2006년 법 개정으로 허가주의에서 등록제도로 변경되었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등록청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을 받으면모집사용계획서 내용이 법에서 정한 바와 적합한지, 신청인이 등록을 할 수 없는자가 아닌지 확인한 후 등록증을 내주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4항). 위와 같이 과거 십수년 전에 기부금품 모집 허가제도는 등록제도로 변경되었고, 위 등록제도에 대하여도 과도한 규제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공익)에 대하여 기부금품 허가제도를 규정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규제이다.

또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규정은 법무법인이 직접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모델만을 변호사법에 편입시키려고 하는데, 현재 이미 기존에 후원을 바탕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변호사가 중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가 비영리법무법인을 설립하는 부분에 대한 고려는 없다는 문제가 있다.

#### ■ 개선안

#### ○ 허가주의 개선

위 규정의 대안으로는 현행 기부금품법의 과도한 규제를 배제하고 모금의 자율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공익법률활동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고, 모집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기부금품법 적용은 배제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 ○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신고와의 연관

법무법인 공익을 두어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게 한다 하더라도 세법상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다. 앞서 법무법인 공익의 수임료 제한 규정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고, 법무법인 공익은 기본적으로 '비영리'로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했다. 이러한 전제에서 살펴보자면 이러한 비영리법무법인은 소송구조 등일정한 수입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법인세법상 모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실무상 세무서에 비영리법무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후원 등 사업을 지속한다 하더라도, 법률지원으로 인하여 소송구조금 수입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상 비영리법인(법인이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든 불문하고)은 별도로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그렇다면 비영리단체가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비영리법무법 인으로 수익사업개시신고(비영리법무법인으로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면 국세청뿐 만 아니라 변호사회에도 등록을 해야 한다)를 하여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세청에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변호사회에도 등록을 해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모두의 검토를 받을 수 있을 테니 우려되는 여러 가지 부작 용도 사전에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많은 공익변호사단체, 혹은 공익변호사가 상근하고 있는 비영리단 체를 포섭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편, 법인세법상 비영리단체가 고유목적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세가 50% 감액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은 비영리법인 혹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들의 수익사업에 대해 구분기장을 통해 수익사업에 대한 별도 재무제표(복식부기)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를 내야 하는 제재를 받고 있다.

또한 변호사는 변호사법 자체에서 경유증지 신고, 수임사건 신고 등 여러 가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비영리단체가 변호사업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심사를 거쳐서 비영리법무법인으로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경우, 세법적으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규제 장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회에 여러 가지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제도 따르기에 변호사법 제34조 잠식의 우려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 4) 잔여재산 귀속

#### ■ 개정안

제58조의44(기부금품의 모집 등) ① 해산한 법무법인(공익)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법률활동에 사용하거나 다른 법무법인(공익)에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한다.

#### ■ 검토의견

본 개정안은 해산시 재산의 귀속 대상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고 있는데, 귀속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으로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을 두고 있는 바, 이에 준하여 해산 시 다른 법무법인(공익)도 귀속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법무법인(공익)은 설립 시 구성원이 출자금을 납입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해산 시 잔여 재산은 모두 타 기관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다. 유사 형태인 사회적협동조합은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4조).

#### ■ 개선안

출자를 전제로 한 규정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나, 출자 구조를 유지한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처럼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을 때 다른 단체 · 법인에 귀속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5) 조직변경

법안은 기존의 공익법단체들이 법무법인(공익)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기존 단체들은 주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존재하고 있어, 법적 근거 없이는 조직 변경이 불가능하다. 기존 조직에 기본재산이나 회원이 갖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를 포기하고 기존의 비영리법인을 해산하여 법무법인(공익)을 설립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협동조합제도 신설시 유사 단체가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같이, 기존 조직들이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법무법인(공익)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 규정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부칙 참조).

그러나 기존 단체들은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변호사 아닌 자가 이사 또는 회원인 조직이므로 구성원 대다수가 탈퇴하고, 변호사들로 구성되는 법무법인(공익)으로의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존 비영리단체를 유지하고, 법무법인(공익)을 새롭게 설립할 수 있겠으나, 위 경우 현재 비영리단체와 별도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체계와 다르지 아니하다.

#### 6) 기타 문제점

본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중 대표자가 변호사이고, 임직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한 비율 이상이 변호사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는 법무법인(공익)으로 인증 받고, 위 법무법인(공익)은 소송 등 법률 사무를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위 법무법인(공익)은 법인격관련 규율은 민법에 따르고, 법률사무 관련 규율은 변호사법에 따르며,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으로 규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익활동은 다른 비영리법인과같이 설립목적과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현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운영하면서 별도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방식을 통합한 것이다. 기존의 공익변호사단체가 인증을 통해 법무법인(공익)의 지위를 취득해 단체 명의로 법률사무가 가능해진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익법률사무로 일부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고유목적준비금의 손금산입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위 대안은 변호사들의 법률사무에 대한 책임이 비영리법인에 귀속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변호사가 중심이 아닌 활동가가 중심인 비영리단체의 상근변호사들을 포섭하지 못한다는 한계는 여전히 남는다.

아래는 개정안에 대한 한 공익변호사 비영리단체의 의견이다.

현재 발의되어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법무법인 공익 신설안)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 현행 변호사법이 불완전하지만 현재 대다수의 공익변호사단체들이 단체와 법률사무소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그런데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입법 취지로 법무법인 공익 형태를 신설하는 경우, 법무법인 공익이 그 적법성을 사실상 독점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법무법인 공익 형태를 취하지 않은 다른 단체들이 탈법 내지 위법한 단체로 평가될 위험성이생기는 것은 아닌지,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기부금품법과 같이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지 우려된다.

개정안의 일부 요건이 수정을 거쳐 입법된다고 하여도, 공익변호사의 다양한 활동 형태 모두가 법무법인 공익이라는 하나의 형태로 수렴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단체는 법무법인 공익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없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체로서 법무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형태로 단체를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이처럼 \*단체와 유사한 지향을 가지고 있어서, 또는 법무법인 공익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맞지 않아서 법무법인 공익으로 가지 않거나 가지 못하는 단체가 상당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신입변호사 중심의 단체일수록, 활동가와 함께 일반 NGO 형태로 일하고자 하는 변호사일수록 법무법인 공익의 형태를 취하기가 어려울 것인데,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의 해결책으로 법무법인 공익이라는 법인형태가 특정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기반들이 오히려 좁아지고 탈법 내지 위법 논란으로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과연 공익변호사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의문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V.** 결론 및 제언

- 1. 보고서를 마치며
- 2. 설문에 드러난 현황 및 문제점
- 3. 제언
- 4. 마치며

#### 1. 보고서를 마치며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자,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치열하게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왜' 후원 모델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왜' 인권단체들처럼 일하는가라는 질문들이었다. 이 질문들은 '법조인'으로부터 더 많이 받았던 것 같다. 기존의 변호사의 틀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기존의 변호사법, 법인세법에 포섭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 같다. 함부로 예외나 혜택을 이야기했다가 어설프다는 평가를 듣게 될까봐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설명하려고 애를 썼다.

기존의 제도에 편입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기존의 제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기존의 법령들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비영리단체가 갖추어야 할 민주주의와 투명성의 원칙도 지키려고 애를 쓰며,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쌓으려고 애를 쓰는 사이 드디어 공익변호사들의 숫자가 100명이 넘게 되는이 시기를 맞이했다. 처음에는 극소수 공익변호사들이 갖는 주관적인 고충에 불과했던 것들이 10년이 넘고 100명이 넘는 사이 '객관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목소리가 된 것이 감회가 새롭다.

왜 후원모델을 생각하는가. 수익이 되지 않는 중요한 인권 문제들에 대해 집중하고 싶은 지향, 이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영리사업과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채산성이 떨어지므로), 오히려 왜 변호사를 비영리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가다양한 모델로 활동해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답이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와비슷한 지향으로 일하는 전·현직 공익변호사 74명이 응답한 결과로 마련된 것이고 모두 11개 단체(혹은 개인)을 인터뷰 하였다.

#### 2. 설문에 드러난 현황 및 문제점

여성과 30대가 가장 많이 응답했다. 변호사 경력 및 공익변호사 활동기간 모두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응답률이 가장 높아 공익변호사의 역사가 짧고 젊은 단체들이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공익변호사 활동의 지역 간 편차가 매우 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공익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나머지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시, 1개의 특별자치도 가운데 현재 공익변호사가 일하고 있는 지역은 전라가 유일하다(민주노총법률원의 몇 개지부가 있기는 하나 노동문제만을 다루고 있다는 제한이 있다). 그마저도 없는 지역 공익변호사가 줄어든 것은 매우 아쉬운 지점이다. 심층면접에서 지역 내 공익 변호사는 고립으로 인하여 소진되기 쉬운 구조가 있음이 엿보였다. 이후 지역 공익변호사 생태계를 마련함에 있어 여러 가지 섬세한 고려가 필요하다.

단체의 인적 구성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공익변호사들은 대부분 단체에서 유일한 변호사 구성원으로서 상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28.8%). 반면, 변호사가 아닌 상근자 인원의 경우, 한 명도 없음이 가장 많았다(26.0%). 공익변호사들은 비변호사 상근자 없이 홀로 고군분투하며 현장에서 뛰고 있었다. 변호사가 아닌 상근자가 0명인 이유로는 재정적인 부담감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아, 재정이 가능하다면 비변호사 상근자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변호사와 비변호사 상근자가 함께 일하면서 발생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의견도 다양했다. 대신, 단체에서 상근이 아닌 변호사가 함께 활동하는 비율이 67.1%에 달했는데, 이사, 고문 내지 자문, 운영위원 등의 방식으로 외부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었다. 인턴·자원활동가의 경우 59.2%가 현재 함께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시간과 비용 내지 교육 여력의 부족 등 인턴·자원활동가를 선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단체의 물적 구성현황 및 재정에 관한 사항도 분석했다. 단일한 재정수입원을 가진 단체는 총 20곳이었고, 대부분 복수의 재정수입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41곳). 단체의 연간 수입·지출액은 로펌 기반 공익변호사 단체의 경우 5억이상 10억 미만이었지만, 로펌 기반이 아닌 단체의 경우 1억 미만에서부터 10억이상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지속가능한 재정자립이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53.5%였다. 반면, 로펌 기반 공익변호사의 경우 68.4%가 재정자립이지속가능하다고 응답해, 상대적으로 일반시민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의 경우지속가능한 재정자립이 어렵다고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공익변호사의 55%가 현재 소속 단체에서 계속 근무할지 모르거나 근무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근무하지 않겠다는 응답을 분석해 본 결과, 재정적 부담이나 조직 구조 등 장기근무 환경이 안 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처음부터 2~3년간 경력 쌓고 이직 계획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전직 공익변호사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공익변호사를 그만 둔 이유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급여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았던 것과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

현재 급여 수준으로는 로펌 기반 공익변호사는 400만원 이상 500만원이 가장 많은 반면, 로펌 기반이 아닌 공익변호사는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급여의 편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변호사 연차와 급여 수준의 상관관계는 찾기 어려웠다. 변호사 연차에 따른 급여 수준 상승이 많지 않아, 로펌 기반이 아닌 공익변호사의 경우 급여 수준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으로 급여 수준의 변동이 거의 없었다.

심층면접에서는 원심력(구성원이 각 전문분야에서 활동하는 것)과 구심력(그 각전문분야의 활동을 '조직'안에서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각 구성원들이 자신의 전문분야를 가지고 활동해 나가는 원심력과 조직의 중심인 구심력사이의 긴장 관계와 관련한 문제는 주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는 조직에서 문제가 되었다. 한 가지 주제만을 다루는 경우(예를 들어 민주노총법률원은 노동문제만, 환경법률센터는 환경만) 원심력과 관련한 문제가 없지는 않으나, 상대적으로적은 것으로 보였다. 한 가지 주제만을 다루는 공익변호사 조직의 경우는 대체로법률사무소나 법인의 형태이고 후원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심력이 작용하는 경우 구심력으로 붙들 수 있기보다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나가

는 경우가 더 쉽게 발생하지 않는가라는 짐작을 해보았다. 또한 다른 비영리단체 보다 전문가가 활동하는 조직의 경우 원심력의 문제가 더 작용하는가에 대한 질 문이 있을 수 있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심층면접에서 또한 비영리단체 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조 직화와 체계화, 구성원에 대한 교육 등과 관련한 고민들이 엿보였다. 이러한 고 민들은 공익변호사 단체에 특수한 것이 아니라, 신생 비영리조직들이 시간이 흐 르면서 겪는 과정들인 것으로 보인다.

공익변호사 단체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다보니, 이에 대한 선행 경험이 없어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단체 내 공익변호사들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점이 좋고,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여 해결해 가는 과정에 있는 점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그 해결 과정들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작업도 이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정책에 대해서는 결국 지속가능한 재정지원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소속 공익단체 이름으로 소송 수행(법률지원) 등 변호사법 개정에 대한 욕구도 많았다. 로스쿨 학자금 내지 생활비 지원, 리걸클리닉 활성화, 공익법률 커리큘럼 강화 등 로스쿨에 관한 의견도 여럿 확인할수 있었다. 공익변호사 기금 마련, 전국 단위의 프로보노지원센터 설립 및 공익법률활동 예산 확대 등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홀로 활동하면서 역량강화를 해내야 하는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다보니, 공익변호사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도 많이 개진되었다. 지역사회 공익변호사 활성화, 사회적 약자 권익용호기관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변호사 채용 확대에 대한 의견도 여럿 있었다.

#### 3. 제언

#### 가. 재정 관련 지원

조직의 재정 불안정, 급여의 지속 불가능성 등은 크게 재정의 문제로 귀속되며, 지속가능한 재정 지원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재정 지원은 크게 공익변호사 단체들을 지원하는 방법, 공익변호사 개인을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 공익변호사 단체들의 재정이 확보되는 것은 단체들의 자율과 역량에 달려 있는 측면이 있고, 공익변호사는 결국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제대로 지속가능하게 지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공익전업변호사 임금지원제도가 더 체계적으로 도입 확산될 필요가 있다. 현재, 공익법조모임 나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이 자체적인 공익변호사 자립지원 기금을 운영 중이다. 동료 기금으로는 사법연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법률기금, 서울대학교 로스쿨 등 각기 로스쿨 중심으로 십시일반의 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재단법인 동천에서도 펠로우쉽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동천 '안에서' 활동하고 있고 상근 지역도 서울이라는 점의 한계가 있다.
- 이러한 공익전업변호사 임금지원이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변호사회, 로펌, 로스쿨 등 다양한 차원에서 확대되어 공익변호사의 생태계가 널리 퍼지고 특 히 지역에까지 공익변호사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를 확대시키고 안정화하 기 위해서는 우선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법률홈닥 터, 마을변호사 등 유관 사업을 해온 법무부 역시 공익변호사에 대한 실질적 인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최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정부, 공공기관, 기업의 책무로 강조하고 있다. 법률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은 바로 공익법활동일 것이다. 그러므로 법무부가주도하거나 기업이 출연하는 등의 공익법기금을 마련하여 공익법 프로젝트 지원, 공익소송 변호사 보수 지원, 소송비용 지원 등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공익법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조하여 사회가 공익법에 기부하는 문화를 만들어내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도 공익법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 한편, 현행 로스쿨 체제에서 공익변호사에 대한 마음이 있더라도 막대한 로스쿨 학자금 채무로 인하여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 미국 로스쿨의 경우 공익 변호사에 대한 로스쿨 학비 탕감제도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로스쿨들은 공익법센터나 리걸클리닉센터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공익에 대한 사명을 다하고 있음에 대해서 생색내는 경우가 많은데, 예비 공익변호사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걸림돌이 되고 로스쿨 학자금 채무 탕감 제도를 하루 속히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로스쿨의 공익적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 나. 관련 법·제도 개선

변호사법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익법무법인'의 정의로 접근하기보다는 '비영리법무법인'의 개념으로 접근하여야 법인세법 등과의 충돌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법 제34조 동업금지, 이익분배 금지 규정의 개선도 필요하다. 관련하여서는 미국 여러 주의 변호사 윤리장전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는 예를 살펴보았고 영국 호주 등에서는 동업금지규정이 삭제되었음도 보았다.

비영리단체의 높은 공익성과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도 비영리단체에 한해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특히 의뢰인이 아닌 제3자나 단체에서 지원받는 매우 적은 금액의 소송구조 비용조차 비영리법인과 분배할 수 없도록 하는 한국 의 보수분배금지·동업금지규정의 엄격한 적용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의 공익 로펌은 의뢰인에게 직접 받는 보수가 50%를 넘지 않는 경우 공익단체에 포섭하여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점을 참고할 만한데 이는 변호사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심층면접에서는 비영리단체를 운영함에 있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경직된 규제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기부금품법의 근본적인 개선도 필요했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에 많은 개정안들이 올라와 있으며 공익변호사들이 이러한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법안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또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민간단체'도 지정기부금대상법인으로인정된 '비영리법인'들과 같은 세제혜택이 가능하도록 개정될 필요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다

#### 다. 지역 공익변호사 양성 필요

지역 공익변호사 활성화와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의 공익법률기금 조성, 지방변호사회와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중간 매개 조직이 필요하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무변촌에 주민들의 자문변호사 격인 '마을변호사'제도를 두어, 마을변호사가 그 마을에 상근하거나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 인터넷 우편등을 통해 법률 자문과 상담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무변촌의 인구가 고령화된점, 마을변호사들의 사무실이 기존의 대도시에 머물러 있는 점, 상담에 대한 실비지급 그 이후 법률지원에 대한 지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전화,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한 법률자문과 상담은 실효적이지 않다. 무변촌을 없애 법률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재정적 지원 하에 무변촌에서의 사무실 개소를 지원하고 최소 수익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별도로 지역의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지역의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공익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무변촌의 법률상담이 모두 인권과 관련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변호사회에서 특별회비를 걷어 과소지역에 변호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오랫동안 실시했다. 또한 일본 법무성도 기금을 조성하여 과소지역에 변호사를 파 전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기금을 조성하여 제공할 뿐 변호사들의 독립성을 존중하여 법률사무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공익활동은 사법접근성 개선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신 일본의 변호사단체는 인권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 라. 그 밖에 필요한 것들

또한, 부담 없이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송환경 구축을 위한 (공익)소송비용 감면(패소비용 부담 등), 세금 감면 등을 위한 법률 개정, 불필요한 행정업무 (세무, 회계) 개선 등의 의견도 많았다.

(1) 각 지방변호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공익변호사 양성 및 지원 기금 마련(공간 지원 포함) 뿐만 아니라 ① 전국 및 지역별 프로보노지원센터 설립 및 활성화, ② 공익법률활동 관련 예산 확대, ③ 변호사 등록비 감면, 변호사 회비 감면 등 공익변호사 지원, ④ 협회 공익사건 판단기준 확대, ⑤ 경유증표 감면(지방변호사회에는 아예 없다), ⑥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경우) 무료 경유증표 발급요건 완화 및 발급대상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 (2) 로스쿨의 역할이 빠질 수 없다.
- 위에서 언급한 ① 공익전업변호사 로스쿨 학자금 및 생활비 지원 뿐만 아니라 ② 공익법률 관련 커리큘럼 강화, ③ 공익변호사 연구 협력 등 로스쿨 재학 중이나 졸업 후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 ④ 연구교수 채용 등 로스쿨이 공익법률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야 한다.
- (3) 공익변호사 교육 및 훈련시스템 구축에 대한 욕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단체 내에서 공익변호사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에 관한 설문에서 1순위로 '전문 가로서 역량 강화를 혼자서 해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응답이 많았다는 점과 연 결된다.

(4) 회계·세무 등 비영리단체의 운영을 위한 업무 지원 및 비영리법인(단체) 관련 제도 개선, 공익변호사단체 및 공익법률활동 홍보와 공익변호에 대한 인식 개선, 공익변호사 정보 공유,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 4. 마치며

공익변호사들은 다양한 기반과 방식으로 활동하는 만큼 각자 매우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공통문항으로 질문하는 설문조사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인권의 사각지대, 인권의 벽을 없애기 위해 여러 가지 영역에서 활동하는 100여명의 변호사들이 비슷한 어려움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어려움들을 개선해야 하는 필요에 대해서도 통계, 해외 사례 등을 통해서 '근거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공익변호사들의 경험은 아직은 젊다. 그러나 이제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공익변호사들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더 나아가 미래의 공익변호사들을 위해서 도 10여 년간 반복되어온 어려움들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익변호사 활동이 아직은 처음이고 미래를 예측해볼 수 있는 선배들이 많지 않기에 불안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런 불안을 미래의 후배들에게도 되돌림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의 한걸음이 후배들에게 '길'이기 때문이다.

심층면접에서 만난 한 공익변호사의 이야기를 끝으로 보고서를 마감한다.

9년차인데요. 여전히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 건 없지만 활동 과정이 의미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저의 동력이에요. 힘든 거는… 음…(먼 산을 바라보다가)……

이와(공익변호사와) 관련한 모델이, 제가 5년 후 10년 후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는 모델이 없기 때문에 활동할수록 고민이 쌓여요. 공익변호사님 중 초창기 멤버 분들이 나가고 계시는데, 그 분들의 행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제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무엇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그런 모델이 많이 있는 건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델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다는 것이지요.

# 〈참고문헌〉

# 1. 단행본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2, 법문사, 2018.

## 2. 논문

- 김남주 외 3인, "변호사와 공익활동",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10권 제1호, 2019.
- 김민욱, "지역 기반 공익변호사 Followship을 도입하자", 인권법평론 제9호, 2012.
- 김용섭, "독일과 일본에서의 MDP 논의", 인권과 정의 Vol. 412, 2010.
- 염형국, "공익인권 법무 분야의 현황과 전망; 한국의 공익변호사 현황과 전망", 공익과 인권 통권 제13호, 2013.
- 이전오, "우리나라의 MDP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5권 제3호, 2013. 한상희, "변호사의 공익소송",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2, 법문사, 2018.
- 홍일표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운동과 법의 동원: 운동 레퍼토리로서 '소송'의 가능성 과 한계" 시민사회와 NGO 제6권 제2호,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8.
- 황승흠, "한국 공익법운동의 개념요소와 전망,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5권 제1호, 2014.
- \_\_\_\_, "변호사의 공익활동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제언", 성신법학 제4호, 2004.
- 황필규, "공익법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소고",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5권 제1호, 2014.

# 3. 연구보고서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의 프로보노 활동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2017. 서울시NPO지원센터, 공익활동가 역량요소 연구보고서, 2015.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법지원센터설립준비위원회 연구보고서, 2012. 이전오, 변호사와 비변호사간의 협업방안 연구, 법무부, 2012.

## 4. 자료집

공익법운동의 성과와 도전 세미나,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5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2009.

공익법운동의 현황과 과제, 재단법인 동천 5주년 공익세미나 자료집, 2014.

로펌 공익활동 활성화 세미나 자료집. 로펌공익네트워크. 2016.

법무부, 2017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 2017.

서울지방변호사회, NPO 법률지원 매뉴얼, 2019.

제1회 공익변호사 한마당 자료집, 2014.

제3회 공익변호사 한마당 자료집. 2016.

황승흠, 공익소송의 어제와 오늘, 조영래 변호사 8주기 추모 심포지엄 자료집(미간행), 1998.

# 5. 기사

한겨레, "일본 돌아가 공감 같은 인권변호사 단체 만들 터"(2018. 2. 18.)

# 〈외국 문헌〉

도쿄프론티어기금법률사무소(http://tokyo-frontier.com/outline.html)

변호사법인도쿄퍼블릭법률사무소(http://www.t-pblo.jp/)

변호사법인 아사카제기금법률사무소(http://www.asakaze-law.jp/)

일본사법지원센터호테라스(https://www.houterasu.or.jp/index.html)

일본변호사연합회(https://www.nichibenren.or.jp/)

홋카이도변호사회연합회 스즈라기금

(http://www.dobenren.org/suzuran/index.html)

American Bar Association,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2018, (https://www.americanbar.org/groups/professional\_responsibility/pu blications/model\_rules\_of\_professional\_conduct/model\_rules\_of\_professional\_conduct table of contents/).

ATLEU(atleu.org.uk).

Auckland Disability Law(http://aucklanddisabilitylaw.org.nz/)

Community Law Centres o Aotearoa(https://communitylaw.org.nz/)

David Clementi, "Review of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Legal Services

in England and Wales". 2014.

Deborah L. Rhode, "Public Interest Law: The Movement at Midlife", Stanford Law Review Volume 60. Issue 6, 2008.

Djirra(https://djirra.org.au/who-we-are/).

Earth justice(https://earthjustice.org/).

Environmental Defenders Offices of New South Wales (https://www.edonsw.org.au/).

Free Representation Unit(http://www.thefru.org.uk/).

- Kathryn A. Sabbeth., "What's Money Got to Do With It?: Public Interest Lawyering and Profit",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School of Law, 2014.
- Mitch, "Tipping the Scales of Justice The Role of the Nonprofit Sliding Scale Law Firm in the Delivery of Legal Service", LEGISLATION AND PUBLIC POLICY, vol. 20, University of Wisconsin, School of Law, 2017.
- New zealand Law Society, "New CLC head says funding still inadequate", 2018.https://www.lawsociety.org.nz/practice-resources/the-busines s-of-law/access-to-justice/new-clc-head-says-funding-still-inad equate
- New zealand Law Society, "Lawyers' special fund pays out \$14 million to Community Law Centres", 2019.

  https://www.lawsociety.org.nz/news-and-communications/latest-news/news/lawyers-special-fund-pays-out-\$14-million-to-community-law-centres

Ngāi Tahu Māori Law Centre(https://www.ngaitahulaw.org.nz/).

Pacific Legal Foundation(https://pacificlegal.org/).

PILnet(https://www.pilnet.org/).

- Roy D. Simon Jr., "Fee Sharing Between Lawyers and Public Interest Groups", 98 Yale L.J. 1069, 1989.
- Scott L. Cummings, "The Future of Public Interest Law", University of Arkansas at Little Rock Law Review Volume 33 Issue 4 Article 2, 2011.

Tower Hamlets law centre(http://thlc.co.uk/).

Women's Legal Service Victoria(https://www.womenslegal.org.au/).

Youth Law(http://youthlaw.co.nz/).

# 별첨자료

[별첨 1] 설문지 [별첨 2] 심층면접조사 공통질문표

# [별첨 1] 설문지

# 설 문 지

이 설문지는 한국 내 공익변호사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현재를 짚어보고 미래를 위한 밑작업이 될 것입니 다. 개인 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u>이 설문의 결과는 공개</u> 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직이 아니지만 이전에 공익변호사로 활동하였다면 이전 직장의 경험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문의 결과는 공익변호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회신 방법:** 2019. 2. 10. (일)까지 jekang@jipyong.com으로 이메일 회신

2019. 1.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 담당자

조사책임자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변호사 이소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강정은

# I. 일반 인적사항

(※ 이하 인적사항은 조사담당자 이외의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며, 추가 인터뷰 및 선물 제공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1.~4. 일반 인적사항 항목 작 성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	성명						
2. 4	소속						
3. ?	전화						
4. 0	기메일						
<u>*</u>	해당되는	<u>빈킨</u>	<u></u> 에 V	<b>V로 표시</b> 해주	득세요.		
5. <del>7</del>	바하의 연	령은'	?				
	1) 20대			□ ② 30대		40대	□ ④ 50대 이상
	<b>비하의 성</b> ① Fema ④ 모름		-	2) Male		Genderg	queer/Nonbinary/기타
ж ō	해당되는	빈칸	.에 \	/로 표시해주	세요.		
7. 구	l하의 활	동지	역은'	?			
	1) 서울			② 경기		충청도	□ ④ 경상도
	5) 전라도	Ξ.		⑥ 제주도		강원도	
	<b>년호사 연</b> ① 3년차 ③ 5년차	미민	<u>}</u>	)년차 미만			상 5년차 미만
	9 0 12/1	1 (	) <u>1</u> ()	7 L T L L L	<u> </u>	10년기	1 0

9. 공익전업변호사로서 활동한 기간(전/현직	전체)은 어떻게 되나요?
□ ① 3년차 미만 □ ② 3	년차 이상 5년차 미만
□ ③ 5년차 이상 10년차 미만 □ ④ 1	)년차 이상
10. 공익전업변호사를 하게 된 동기는 무엇	입니까?
□ 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 ②	적성에 맞아서
□ ③ 구직할 때 채용공고가 나서	
□ ④ 기타 (	)
11. 현재 공익전업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	l까?
□ ① 예(→ <u>12번</u> 으로 가시오)	
□ ② 아니오(→ <u>11-1번</u> 으로 가시오. 그리.	고 12번 이하의 항목은 공익전업변호사로
일했을 때를 기준으로 작성해주십시	오)
11-1. 공익전업변호사로서 활동했던 시기를	적어 주십시오.(→11-2번으로 가시오)
시작 시기( )년 / 그만둔	시기( )년
11-2. 공익전업변호사를 그만둔 이유를 모	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급여가 지속가능하지 않아서	□ ② 가정적인 개인사
□ ③ 단체의 재정적인 어려움	□ ④ 일이 힘들어서
□ ⑤ 기타 (	)

# Ⅱ. 단체 관련 일반 사항

(※ 공익전업변호사를 퇴직한 분들은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답해주십시오. 이하 모두 동일)

※ <u>해당되는 빈칸에 V로 표시</u>해주세요.

12. 현재 귀하가 일하고	있는 공익 단체의	형태에 가장	해당되는	것은	무엇입니	까?
□ ① 변호사 중심으로	설립된 공익단체					
□ ② 지방자치단체 등여	ll서 위탁된 공익	단체				
□ ③ (변호사 아닌)활동	-가 중심의 공익단	<b></b>				
□ ④ 일반 변호사 업무	와 공익활동 병형	}				
□ ⑤ 로펌이 설립한 공	익단체					
□ ⑥ 변호사와 활동가기	· 함께 설립한 공	'익단체				
□ ⑦ 지방변호사회가 설	널립한 공익단체					
□ ⑧ 로스쿨이 설립한	공익단체					
□ ⑨ 다른 NPO(예. YI	MCA 등)의 부설	단체				
□ ⑩ 기타(						)
13. 귀하 소속 단체의 주	된 분야를 모두 :	표시해 주십시	오.			
□ ① 공익인권일반	□ ② 이주민	□ ③ 장애역	인 🗆 🤆	4) 아동	등 청소님	틘
□ ⑤ 난민	□ ⑥ 노동	□ ⑦ 공익	변호사양성	]/중간	지원/연	계
□ ⑧ 성적지향과 성별정	성체성	□ ⑨ 사회	적 경제			
□ ⑩ 소비자	□ ⑪ 환경		⑩ 정보			
□ ③기탁(					)	

# 14. 귀하 소속 단체의 주된 법률 관련 활동 방식은 정도는 어떠합니까?

법률관련 활동 방식	전혀안한다	거의안한다	보통이다	조금한다	많이한다
14-1. 상담/면담				□ ④	□ ⑤
14-2. 법률소송지원				□ ④	□ ⑤
14-3. 제도개선				□ ④	□ ⑤
14-4. 연대활동(공익인권단체 등)		□ ②	□ ③	□ ④	□ ⑤
14-5. 연구조사					□ ⑤
14-6. 유엔 및 국제기구 대응활동		□ ②	□ ③	□ ④	□ ⑤
14-7. 기타( )				□ ④	

15. 귀하 소속 단체에서 법률지원을 하는 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① 내부 구성원 회의/내부 규정에 따름 □ ② 상근변호사 자체 판단	
□ ③ 다른 단체의 지원 요청	
□ ④ 기타 (	)
15-1. 법률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세요.	

16. 귀하 소속 단체의 창립연도와 처음 상근변호사가 상근하기 시작한 연도는 어떻게 됩니까?

16-1. 장립연도 : (	)년	
16-2. 처음 상근변호사기	l 일하기 시작한 연도 : (	)년

# 17. 귀하 소속 단체의 연도별 상근변호사 수를 적어 주십시오.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7-1. "상근변호사 수가 증가했(었)다면" 상근변호사를 추가로 채용하게 된 이유는?
□ ① 해야 할 일이 많아서 □ ② 공익전업변호사를 꿈꾸는 후배를 양성하기 위해
□ ③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 ④ 기타 ( )
17-2. "상근변호사 수가 증가했(었)다면" 상근변호사를 추가로 채용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법은?
□ ① 보조금으로 재정지원이 되어서
□ ② 부족하지만 적극적인 후원 독려해서
□ ③ 공모사업 등으로 인건비 해결
□ ④ 로스쿨 등을 통한 제3기관으로부터 모금/기금 지원
□ ⑤기타( )
17-3. "상근변호사 증감이 없거나 감소했다면" 추가로 상근변호사를 채용하지 않은
이유는?
□ ① 지금 인력으로도 충분해서
□ ② 일은 많지만 상근변호사를 채용할 재원이 없어서
□ ③ 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 ④ 채용을 했었지만 금방 그만 두어서
□ ⑤ 기타 ( )
18. 재정적인 염려가 없다면 현재 귀 단체 내 상근변호사 수는 적절한가요?
□ ① 부족하다(추가 몇 명이 필요한가? 명)
□ ② 적절하다 □ ③ 너무 많다

# Ⅲ. 단체의 인적 구성 현황 관련한 질문

※ <u>해당되는 빈칸에 V로 표시</u> 해주세요.	
19. 귀하 소속 단체의 변호사인 상근자는 몇 명입니까? (	) 명
20. 귀하 소속 단체의 변호사가 아닌 상근자는 몇 명입니까? (	) 명
<ul> <li># 변호사가 아닌 상근자가 '0명'이라고 작성한 경우 20-1번부터 20-5 바랍니다.</li> <li>변호사가 아닌 상근자가 "1명" 이상 작성한 경우는 20-6번부터 20 바랍니다.</li> </ul>	
20-1. 변호사가 아닌 상근자를 두지 않는 이유는?	
20-2. 법률지원 이외의 단체의 여러 가지 실무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복수응답 가능, 여기서 실무란, 재정·회계, 세무, 후원모금, 홍보, 법률을 의미합니다.) □ ① 변호사들이 나누어서(→20-3번으로 가시오) □ ② 용역 등 외부에 맡겨서 □ ③ 기타 (	

20-3. 변호사들이 역할을 나누어 실무를 수행한다면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실무의 종류에 따라 최대한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여기서 실무란, 재정·회계, 세무, 후원모금, 홍보, 법률행정사무 등을 의미합니다.)
20-4. 상근변호사가 직접 실무를 모두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① 장점 : ② 단점 :
20-5. "20-4번"의 단점에 대한 극복방법은 무엇입니까?(→21번으로 가시오)
※ 20번에서 변호사가 아닌 상근자가 "1명"이상 작성한 경우 20—6번부터 20—8번까지 응답바랍니다.
20-6.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상근자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법률사업 외 단체의 목적사업, 재정·회계, 세무, 후원모금, 홍보, 법률행정사무 등)

20-7. 변호사와 비변호사가 함께 일하는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① 장점: ② 단점: 20-8. "20-7번"의 단점에 대한 극복방법은 무엇입니까?
21. 귀하 소속 단체에는 상근 아닌 변호사(프로보노, 고문·자문 변호사, 운영위원 등)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까? □ ① 예(→21-1번으로 가시오) □ ② 아니오(→21-4번으로 가시오)
21-1. 상근 아닌 변호사의 직책은 어떻게 되는가요?  ① 1 자문(고문)변호사 ② 운영위원  ② 3 기타( )
21-2. 상근 아닌 변호사의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가요?  □ ① 5명 미만 □ ② 5명 이상 10명 미만 □ ③ 10명 이상 20명 미만 □ ④ 20명 이상
21-3. 상근 아닌 변호사와의 업무분담 내지 역할은 어떠한가요?

21–4.	상근 아닌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보는가요? 필요/불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 인가요?
	턴/자원활동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예(→ <u>22-1번으로 가시오</u> ) □ ② 아니오(→ <u>22-4번으로 가시오</u> )
22-1.	인턴/자원활동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22-2번으로 가시오)
22–2.	인턴/자원활동가에게 활동비를 지급하십니까?(→22-3번으로 가시오)
	지급하지 않는다 🗌 ② 교통비/식비 지원 🔲 ③ 최저임금*활동시간
	기타( )
22–3.	인턴/자원활동가를 선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23번으로 가시오)
22–4.	인턴/자원활동가를 선발하지 않는 무엇입니까?(→23번으로 가시오)

# Ⅳ. 단체의 물적 구성 현황 및 재정에 관련한 질문

- ※ <u>해당되는 빈칸에 V로 표시</u>해주세요.
- 23. 해당되는 주된 재정 수입원과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 장점과 단점을 작성해 주시오.

주된 재정 수입원	비율	장점	단점
□ 23-1.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금	%		
□ 23-2. 일반시민 후원금	%		
□ 23-3. 수임료 및 자문비 (소송구조비 포함)	%		
□ 23-4. 다른 NPO 기금	%		
□ 23-5. 로펌/법인 후원금	%		
□ 23-6. 기타 ( )	%		

24. 귀 난제의 연간 수입/지를	울액이 어느 성노입니까?	
□ ① 1억 미만	□ ② 1억 이상-3억 미만	□ ③ 3억 이상-5억 미만
□ ④ 5억 이상-10억 미만	□ ⑤ 10억 이상	□ ⑥ 모름
□ ⑦ 기탁(		)
		1-1-1

25. 귀 단체의 주된 수입원으로 단체의 지속가능한 재정 자립이 가능한가요?

 $\square$  ① 예(o26번으로 가시오)  $\square$  ② 아니요(o25-1번으로 가시오)

25-1. 재정자립이 어렵고 부족하다면 재원 확보 방법은 무엇	입니까?
□ ① 추가 재원 확보가 어려워 인건비 등 경상비를 감축	
□ ② 후원행사	
□ ③ 소셜펀딩/크라우드펀딩	
□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지원	
□ ⑤ 기타 ( )	
26. 귀 단체의 소식을 알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ul><li>□ ① 홈페이지</li><li>□ ② SNS</li><li>□ ③ 이메일(뉴스</li></ul>	그레터)
<ul><li>□ ④ 소식지(연간, 계간 모두)</li><li>□ ⑤ 없다</li></ul>	
□ ⑥ 기타 ( )	
V. 공익변호사를 위해 필요한 것들	
w 레이어, 바퀴제 17억 포기레크베스	
※ <u>해당되는 빈칸에 V로 표시</u> 해주세요.	
27. 현재 단체에서 일하게 된 배경 우선순위로 기재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3순위(	
① 채용공고를 보고	·
② 실무수습 등 이전부터 단체와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③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스스로 찾아보고 지원함	
④ 기타 ( )	
28. 단체 내 공익전업변호사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	니까?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① 단체의 이름으로 서면을 낼 수 없는 것	
② 단체와 법률사무소 세무 회계 분리로 인한 이중고	
③ 변호사 아닌 활동가와의 관계 매김	
④ 변호사업무에 특수한 실무들을 모두 알아서 처리해야 하	는 점

(5) 변호사 아닌 윗사람(대표, 팀장 등)과의 관계 매김 (6) 전문가로서 역량 강화를 혼자서 해내야 하는 점 (7) 급여가 적어 가계 재정이 어려워져서 (8) 변호사/활동가로서 장래가 불투명해서
⑨ 기타
29. 공익전업변호사를 하면서 가장 시급하게 바뀌었으면 하는 것은?
29-1. 외부적으로
29-2. 내부적으로(나 자신의 변화를 포함)
※ 다음은 급여 관련한 내용입니다. 해당사항에 V로 표시해주세요.
30. 현재 급여(세전 기준)는 어느 수준 입니까? (전직인 경우 그 당시 급여)  □ ① 200만원 미만 □ ②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③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④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⑤ 500만원 이상
31. 귀하가 생각했을 때 귀하의 급여가 공익전업변호사가 지속가능하고 지치지 않도록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금으로 충분하다(→32번으로 가시오) □ ② 충분하지 않다(→31-1번으로 가시오)

31-1. 지속가능	등한 급여는 어느 정도라고 .	생각하는가요?(→32번으로 기	가시오)
□ ① 200만원	<u> 미</u> 만	□ ② 200만원 이상 ~ 3	800만원 미만
□ ③ 300만원	· 이상 ~ 400만원 미만	□ ④ 400만원 이상 ~ 5	500만원 미만
□ ⑤ 500만원	<u>.</u> 이상	□ ⑥ 기타 (	)
32. 귀하의 단체	체는 연차에 따라 급여가 싱	승하십니까?	
□ ① 예: 그렇	넣다면 어느 정도 상승합니?	7}? (	)
□ ② 아니오:	그렇다면, 가장 큰 이유 드	무엇입니까?	
□ i)	재정 부족 □ ii) 제도 미	用	
,	다른 활동가와 급여에 있어	형평성	
$\Box$ iv)	기타(		)
	고 있는 단체에서 계속 근무	. – –	- 1.1.4
<ul><li>□ ① 예(→33-1번으로 가시오)</li><li>□ ② 아니오(→33-2번으로 가시오)</li></ul>			
	1/ 00 0010 = -1010		
□ ③ 모르겠다	<sup>}</sup> (→ <u>33−2번</u> 으로 가시오)		
,,,	· · · · · · · · · · · · · · · · · · ·	이 저마이나 게히오 ㅁ어이	1712(→24HQ=
33-1. 단체 내	· · · · · · · · · · · · · · · · · · ·	의 전망이나 계획은 무엇입니	니까?(→34번으로
33-1. 단체 내 가시오)	· · · · · · · · · · · · · · · · · · ·	의 전망이나 계획은 무엇입니	니까?(→34번으로
33-1. 단체 내	· · · · · · · · · · · · · · · · · · ·	의 전망이나 계획은 무엇입니	니까?(→34번으로
33-1. 단체 내 가시오)	· · · · · · · · · · · · · · · · · · ·	의 전망이나 계획은 무엇입니	니까?(→34번으로
33-1. 단체 내 가시오) ① 3년 후	· · · · · · · · · · · · · · · · · · ·	의 전망이나 계획은 무엇입니	- 까?(→34번으로
33-1. 단체 내 가시오) ① 3년 후 ② 5년 후	· · · · · · · · · · · · · · · · · · ·	의 전망이나 계획은 무엇입니	- 까?(→34번으로
33-1. 단체 내 가시오) ① 3년 후 ② 5년 후 ③ 10년 후	상근변호사로서 이후 자신	의 전망이나 계획은 무엇입니 일하기 어렵거나 계속 일할	
33-1. 단체 내 가시오) ① 3년 후 ② 5년 후 ③ 10년 후	상근변호사로서 이후 자신	일하기 어렵거나 계속 일할	
33-1. 단체 내 가시오) ① 3년 후 ② 5년 후 ③ 10년 후 33-2. 지금 일 없는 이유를 도	상근변호사로서 이후 자신. 일하고 있는 단체에서 계속 1두 선택해주세요.(→34번으	일하기 어렵거나 계속 일할	지 여부를 알 수
33-1. 단체 내가시오) ① 3년 후 ② 5년 후 ③ 10년 후 33-2. 지금 일 없는 이유를 도	상근변호사로서 이후 자신. 함고 있는 단체에서 계속 무 선택해주세요.(→34번으 기금 일하는 단체에서 2~;	일하기 어렵거나 계속 일할 로 가시오)	지 여부를 알 수
33-1. 단체 내 가시오) ① 3년 후 ② 5년 후 ③ 10년 후 33-2. 지금 일 없는 이유를 도 □ ① 처음부터	상근변호사로서 이후 자신. 함고 있는 단체에서 계속 무 선택해주세요.(→34번으 기금 일하는 단체에서 2~;	일하기 어렵거나 계속 일할 로 가시오) 3년간 경력을 쌓고 다른 일을	지 여부를 알 수
33-1. 단체 내 가시오) ① 3년 후 ② 5년 후 ③ 10년 후 33-2. 지금 일 없는 이유를 도 □ ① 처음부터	상근변호사로서 이후 자신. 상근변호사로서 이후 자신. 라고 있는 단체에서 계속 라두 선택해주세요.(→34번으. 사 지금 일하는 단체에서 2-5 높아지면 내 급여가 단체의 것이 힘들어서	일하기 어렵거나 계속 일할 로 가시오) 3년간 경력을 쌓고 다른 일을	지 여부를 알 수

# VI. 기타 - 미처 알아내지 못한 것들 34. 향후 설문 사항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35.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제도·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36. 공익변호사 모임에게 바라는 점을 작성해주세요.

※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별첨 2] 심층면접조사 공통 질문표

	소개	<ul><li>주요사업</li><li>소송, 입법/제도개선, 연구, 자문, 상담, 연대활동</li><li>구성원</li></ul>	
	과거	<ul><li>- 탄생 배경: 재정(Seed Money 등), 조직</li><li>- 설립 히스토리</li></ul>	
		<ul><li>구성원의 역할 분배 내용</li><li>(예) 총괄, 회계, 세무, 펀딩, 회원관리, 기부금품관리, 홍보, 인턴</li><li>역할 분배의 변화와 그 이유</li></ul>	
단체	현재	<ul><li>구성원 변화와 그 이유</li><li>그 과정에서 한계와 해결방안</li><li>구성원 간 소통의 문제점과 해결방안</li><li>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재정 배치</li></ul>	
		<ul><li>사업의 변화와 그 이유</li><li>그 과정에서 한계와 해결방안</li></ul>	
		<ul><li>단체 운영의 어려움</li><li>한계와 해결방안(펀딩, 세무, 회계 중심)</li></ul>	
		- 현재 단체의 가장 큰 고민	
	미래	- 계획: 3년 후, 5년 후, 10년 후	
	과거	<ul><li>공익변호사를 하게 된 동기/배경</li><li>어려움</li></ul>	
개인	현재	<ul><li>현재 활동의 동력, 좋은 점과 힘든 점(한계)</li><li>정체성: 활동가? 법률가?</li></ul>	
	미래	<ul><li>계획: 5년 후, 10년 후</li><li>단체의 성장과 나의 성장 간 관계</li></ul>	
공익변호사 시스템	<ul> <li>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제도 변화가 필요한지</li> <li>(예) 변호사법 개정</li> <li>지금 공익변호사에게 필요한 것</li> <li>공익변호사의 향후 전망</li> </ul>		